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동 아 시 아



EAST ASIA

목 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중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제3장 검역제도	43
제4장 라벨링 제도	86

홍콩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1
제2장 통관제도	122
제3장 검역제도	128
제4장 라벨링 제도	137

데만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55
제2장 통관제도	156
제3장 검역제도	173
제4장 라벨링 제도	198
제5장 출처	223

일본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31
제2장 통관제도	232
제3장 검역제도	239
제4장 라벨링 제도	257
제5장 주요 현안	272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중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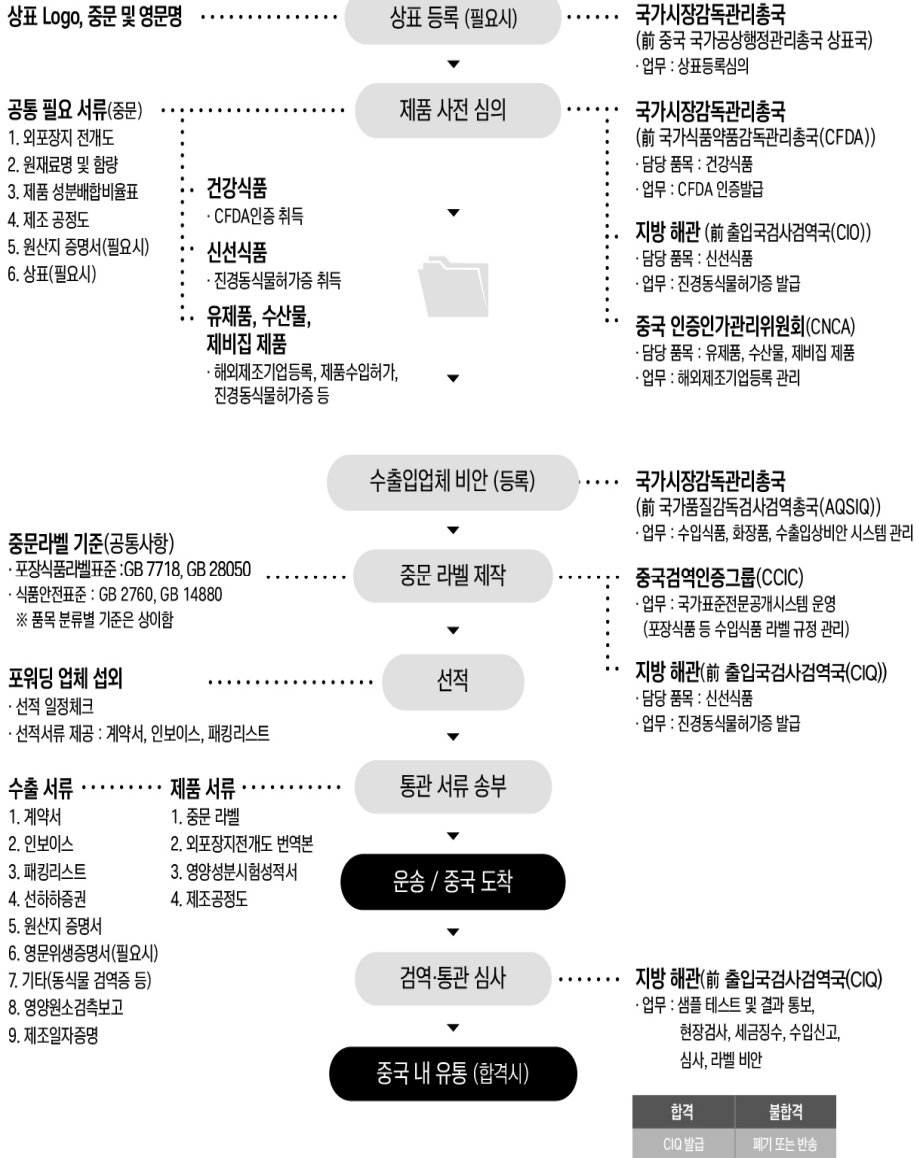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1. 관리 · 법률체계	6
2. 관세제도	10
3. 세금 징수	35
4. 통관절차	37
5.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42
제3장 검역제도	43
1. 검역제도 일반	43
2. 품목별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46
3.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85
제4장 라벨링 제도	86
1. 라벨링 제도 일반	86
2.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89
3. 라벨링	115
4.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16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련 법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국가주석령 15호, 2004.07.01)

□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화물 ·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경제 무역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기구에 등록(备案) 등기(登记). 단 등록 등기가 필요 없다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대외 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9조)
- 국영무역업체 관리
 - 화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 권한을 수여받은 기업에서만 가능. 단 국가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부분 할당량을 권한이 없는 기업에 허용한 경우 제외(11조)
- 대외무역업무의 위탁 및 대리
 -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 업무 대리(대외무역법 12조항)

□ 화물&기술 수출입 관리

- 수출입허가
 -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함.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됨(14조)
 - 국무원 대외경제 무역 주관부서는 수출입상황 모니터링 수요차원에서 부분 자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 시행
- 상품검사
 - 국가는 상품 합격 평정제도 실행.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인증, 검험, 검역 및 원산지관리 진행(21/22조)

【 2018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2000 10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2 2000 10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냉동
	0206 2100 00 0206 2200 00 0206 2900 00	내장 등 기타 부위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신선 혹은 냉장
	0203 2190 10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냉동
	0206 4100 00 0206 4900 00	내장 등 기타 부위
	0204 1000 00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3000 00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냉동 면양류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양고기	0206 9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품목	HS코드	비고
닭고기	0207 1200 00 0207 1411 00 0207 1419 00	냉동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냉동 내장 등 기타 부위
신선우유	0401 1000 00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00 10	영유아용 조제분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1507 9000 00	대두유
	1509 1000 00 1509 9000 00 1510 0000 00	올리브유
	1511 1000 00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팜유
	1514 1100 00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겨자유

품목	HS코드	비고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카사바	0714 1010 00 0714 1020 00 0714 1030 00	
보리	1003 1000 00 1003 9000 00	
수수(고량)	1007 1000 00 1007 9000 00	
옥수수 주조	2303 3000 10	
설탕	1701 1200 90 1701 1300 90 1701 1400 90 1701 9100 90 1701 9910 90 1701 9920 90 1701 9990 90	
담배	2401 1010 00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담배
	4813 1000 00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 자료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1444641/index.html>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국가주석령 51호, 2017.11.04수정)

□ 수입화물 관리

○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 징수(24조)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한 정당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26조)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개봉, 재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출서 허가 시 검사 면제(28조)

○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 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 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35조)

○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 실행(40조)
-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 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41/42조)

□ 관세

○ 관세 지급필가격(完税价格)의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 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거래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사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55조)

2. 관세제도

□ 2018년 일부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 2018년 7월 1일부터 일부 수입 일용소비품(총 1,449개 항목)의 최혜국 관세율을 인하하며, 210개 항목의 최혜국 잠정 관세율을 취소하고 기타 상품의 최혜국 잠정 관세율을 현행 잠정 관세율로 유지함. 그 중, 양식, 야생수산물 및 광천수 등 가공식품의 평균 수입관세를 15.2%에서 6.9%까지 인하함

○ 수입 일용소비품 최혜국 관세율 조정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1	03021100	신선, 냉장한 송어	12	10
2	03021420	신선, 냉장한 타이멘(라틴어학명 : Hucho hucho)	10	7
3	03021900	기타 신선, 냉장한 연어	12	10
4	03022100	신선, 냉장한 철치가자미	12	7
5	03022200	신선, 냉장한 가자미	12	7
6	03022300	신선, 냉장한 참새대	12	7
7	03022400	신선, 냉장한 턱bot	12	7
8	03022900	기타 신선, 냉장한 넙치	12	7
9	03023100	신선, 냉장한 날개다랑어	12	7
10	03023200	신선, 냉장한 황다랑어	12	7
11	03023300	신선, 냉장한 가다랑어 또는 가다랑이	12	7
12	03023400	신선, 냉장한 눈다랑어	12	7
13	03023510	신선, 냉장한 대서양 참다랑어	12	7
14	03023520	신선, 냉장한 참다랑어	12	7
15	03023600	신선, 냉장한 남방참다랑어	12	7
16	03023900	기타 신선, 냉장한 다랑어	12	7
17	03024100	신선, 냉장한 청어	12	7
18	03024200	신선, 냉장한 멸치	12	7
19	03024300	신선, 냉장한 정어리	12	7
20	03024400	신선, 냉장한 고등어	12	7
21	03024500	신선, 냉장한 말쥐취	12	7
22	03024600	신선, 냉장한 날새기	12	7
23	03024700	신선, 냉장한 황새치	12	7
24	03024900	신선, 냉장한 삼치 등	12	7
25	03025100	신선, 냉장한 대구류	12	7
26	03025200		12	7
27	03025300		12	7
28	03025400		12	7
29	03025500		12	7
30	03025600		12	7
31	03025900		12	7
32	03027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모잠비크틸라피아)	12	7
33	03027200	신선, 냉장한 메기	12	10
34	03027300	신선, 냉장한 잉어류	12	7
35	03027400	신선, 냉장한 뱀장어	12	7
36	03027900	신선, 냉장한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2	7
37	03028100	신선, 냉장한 꿩이상어 및 기타 상어	12	7
38	030282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	12	7
39	030283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	12	7
40	03028400	신선, 냉장한 큰입선농어	12	7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41	03028500	신선, 냉장한 도미류	12	7
42	03028910	신선, 냉장한 갈치	12	7
43	03028920	신선, 냉장한 조기	12	7
44	03028930	신선, 냉장한 병어	12	7
45	03028940	신선, 냉장한 복어	12	10
46	03028990	신선, 냉장한 기타 어류	12	7
47	03029100	신선, 냉장한 어간, 어란 및 정자	12	7
48	03029900	신선, 냉장한 지느러미 등 냉장	10	7
49	03031100	냉동한 홍연어	10	7
50	03031200	냉동한 기타 홍연어	10	7
51	03031300	냉동한 대서양연어	10	7
52	03032300	냉동한 태래어	10	7
53	03032600	냉동한 뱀장어	12	10
54	03032900	냉동한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0	7
55	03033110	냉동한 첨치가자미	10	7
56	03033200	냉동한 가자미	12	7
57	03033300	냉동한 참새대	12	7
58	03033400	냉동한 터봇	10	7
59	03033900	기타 냉동한 넙치	10	7
60	03034100	냉동한 날개다랑어	12	7
61	03034200	냉동한 황다랑어	12	7
62	03034300	냉동한 가다랑어 및 가다랑이	12	7
63	03034400	냉동한 눈다랑어	12	7
64	03034510	냉동한 대서양 참다랑어	12	7
65	03034520	냉동한 참다랑어	12	7
66	03034600	냉동한 남방참다랑어	12	7
67	03034900	기타 냉동한 다랑어	12	7
68	03035100	냉동한 청어	10	7
69	03035300	냉동한 멸치	12	7
70	03035400	냉동한 고등어	10	7
71	03035500	냉동한 말쥐취	10	7
72	03035600	냉동한 날새기	10	7
73	03035700	냉동한 황새치	10	7
74	03035900	냉동한 삼치 등	10	7
75	03036300	냉동한 대구류	10	7
76	03036400		12	7
77	03036500		12	7
78	03036600		12	7
79	03036700		10	7
80	03036800		10	7
81	03036900		10	7
82	03038100	냉동한 꿩이상어 및 기타 상어	12	7
83	03038200	냉동한 홍어 및 가오리	10	7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84	03038300	냉동한 비막치어	10	7
85	03038400	냉동한 큰입선농어	12	7
86	03038910	냉동한 갈치	10	7
87	03038920	냉동한 조기	10	7
88	03038930	냉동한 병어	10	7
89	03038990	기타 냉동한 어류	10	7
90	03039100	냉동한 어간, 어란 및 정자	10	7
91	03039900	냉동한 지느러미 등 냉장	10	7
92	03043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 필렛	12	7
93	03043200	신선, 냉장한 메기 필렛	12	7
94	03043300	신선, 냉장한 나일 파치 필렛	12	7
95	03043900	신선, 냉장한 잉어류, 장어, 가물치 필렛	12	7
96	03044100	신선, 냉장한 연어 필렛	12	7
97	03044200	신선, 냉장한 송어 필렛	12	7
98	03044300	신선, 냉장한 넙치 필렛	12	7
99	03044400	신선, 냉장한 대구과 필렛	12	7
100	03044500	신선, 냉장한 황새치 필렛	12	7
101	030446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 필렛	12	7
102	03044700	신선, 냉장한 갯이상어 및 기타 상어 필렛	12	7
103	030448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 필렛	12	7
104	03044900	신선, 냉장한 기타 생선 필렛	12	7
105	03045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 등 어육	12	7
106	03045200	신선, 냉장한 연어과 어육	12	7
107	03045300	신선, 냉장한 대구과 어육	12	7
108	03045400	신선, 냉장한 황새치살	12	7
109	030455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살	12	7
110	03045600	신선, 냉장한 갯이상어 및 기타 상어살	12	7
111	030457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살	12	7
112	03045900	신선, 냉장한 기타 어육	12	7
113	03046100	냉동한 태래어 등 생선 필렛	10	7
114	03046211	냉동 얼룩메기 필렛	10	7
115	03046219	냉동 기타 얼룩메기 필렛	10	7
116	03046290	냉동 기타 메기 필렛	10	7
117	03046300	냉동 나일 파치 필렛	10	7
118	03046900	냉동 잉어류, 장어, 가물치 필렛	10	7
119	03047100	냉동 대구류 필렛	10	7
120	03047200		10	7
121	03047300		10	7
122	03047400		10	7
123	03047500		10	7
124	03047900		10	7
125	03048100	냉동 연어 필렛	10	7
126	03048200	냉동 송어 필렛	10	7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127	03048300	냉동 납치 필렛	10	7
128	03048400	냉동 황새치 필렛	10	7
129	03048500	냉동 비막치어 필렛	10	7
130	03048600	냉동 청어 필렛	10	7
131	03048700	냉동 다랑어 필렛	10	7
132	03048800	냉동 상어, 가오리 등 필렛	10	7
133	03048900	냉동 기타 생선 필렛	10	7
134	03049100	냉동 황새치살	10	7
135	03049200	냉동 비막치어살	10	7
136	03049300	냉동 태래어살	10	7
137	03049400	냉동 대구류 어육	10	7
138	03049500		10	7
139	03049600	냉동 랭기상어 및 기타 상어살	10	7
140	03049700	냉동 홍어 및 가오리살	10	7
141	03049900	기타 냉동 어육	10	7
142	03051000	식용 가능한 생선가루 및 단립	10	7
143	030520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어간, 어란 및 정자	10	7
144	03053100	말린, 소금에 절인 태래어 등 생선필렛	10	7
145	03053200	말린, 소금에 절인 대구류 생선필렛	10	7
146	03053900	말린, 소금에 절인 기타 생선필렛	10	7
147	03054120	훈제한 연어	14	7
148	03054200	훈제한 청어	16	7
149	03054400	훈제한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4	7
150	03054900	훈제한 기타 어류	14	7
151	03055100	말린 대구	16	7
152	03055200	말린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6	7
153	03055300	말린 대구류 어류	16	7
154	03055400	말린 청어, 멸치 등	16	7
155	03055990	말린 기타 어류	16	7
156	03056100	소금에 절인 청어	16	7
157	03056200	소금에 절인 대구	16	7
158	03056300	소금에 절인 멸치	16	7
159	03056400	소금에 절인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6	10
160	03056910	소금에 절인 갈치	16	7
161	03056920	소금에 절인 조기	16	10
162	03056930	소금에 절인 병어	16	7
163	03056990	소금에 절인 기타 어류	16	7
164	030572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어두, 어미, 부레	16	7
165	03057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지느러미 등	16	7
166	03061100	냉동 슬라이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10	7
167	03061200	냉동 로브스터	10	7
168	03061410	냉동 꽃게	10	7
169	03061490	기타 냉동 게	10	7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170	03061500	냉동 스카피	16	7
171	03061611	냉동 냉수 새우살	8	7
172	03061621	냉동 냉수 참새우살	8	7
173	03061711	냉동 새우살	8	7
174	03061721	냉동 참새우살	8	7
175	03061911	냉동 담수 가재살	16	7
176	03061919	냉동 담수 가재	16	7
177	03061990	기타 냉동 갑각동물	16	7
178	03063190	생물, 신선, 냉장 슬리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15	7
179	03063290	생물, 신선, 냉장 로브스터	15	7
180	03063391	생물, 신선, 냉장 참게	14	7
181	03063399	생물, 신선, 냉장 기타 게	14	7
182	03063490	생물, 신선, 냉장 스카피	14	7
183	03063520	생물, 신선, 냉장 냉수 참새우	15	10
184	03063590	생물, 신선, 냉장 냉수 새우	12	10
185	03063620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참새우	15	10
186	03063990	기타 생물, 신선, 냉장 갑각동물	14	7
187	030691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슬리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15	7
188	030692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로브스터	15	7
189	0306931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참게	14	7
190	0306932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꽃게	14	7
191	030693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게	14	7
192	030694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스카피	14	7
193	0306951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냉수 새우 및 참새우	12	10
194	030695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새우 및 참새우	12	10
195	03069900	갑각동물 가루 및 단립	14	7
196	03071190	생물, 신선, 냉장 굴	14	7
197	03071200	냉동 굴	14	10
198	03071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굴	14	10
199	03072190	생물, 신선, 냉장 가리비	14	10
200	03072200	냉동 가리비	14	10
201	03072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가리비	14	10
202	03073190	생물, 신선, 냉장 홍합	14	10
203	03073200	냉동 홍합	14	10
204	03073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홍합	14	10
205	03075100	생물, 신선, 냉장 낙지	17	7
206	03075200	냉동 낙지	17	7
207	03075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낙지	17	7
208	03076090	달팽이 및 소라	14	7
209	03077191	생물, 신선, 냉장 조개	14	10
210	03077199	생물, 신선, 냉장 새조개	14	10
211	03078190	생물, 신선, 냉장 전복	14	10
212	03078290	생물, 신선, 냉장 소라(라틴어 학명 : Babylonia spirata)	14	10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213	03079190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연체동물	14	7
214	03079200	냉동 기타 연체동물	10	7
215	03079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연체동물	10	7
216	03081190	생물, 신선, 냉장 해삼	14	10
217	03082190	생물, 신선, 냉장 성게	14	10
218	03083019	생물, 신선, 냉장 해파리	14	7
219	03089012	생물, 신선, 냉장 갯지렁이	14	7
220	03089019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14	7
221	030890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10	7
222	16010010	천연 케이싱을 외포장으로 하여 만든 소시지 및 유사 제품	15	5
223	16010020	기타 소시지 및 유사 제품	15	5
224	16010030	소시지로 만든 식품	15	5
225	16021000	고기 또는 식용 내장의 균질화식품	15	5
226	16022000	가공 또는 보존한 동물간장	15	5
227	16023100	가공 또는 보존한 칠면조 고기 및 냉장	15	5
228	16023210	닭고기 통조림	15	5
229	16023291	가공 또는 보존한 닭가슴살	15	5
230	16023292	가공 또는 보존한 닭다리살	15	5
231	1602329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닭고기	15	5
232	1602391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가공고기 및 냉장 통조림	15	5
233	16023991	가공 또는 보존한 오리고기	15	5
234	1602399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가공고기 및 냉장	15	5
235	16024100	가공 또는 보존한 돼지뒷다리 및 그 고깃덩이	15	5
236	16024200	가공 또는 보존한 돼지앞다리 및 그 고깃덩이	15	5
237	16024910	기타 돼지고기 및 내장 통조림	15	5
238	160249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돼지고기, 내장 및 선지	15	5
239	16025010	쇠고기 및 내장 통조림	12	5
240	16025090	기타 가공 또는 보존한 쇠고기, 내장 및 선지	12	5
241	16029010	기타 고기 및 내장 통조림	15	5
242	160290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고기, 내장 및 선지	15	5
243	16030000	고기 및 수산품의 추출물	23	5
244	16041110	가공 또는 보존한 연어	12	10
245	160411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연어	12	10
246	16041200	가공 또는 보존한 청어	12	5
247	16041500	가공 또는 보존한 고등어	12	5
248	16041600	가공 또는 보존한 멸치	12	5
249	16041700	가공 또는 보존한 장어	12	5
250	16041920	가공 또는 보존한 태래어	12	5
251	16041931	가공 또는 보존한 얼룩메기	12	5
252	1604193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얼룩메기	12	5
253	160419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어류	12	5
254	16042019	기타 가공 또는 보조한 생선 통조림	12	5
255	16042099	기타 가공 또는 보조한 생선	12	5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256	16043100	철갑상어 어알젓	12	5
257	16043200	철갑상어 어알젓 대용품	12	5
258	16056300	가공 또는 보존한 해파리	15	5
259	19012000	베이커리용 조제품 및 밀가루 반죽	25	10
260	19021100	소가 없거나 가공하지 않고 계란을 함유한 생반죽	15	10
261	19021900	기타 소가 없거나 가공하지 않은 생반죽	15	10
262	19022000	소를 넣은 반죽	15	10
263	19023010	쌀가루	15	10
264	19023020	실 모양의 당면	15	10
265	19023030	인스턴트 국수	15	10
266	19023090	기타 밀가루 식품	15	10
267	19024000	쿠스쿠스	25	10
268	19030000	전분으로 만든 전분대용품	15	10
269	19041000	곡물 또는 곡물제품을 팽화 또는 베이킹하여 만든 식품	25	10
270	19042000	베이킹하지 않은 시리얼로 만든 식품 및 베이킹한 식품 과의 혼합식품	30	10
271	19043000	찢어서 부순 말린 밀	30	10
272	19049000	삶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조한 곡립	30	10
273	19051000	호밀 토스트	20	10
274	19052000	진저브레드 및 유사제품	20	10
275	19053100	단 과자	15	10
276	19053200	와플	15	10
277	19054000	토스트 및 유사한 구운 빵	20	10
278	19059000	기타 빵, 과자	20	10
279	2001100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오이 및 작은 오이	25	5
280	2001901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마늘	25	5
281	2001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기타 열매, 야채 및 식용식물	25	5
282	20021010	식초 없이 만든 토마토 통조림	19	5
283	20021090	식초 없이 만든 토마토	25	5
284	20029011	무게≤5kg의 토마토 통조림	20	5
285	20029019	무게>5kg의 토마토 통조림	20	5
286	20029090	식초 없이 만든 필렛된 토마토	18	5
287	20031011	식초 없이 만든 양송이 통조림	25	5
288	2003101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가리쿠스 버섯 통조림	25	5
289	20031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가리쿠스 버섯	25	5
290	2003901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버섯 통조림	25	5
291	20039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버섯	25	5
292	20041000	식초 없이 만든 냉동 감자	13	5
293	20049000	식초 없이 만든 냉동 야채 및 모든 야채	25	5
294	20051000	식초 없이 만든 균질화야채(냉동하지 않음)	25	5
295	20052000	식초 없이 만든 감자(냉동하지 않음)	15	5
296	20054000	식초 없이 만든 완두(냉동하지 않음)	25	5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297	20055111	식초 없이 만든 팔 통조림	25	5
298	2005511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없는 강두 및 강낭콩 통조림	25	5
299	20055191	식초 없이 만든 팔(냉동하지 않음), 통조림 제외	25	5
300	200551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없는 강두 및 강낭콩 (냉동하지 않음), 통조림 제외	25	5
301	2005591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있는 강두 및 강낭콩 통조림	25	5
302	200559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있는 강두 및 강낭콩	25	5
303	20056010	식초 없이 만든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25	5
304	20056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스파라거스(냉동하지 않음)	25	5
305	20057000	식초 없이 만든 올리브 열매(냉동하지 않음)	10	5
306	20058000	식초 없이 만든 사탕 옥수수(냉동하지 않음)	10	5
307	20059110	식초 없이 만든 죽순 통조림	25	5
308	200591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죽순(냉동하지 않음)	25	5
309	20059920	식초 없이 만든 누에콩 통조림	25	5
310	20059940	식초 없이 만든 자차이(냉동하지 않음)	25	5
311	20059950	식초 없이 만든 짬 고사리(냉동하지 않음)	25	5
312	20059960	식초 없이 만든 짬 락고(냉동하지 않음)	25	5
313	20059991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야채 및 모든 야채 통조림	25	5
314	200599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야채 및 모든 야채(냉동하지 않음)	25	5
315	20060010	꿀에 절인 대추	30	5
316	20060020	사탕에 절인 올리브 열매	30	5
317	20060090	기타 사탕에 절인 야채, 과일, 견과, 과일 껍질 등	30	5
318	20071000	끓인 과일 균질화식품	30	5
319	20079100	끓인 굴속 과일	30	5
320	20081110	땅콩 통조림	30	5
321	20081120	말린 땅콩	30	5
322	20081130	땅콩잼	30	5
323	20081190	기타 식초 없이 만든 땅콩	30	5
324	20081910	호두 통조림	20	5
325	20081920	기타 너트 통조림	13	5
326	20081991	식초 없이 만든 밤	10	5
327	20081992	식초 없이 만든 깨	10	5
328	200819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견과 및 너트	10	5
329	20082010	파인애플 통조림	15	5
330	20082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파인애플	15	5
331	20083010	굴속 과일 통조림	20	5
332	20083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굴속 과일	20	5
333	20084010	배 통조림	20	5
334	20084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배	20	5
335	20085000	식초 없이 만든 살구	20	5
336	20086010	식초 없이 만든 체리 통조림	20	5
337	20086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체리	20	5
338	20087010	복숭아(민복숭아 포함) 통조림	10	5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339	20087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복숭아(털없는 복숭아 포함)	20	5
340	20088000	식초 없이 만든 딸기	15	5
341	20089700	식초 없이 만든 모든 과일	10	5
342	20089910	여지 통조림	20	5
343	20089920	용안 통조림	15	5
344	20089932	소금에 절인 다시마	15	10
345	20089933	소금에 절인 미역	15	10
346	20089934	구운 김	15	10
347	2008993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해초 및 조류제품	15	10
348	20089940	올방개 통조림	25	5
349	200899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과일, 견과 및 식물의 식용가능한 부분	15	5
350	20092100	Brix≤20 자몽 주스	15	5
351	20093110	Brix≤20 레몬 주스	18	5
352	20093190	기타 미혼합 Brix≤20 귤속 과일즙	18	5
353	20094100	Brix≤20 파인애플 주스	10	5
354	20095000	토마토주스	30	5
355	20096100	Brix≤30포도주스, 양조한 포도주스 포함	20	5
356	20097100	Brix≤20 사과 주스	20	5
357	20098100	크랜베리 주스	20	5
358	20098912	망고 주스	20	5
359	20098913	달리아 주스	20	5
360	20098914	구아바 주스	20	5
361	20098915	배즙	20	5
362	20098919	기타 미혼합 과일즙	20	5
363	20098920	기타 미혼합 야채즙	20	5
364	20099010	혼합 과일즙	20	5
365	20099090	혼합 야채즙, 과일 및 야채 혼합즙	20	5
366	21011200	커피 농축액 또는 커피를 기본 원료로 만든 제품	30	12
367	21012000	차, 마테차 농축액 및 그 조제품	32	12
368	21013000	로스팅 엔다이브오 기타 로스팅 커피 대용품 및 그 농축액	32	12
369	21031000	간장	28	12
370	21032000	토마토 소스 및 기타 토마토 조미료	15	12
371	21033000	머스터드 파우더 및 그 조미품	15	12
372	21039010	미소	21	12
373	21039020	비터스	21	12
374	21039090	기타 조미료	21	12
375	21041000	국거리 및 그 조제품	15	12
376	21042000	균질화 혼합식품	32	12
377	21050000	아이스크림 및 기타 아이스 푸드(코코아 함유 여부 상관없음)	19	12
378	21069050	물범 기름 캡슐	20	5
379	21069090	기타 코드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	20	12
380	22011010	광천수(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20	5
381	22011020	탄산수(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20	5

연번	HS코드	품명	현행 최혜국 관세율(%)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382	22019011	포장된 천연수	10	5
383	22019019	포장되지 않은 천연수	10	5
384	22019090	기타 물, 여름, 눈(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10	5
385	22021000	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한 물, 광천수 및 탄산수 포함	20	5
386	22029100	무알콜 맥주(VOL < 0.5%)	35	5
387	22029900	기타 무알콜 음료, 단, 과즙, 야채즙 제외	35	5
388	22090000	식초 및 식초를 원료로 만든 식초 대용품	20	5

○ 수입식품 최혜국 잠정 관세율 조정

연번	HS코드	품명	조정 후 최혜국 관세율(%)	취소한 잠정 관세율(%)
1	03063290	생물, 신선, 냉장 로브스터	7	10
2	03063399	생물, 신선, 냉장 기타 게	7	7
3	03079190	생물, 신선, 냉장 꼬끼리조개	7	10
4	16010010	천연 케이싱을 외포장으로 하여 만든 소시지 및 유사 제품	5	8
5	16010020	기타 소시지 및 유사 제품	5	8
6	20071000	끓인 과일 균질화식품	5	15
7	21031000	간장	12	15
8	21069050	물범 기름 캡슐	5	10
9	22011010	광천수(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5	10
10	22029900	기타 무알콜 음료, 단, 과즙, 야채즙 제외	5	20
11	22090000	식초 및 식초를 원료로 만든 식초 대용품	5	15

□ 2018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 협정세율 실시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국무원에서 심사하고 통관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에 근거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에서 생산하는 수입제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수정안> 협정세율을 적용함

○ 수입 일용소비품 최혜국 관세율 조정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1	03021100	신선, 냉장한 송어	10	-
2	03021420	신선, 냉장한 타이멘(라틴어학명 : Hucho hucho)	7	-
3	03021900	기타 신선, 냉장한 연어	10	8
4	03022100	신선, 냉장한 철치가자미	7	9
5	03022200	신선, 냉장한 가자미	7	9
6	03022300	신선, 냉장한 참새대	7	9
7	03022400	신선, 냉장한 터봇	7	6
8	03022900	기타 신선, 냉장한 넙치	7	6
9	03023100	신선, 냉장한 날개다랑어	7	9
10	03023200	신선, 냉장한 황다랑어	7	9
11	03023300	신선, 냉장한 가다랑어 또는 가다랑이	7	8
12	03023400	신선, 냉장한 눈다랑어	7	-
13	03023510	신선, 냉장한 대서양 참다랑어	7	-
14	03023520	신선, 냉장한 참다랑어	7	8
15	03023600	신선, 냉장한 남방참다랑어	7	-
16	03023900	기타 신선, 냉장한 다랑어	7	8
17	03024100	신선, 냉장한 청어	7	8
18	03024200	신선, 냉장한 멸치	7	8
19	03024300	신선, 냉장한 정어리	7	8
20	03024400	신선, 냉장한 고등어	7	8
21	03024500	신선, 냉장한 말쥐취	7	8
22	03024600	신선, 냉장한 날새기	7	8
23	03024700	신선, 냉장한 황새치	7	8
24	03024900	신선, 냉장한 삼치 등	7	8
25	03025100	신선, 냉장한 대구류	7	8
26	03025200		7	8
27	03025300		7	8
28	03025400		7	8
29	03025500		7	8
30	03025600		7	8
31	03025900		7	8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32	03027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모잠비크틸라피아)	7	—
33	03027200	신선, 냉장한 메기	10	8
34	03027300	신선, 냉장한 잉어류	7	8
35	03027400	신선, 냉장한 뱀장어	7	8
36	03027900	신선, 냉장한 나일 파치 및 가물치	7	8
37	03028100	신선, 냉장한 꿩이상어 및 기타 상어	7	9
38	030282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	7	8
39	030283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	7	8
40	03028400	신선, 냉장한 큰입선농어	7	8
41	03028500	신선, 냉장한 도미류	7	8
42	03028910	신선, 냉장한 갈치	7	8
43	03028920	신선, 냉장한 조기	7	8
44	03028930	신선, 냉장한 병어	7	8
45	03028940	신선, 냉장한 복어	10	8
46	03028990	신선, 냉장한 기타 어류	7	8
47	03029100	신선, 냉장한 여간, 여란 및 정자	7	—
48	03029200	신선, 냉장한 상어 지느러미	12	9
49	03029900	신선, 냉장한 지느러미 등 냉장	7	—
50	03031100	냉동한 홍연어	7	6.7
51	03031200	냉동한 기타 홍연어	7	6.7
52	03031300	냉동한 대서양연어	7	—
53	03031900	냉동한 기타 연어과 물고기	10	6.7
54	03032300	냉동한 태래어	7	5
55	03032400	냉동한 메기	10	5
56	03032500	냉동한 잉어과 물고기	10	5
57	03032600	냉동한 뱀장어	10	8
58	03032900	냉동한 나일 파치 및 가물치	7	5
59	03033110	냉동한 참치가자미	7	6.7
60	03033200	냉동한 가자미	7	8
61	03033300	냉동한 참서대	7	8
62	03033400	냉동한 터봇	7	8
63	03033900	기타 냉동한 넙치	7	8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64	03034100	냉동한 날개다랑어	7	9
65	03034200	냉동한 황다랑어	7	9
66	03034300	냉동한 가다랑어 및 가다랑이	7	9
67	03034400	냉동한 눈다랑어	7	—
68	03034510	냉동한 대서양 참다랑어	7	—
69	03034520	냉동한 참다랑어	7	9
70	03034600	냉동한 남방참다랑어	7	—
71	03034900	기타 냉동한 다랑어	7	9
72	03035100	냉동한 청어	7	6.7
73	03035300	냉동한 멸치	7	8
74	03035400	냉동한 고등어	7	6.7
75	03035500	냉동한 말쥐치	7	5
76	03035600	냉동한 날새기	7	5
77	03035700	냉동한 황새치	7	5
78	03035900	냉동한 삼치 등	7	5
79	03036300	냉동한 대구류	7	6.7
80	03036400		7	8
81	03036500		7	8
82	03036600		7	—
83	03036700		7	5
84	03036800		7	5
85	03036900		7	5
86	03038100	냉동한 갯이상어 및 기타 상어	7	9
87	03038200	냉동한 홍어 및 가오리	7	5
88	03038300	냉동한 비막치어	7	5
89	03038400	냉동한 큰입선농어	7	8
90	03038910	냉동한 갈치	7	5
91	03038920	냉동한 조기	7	5
92	03038930	냉동한 병어	7	5
93	03038990	기타 냉동한 어류	7	5
94	03039100	냉동한 어간, 어란 및 정자	7	9
95	03039200	냉동한 상어 지느러미	12	9
96	03039900	냉동한 지느러미 등 냉장	7	6.7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97	03043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 필렛	7	9
98	03043200	신선, 냉장한 메기 필렛	7	9
99	03043300	신선, 냉장한 나일 파치 필렛	7	9
100	03043900	신선, 냉장한 잉어류, 장어, 가물치 필렛	7	9
101	03044100	신선, 냉장한 연어 필렛	7	9
102	03044200	신선, 냉장한 송어 필렛	7	9
103	03044300	신선, 냉장한 넙치 필렛	7	9
104	03044400	신선, 냉장한 대구과 필렛	7	9
105	03044500	신선, 냉장한 황새치 필렛	7	9
106	030446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 필렛	7	9
107	03044700	신선, 냉장한 꿩이상어 및 기타 상어 필렛	7	9
108	030448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 필렛	7	9
109	03044900	신선, 냉장한 가타 생선 필렛	7	9
110	03045100	신선, 냉장한 태래어 등 어육	7	9
111	03045200	신선, 냉장한 연어과 어육	7	9
112	03045300	신선, 냉장한 대구과 어육	7	9
113	03045400	신선, 냉장한 황새치살	7	9
114	03045500	신선, 냉장한 비막치어살	7	9
115	03045600	신선, 냉장한 꿩이상어 및 기타 상어살	7	9
116	03045700	신선, 냉장한 홍어 및 가오리살	7	9
117	03045900	신선, 냉장한 기타 어육	7	9
118	03046100	냉동한 태래어 등 생선 필렛	7	-
119	03046211	냉동 얼룩메기 필렛	7	-
120	03046219	냉동 기타 얼룩메기 필렛	7	-
121	03046290	냉동 기타 메기 필렛	7	-
122	03046300	냉동 나일 파치 필렛	7	-
123	03046900	냉동 잉어류, 장어, 가물치 필렛	7	-
124	03047100	냉동 대구류 필렛	7	-
125	03047200		7	-
126	03047300		7	-
127	03047400		7	-
128	03047500		7	-
129	03047900		7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130	03048100	냉동 연어 필렛	7	-
131	03048200	냉동 송어 필렛	7	-
132	03048300	냉동 넙치 필렛	7	-
133	03048400	냉동 황새치 필렛	7	-
134	03048500	냉동 비막치어 필렛	7	-
135	03048600	냉동 청어 필렛	7	-
136	03048700	냉동 다랑어 필렛	7	-
137	03048800	냉동 상어, 가오리 등 필렛	7	-
138	03048900	냉동 기타 생선 필렛	7	-
139	03049100	냉동 황새치살	7	-
140	03049200	냉동 비막치어살	7	-
141	03049300	냉동 태래어살	7	-
142	03049400	냉동 대구류 어육	7	-
143	03049500		7	-
144	03049600	냉동 광이상어 및 기타 상어살	7	-
145	03049700	냉동 홍어 및 가오리살	7	-
146	03049900	기타 냉동 어육	7	-
147	03051000	식용 가능한 생선가루 및 단립	7	-
148	030520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어간, 어란 및 정자	7	-
149	03053100	말린, 소금에 절인 태래어 등 생선필렛	7	7.8
150	03053200	말린, 소금에 절인 대구류 생선필렛	7	7.8
151	03053900	말린, 소금에 절인 기타 생선필렛	7	7.8
152	03054120	훈제한 연어	7	-
153	03054200	훈제한 청어	7	-
154	03054400	훈제한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7	-
155	03054900	훈제한 기타 어류	7	-
156	03055100	말린 대구	7	-
157	03055200	말린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7	-
158	03055300	말린 대구류 어류	7	-
159	03055400	말린 청어, 멸치 등	7	-
160	03055990	말린 기타 어류	7	-
161	03056100	소금에 절인 청어	7	11
162	03056200	소금에 절인 대구	7	12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163	03056300	소금에 절인 멸치	7	12
164	03056400	소금에 절인 태래어, 메기, 잉어, 장어, 나일 파치 및 가물치	10	-
165	03056910	소금에 절인 갈치	7	-
166	03056920	소금에 절인 조기	10	-
167	03056930	소금에 절인 병어	7	-
168	03056990	소금에 절인 기타 어류	7	-
169	030572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어두, 어미, 부레	7	-
170	03057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지느러미 등	7	-
171	03061100	냉동 슬라이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7	-
172	03061200	냉동 랍스터	7	7.2
173	03061410	냉동 꽃게	7	-
174	03061490	기타 냉동 게	7	-
175	03061500	냉동 스캠피	7	-
176	03061611	냉동 냉수 새우살	7	4
177	03061612	냉동 북쪽분홍새우살	5	2.5
178	03061619	냉동 기타 냉수 새우	5	2.5
179	03061621	냉동 냉수 참새우살	7	4
180	03061629	냉동 기타 냉수 참새우	5	2.5
181	03061711	냉동 새우살	7	4
182	03061719	냉동 기타 새우	5	2.5
183	03061721	냉동 참새우살	7	4
184	03061729	냉동 기타 참새우	5	2.5
185	03061911	냉동 담수 가재살	7	-
186	03061919	냉동 담수 가재	7	-
187	03061990	기타 냉동 갑각동물	7	-
188	03063190	생물, 신선, 냉장 슬라이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7	-
189	03063290	생물, 신선, 냉장 랍스터	7	-
190	03063391	생물, 신선, 냉장 참게	7	-
191	03063399	생물, 신선, 냉장 기타 게	7	-
192	03063490	생물, 신선, 냉장 스캠피	7	-
193	03063520	생물, 신선, 냉장 냉수 참새우	10	-
194	03063590	생물, 신선, 냉장 냉수 새우	10	-
195	03063620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참새우	10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196	03063990	기타 생물, 신선, 냉장 갑각동물	7	-
197	030691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슬리퍼 랍스터 및 기타 랍스터	7	-
198	030692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랍스터	7	-
199	0306931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참게	7	-
200	0306932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꽃게	7	-
201	030693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게	7	-
202	030694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스캄피	7	-
203	0306951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냉수 새우 및 참새우	10	-
204	030695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새우 및 참새우	10	-
205	03069900	갑각동물 가루 및 단립	7	-
206	03071190	생물, 신선, 냉장 굴	7	-
207	03071200	냉동 굴	10	-
208	03071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굴	10	-
209	03072190	생물, 신선, 냉장 가리비	10	-
210	03072200	냉동 가리비	10	-
211	03072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가리비	10	-
212	03073190	생물, 신선, 냉장 홍합	10	-
213	03073200	냉동 홍합	10	9.8
214	03073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홍합	10	9.8
215	03074310	냉동 오징어	12	10
216	03074910	기타 오징어	12	10
217	03075100	생물, 신선, 냉장 낙지	7	-
218	03075200	냉동 낙지	7	-
219	03075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낙지	7	-
220	03076090	달팽이 및 소라	7	-
221	03077191	생물, 신선, 냉장 조개	10	-
222	03077199	생물, 신선, 냉장 새조개	10	-
223	03078190	생물, 신선, 냉장 전복	10	-
224	03078290	생물, 신선, 냉장 소라(라틴어 학명 : <i>Babylonia spirata</i>)	10	-
225	03079190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연체동물	7	-
226	03079200	냉동 기타 연체동물	7	-
227	0307990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연체동물	7	-
228	03081190	생물, 신선, 냉장 해삼	10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229	03082190	생물, 신선, 냉장 성게	10	—
230	03083019	생물, 신선, 냉장 해파리	7	—
231	03089012	생물, 신선, 냉장 갯지렁이	7	—
232	03089019	생물, 신선, 냉장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7	—
233	03089090	말린, 훈제한, 소금에 절인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7	—
234	04021000	지방함량 $\leq$ 1.5% 고체 유제품 및 크림	10	7
235	04022100	지방함량 $>$ 1.5% 무설탕 고체 유제품 및 크림	10	7
236	04052000	유제품스프레드	10	8.1
237	07019000	기타 신선, 냉장 감자	13	9
238	07031010	신선, 냉장 양파	13	6.5
239	07123100	말린 아가리쿠스 버섯	13	9
240	07123920	말린 팽이버섯	13	9
241	07123999	말린 기타 버섯	13	9
242	09041200	간 호추	20	10
243	09042100	갈지 않은 말린 고추	20	10
244	09042200	간 고추	20	10
245	09101100	갈지 않은 생강	15	7.5
246	09101200	간 생강	15	7.5
247	09109100	혼합 조미 향료	15	7.5
248	09109900	기타 조미 향료	15	7.5
249	11063000	과일 및 견과의 분말	20	10
250	12112020	신선, 냉장, 냉동 또는 말린 야생 산삼	20	16.4
251	12119015	신선, 냉장, 냉동 또는 말린 국화	6	3
252	12119019	신선, 냉장, 냉동 또는 말린 반하	6	3
253	12119025	신선, 냉장, 냉동 또는 말린 백출	6	3
254	12122110	식용 가능한 다시마	15	7.5
255	12122131	식용 가능한 말린 미역	15	7.5
256	12122132	식용 가능한 신선 미역	15	7.5
257	12122139	식용 가능한 기타 미역	15	7.5
258	12122141	식용 가능한 말린 김	15	7.5
259	12122142	식용 가능한 신선 김	15	7.5
260	12122149	식용 가능한 기타 김	15	7.5
261	12122190	기타 식용 가능한 해초 및 기타 조류	15	7.5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262	15131900	야자유 및 그 분리품	9	4.5
263	16010010	천연 케이싱을 외포장으로 하여 만든 소시지 및 유사 제품	5	—
264	16010020	기타 소시지 및 유사 제품	5	—
265	16010030	소시지로 만든 식품	5	—
266	16021000	고기 또는 식용 내장의 균질화식품	5	—
267	16022000	가공 또는 보존한 동물간장	5	—
268	16023100	가공 또는 보존한 칠면조 고기 및 냉장	5	—
269	16023210	닭고기 통조림	5	—
270	16023291	가공 또는 보존한 닭가슴살	5	—
271	16023292	가공 또는 보존한 닭다리살	5	—
272	1602329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닭고기	5	—
273	1602391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가금고기 및 냉장 통조림	5	—
274	16023991	가공 또는 보존한 오리고기	5	—
275	1602399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가금고기 및 냉장	5	—
276	16024100	가공 또는 보존한 돼지뒷다리 및 그 고깃덩이	5	—
277	16024200	가공 또는 보존한 돼지앞다리 및 그 고깃덩이	5	—
278	16024910	기타 돼지고기 및 내장 통조림	5	—
279	160249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돼지고기, 내장 및 선지	5	—
280	16025010	쇠고기 및 내장 통조림	5	—
281	16025090	기타 가공 또는 보존한 쇠고기, 내장 및 선지	5	—
282	16029010	기타 고기 및 내장 통조림	5	—
283	160290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고기, 내장 및 선지	5	—
284	16030000	고기 및 수산품의 추출물	5	—
285	16041110	가공 또는 보존한 연어	10	—
286	160411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연어	10	—
287	16041200	가공 또는 보존한 청어	5	—
288	16041500	가공 또는 보존한 고등어	5	—
289	16041600	가공 또는 보존한 멸치	5	—
290	16041700	가공 또는 보존한 장어	5	9.8
291	16041800	가공 또는 보존한 상어 지느러미	12	9.8
292	16041920	가공 또는 보존한 태래어	5	—
293	16041931	가공 또는 보존한 얼룩메기	5	9.8
294	16041939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얼룩메기	5	9.8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295	1604199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어류	5	9.8
296	16042011	상어 지느러미 통조림	12	9.8
297	16042019	기타 가공 또는 보존한 생선 통조림	5	9.8
298	16042091	상어 지느러미	12	9.8
299	16042099	기타 가공 또는 보존한 생선	5	9.8
300	16043100	철갑상어 어알젓	5	—
301	16043200	철갑상어 어알젓 대용품	5	—
302	16056300	가공 또는 보존한 해파리	5	—
303	16055100	가공 또는 보존한 굴	5	3.9
304	16055200	가공 또는 보존한 가리비	5	3.9
305	16055300	가공 또는 보존한 홍합	5	3.9
306	16055400	가공 또는 보존한 오징어	5	3.9
307	16055500	가공 또는 보존한 낚지	5	3.9
308	16055610	가공 또는 보존한 조개	5	3.9
309	16055620	가공 또는 보존한 새조개	5	3.9
310	16055700	가공 또는 보존한 전복	5	3.9
311	16055800	가공 또는 보존한 달팽이 및 소라	5	3.9
312	1605590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연체동물	5	3.9
313	16056100	가공 또는 보존한 해삼	5	3.9
314	16056200	가공 또는 보존한 성게	5	3.9
315	16056300	가공 또는 보존한 해파리	15	—
316	16056900	가공 또는 보존한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5	3.9
317	17041000	껌	12	9.5
318	17049000	기타 무코코아 설탕으로 만든 식품	10	8.2
319	18062000	건당 순량 >2kg의 코코아 함유하는 식품	10	7.7
320	18063100	기타 샌드 코코아 함유하는 식품	8	6.4
321	18063200	기타 샌드 없는 코코아 함유하는 식품	10	7.7
322	1806900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하는 식품	8	6.4
323	19012000	베이커리용 조제품 및 밀가루 반죽	10	—
324	19021100	소가 없거나 가공하지 않고 계란을 함유한 생반죽	10	—
325	19021900	기타 소가 없거나 가공하지 않은 생반죽	10	—
326	19022000	소를 넣은 반죽	10	—
327	19023010	쌀가루	10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328	19023020	실 모양의 당면	10	-
329	19023030	인스턴트 국수	10	13.1
330	19023090	기타 밀가루 식품	10	13.1
331	19024000	쿠스쿠스	10	-
332	19030000	전분으로 만든 전분대용품	10	-
333	19041000	곡물 또는 곡물제품을 팽화 또는 베이킹하여 만든 식품	10	-
334	19042000	베이킹하지 않은 시리얼로 만든 식품 및 베이킹한 식품과의 혼합식품	10	-
335	19043000	찜어서 부순 말린 밀	10	-
336	19049000	삶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조한 곡립	10	-
337	19051000	호밀 토스트	10	-
338	19052000	진저브레드 및 유사제품	10	-
339	19053100	단 과자	10	12.3
340	19053200	와플	10	12.3
341	19054000	토스트 및 유사한 구운 빵	10	-
342	19059000	기타 빵, 과자	10	17.2
343	2001100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오이 및 작은 오이	5	-
344	2001901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마늘	5	-
345	2001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존한 기타 열매, 야채 및 식용식물	5	-
346	20021010	식초 없이 만든 토마토 통조림	5	-
347	20021090	식초 없이 만든 토마토	5	-
348	20029011	무게≤5kg의 토마토 통조림	5	-
349	20029019	무게>5kg의 토마토 통조림	5	-
350	20029090	식초 없이 만든 필렛된 토마토	5	-
351	20031011	식초 없이 만든 양송이 통조림	5	-
352	2003101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가리쿠스 버섯 통조림	5	-
353	20031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가리쿠스 버섯	5	-
354	2003901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버섯 통조림	5	-
355	20039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버섯	5	-
356	20041000	식초 없이 만든 냉동 감자	5	-
357	20049000	식초 없이 만든 냉동 야채 및 모든 야채	5	-
358	20051000	식초 없이 만든 균질화야채(냉동하지 않음)	5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359	20052000	식초 없이 만든 감재(냉동하지 않음)	5	-
360	20054000	식초 없이 만든 완두(냉동하지 않음)	5	-
361	20055111	식초 없이 만든 팔 통조림	5	-
362	2005511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없는 강두 및 강낭콩 통조림	5	-
363	20055191	식초 없이 만든 팔(냉동하지 않음), 통조림 제외	5	-
364	200551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없는 강두 및 강낭콩 (냉동하지 않음), 통조림 제외	5	-
365	2005591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있는 강두 및 강낭콩 통조림	5	-
366	200559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껍질이 있는 강두 및 강낭콩	5	-
367	20056010	식초 없이 만든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5	-
368	20056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아스파라거스(냉동하지 않음)	5	-
369	20057000	식초 없이 만든 올리브 열매(냉동하지 않음)	5	-
370	20058000	식초 없이 만든 사탕 옥수수(냉동하지 않음)	5	-
371	20059110	식초 없이 만든 죽순 통조림	5	-
372	200591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죽순(냉동하지 않음)	5	-
373	20059920	식초 없이 만든 누에콩 통조림	5	-
374	20059940	식초 없이 만든 자차이(냉동하지 않음)	5	-
375	20059950	식초 없이 만든 찐 고사리(냉동하지 않음)	5	-
376	20059960	식초 없이 만든 찐 락교(냉동하지 않음)	5	-
377	20059991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야채 및 모든 야채 통조림	5	-
378	200599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야채 및 모든 야채(냉동하지 않음)	5	-
379	20060010	꿀에 절인 대추	5	-
380	20060020	사탕에 절인 올리브 열매	5	-
381	20060090	기타 사탕에 절인 야채, 과일, 견과, 과일 껍질 등	5	-
382	20071000	끓인 과일 균질화식품	5	-
383	20079100	끓인 굴속 과일	5	-
384	20081110	땅콩 통조림	5	-
385	20081120	말린 땅콩	5	-
386	20081130	땅콩잼	5	-
387	20081190	기타 식초 없이 만든 땅콩	5	-
388	20081910	호두 통조림	5	10
389	20081920	기타 너트 통조림	5	6,5
390	20081991	식초 없이 만든 밤	5	5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391	20081992	식초 없이 만든 깨	5	5
392	2008199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견과 및 너트	5	5
393	20082010	파인애플 통조림	5	—
394	20082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파인애플	5	—
395	20083010	굴속 과일 통조림	5	—
396	20083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굴속 과일	5	—
397	20084010	배 통조림	5	—
398	20084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배	5	—
399	20085000	식초 없이 만든 살구	5	—
400	20086010	식초 없이 만든 체리 통조림	5	—
401	20086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체리	5	—
402	20087010	복숭아(민복숭아 포함) 통조림	5	—
403	200870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복숭아(털없는 복숭아 포함)	5	—
404	20088000	식초 없이 만든 딸기	5	—
405	20089700	식초 없이 만든 모든 과일	5	—
406	20089910	여지 통조림	5	—
407	20089920	용안 통조림	5	—
408	20089931	조미김	15	13.8
409	20089932	소금에 절인 다시마	10	—
410	20089933	소금에 절인 미역	10	—
411	20089934	구운 김	10	—
412	20089939	식초 없이 만든 기타 해초 및 조류제품	10	—
413	20089940	올방개 통조림	5	—
414	20089990	식초 없이 만든 기타 과일, 견과 및 식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	5	—
415	20092100	Brix≤20 자몽 주스	5	—
416	20093110	Brix≤20 레몬 주스	5	16.7
417	20093190	기타 미혼합 Brix≤20 굴속 과일즙	5	16.7
418	20093910	Brix>20 레몬 주스	18	16.7
419	20093990	기타 미혼합 굴속 과일즙	18	16.7
420	20094100	Brix≤20 파인애플 주스	5	—
421	20095000	토마토주스	5	—
422	20096100	Brix≤30포도주스, 양조한 포도주스 포함	5	—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423	20097100	Brix≤20 사과 주스	5	—
424	20098100	크랜베리 주스	5	10
425	20098912	망고 주스	5	17.4
426	20098913	달리아 주스	5	17.4
427	20098914	구아바 주스	5	17.4
428	20098915	배즙	5	10
429	20098919	기타 미혼합 과일즙	5	10
430	20098920	기타 미혼합 야채즙	5	10
431	20099010	혼합 과일즙	5	17.4
432	20099090	혼합 야채즙, 과일 및 야채 혼합즙	5	—
433	21011200	커피 농축액 또는 커피를 기본 원료로 만든 제품	12	—
434	21012000	차, 마테차 농축액 및 그 조제품	12	16
435	21013000	로스팅 엔다이브로 기타 로스팅 커피 대용품 및 그 농축액	12	—
436	21031000	간장	12	—
437	21032000	토마토 소스 및 기타 토마토 조미료	12	—
438	21033000	머스터드 파우더 및 그 조미품	12	—
439	21039010	미소	12	18.3
440	21039020	비터스	12	—
441	21039090	기타 조미료	12	18.5
442	21041000	국거리 및 그 조제품	12	—
443	21042000	균질화 혼합식품	12	—
444	21050000	아이스크림 및 기타 아이스 푸드(코코아 함유 여부 상관없음)	12	—
445	21069040	야자즙	10	9
446	21069050	물범 기름 캡슐	5	18.4
447	21069090	기타 코드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	12	18.4
448	22011010	광천수(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5	—
449	22011020	탄산수(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5	—
450	22019011	포장된 천연수	5	—
451	22019019	포장되지 않은 천연수	5	—
452	22019090	기타 물, 어름, 눈(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5	—
453	22021000	조미료, 설탕 또는 기타 단물질을 첨가한 물, 광천수 및 탄산수 포함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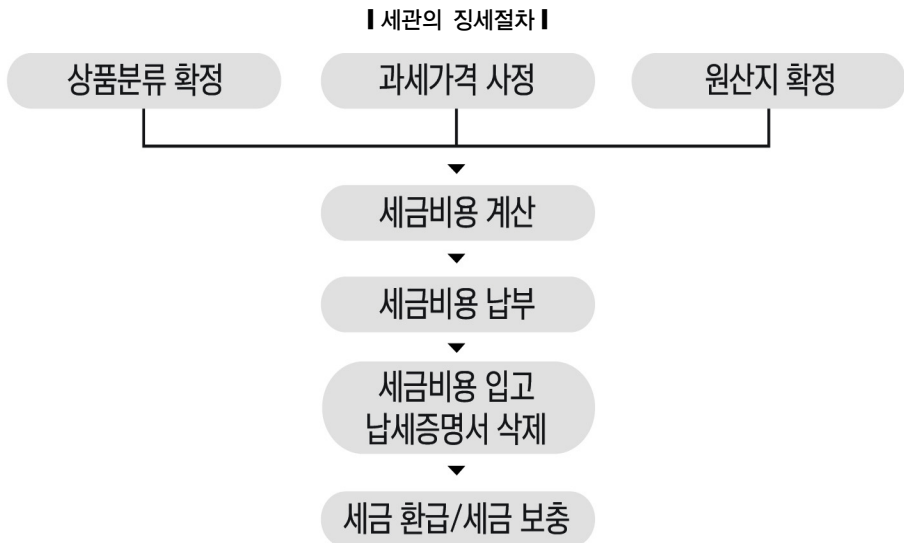
연번	HS코드	품명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최혜국 관세율(%)	2018년 7월 1일 부터의 아태협정 세율(%)
454	22029100	무알콜 맥주(VOL<0.5%)	5	29.4
455	22029900	기타 무알콜 음료, 단, 과즙, 야채즙 제외	5	29.4
456	22086000	보드카	10	8.8
457	22087000	리큐어 및 코크와인	10	8.8
458	22089010	데킬라	10	8.8
459	22089020	백주	10	8.8
460	22089090	기타 증류주 및 알코올 음료	10	8.8
461	22090000	식초 및 식초를 원료로 만든 식초 대용품	5	-

* 자료 : <http://gss.mof.gov.cn/>

3. 세금 징수

□ 징세절차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필 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증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증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 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관세	수입관세(증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증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수입 소비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증량징수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복합징수	소비세=증가 소비세+증량 소비세	

□ 수입 증치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증치세=징세가격×증치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율+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4. 통관절차

가.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 화물별 수입 통관절차

구 분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 수입화물	/	수입신고 세금비용 납부 검사 및 통과 화물 수령	/
보세 수입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심의삭제
특정 감면세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 입국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사건 취소

나.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 일반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

검험검역 1단계

- 1) 신청인 검험검역신고
- 2) 출입국 검험검역기구 입경 화물 통관단 발행

통관단계

-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 2) [세관] 서류심사 진행
-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 서류제출
-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 5) [신청인] 세금 납부
- 6) [세관] 화물검사
- 7) [세관] 화물통과
- 8) [신청인] 화물수령
- 9) [세관] 증명서 발급

검험검역 2단계

- 1) [세관] 샘플검사
- 2) [세관] 위생검역증서 발행

□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 서류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세관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생증명 - 중문라벨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입경화물통관단

다.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1) 육제품

- 검역조건 : 원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 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소, 돼지, 양, 닭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하지만,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 허가증이 추가로 요구됨

2) 수산동물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11년 총국령 제135호령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 근거 한국 관련정부에서 발급하는 <대중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에 근거하여 양식 수산동물인 경우에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AU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 농업부가 발급한 합법 어획 채취 제품 통관증명이 요구됨

3) 채소 & 과일류

- 검역조건 : 신선과일 및 토마토, 가지, 고추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에 근거하여 수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A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4) 식량 & 가공품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에 근거하여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은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음

○ 통관조건 : At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t	관세쿼터 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 t 관세쿼터 증명은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은 통관서류에 상무부 발급 관세쿼터 증명 추가

5) 유제품(조제분유 포함)

○ 검역조건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Health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exported to China from Republic of Korea) 필요, 신선 우유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에 근거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 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하나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는 상무부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이 추가로 요구됨

6) 약재 · 기능성 식품(대표 인삼류)

○ 검역조건(약재) :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 인삼(홍삼, 백삼 등)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를 신청하여 취득(수입약재는 통관지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에서 검사 및 통관단 발급)

- 검역조건(기능성 식품) : 중국위생부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수입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취득

○ 통관조건 : AQ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Q	수입약품통관당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Q 수입약품통관단은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에만 적용

- 통관절차 :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며 수삼을 제외한 기타 인삼(홍삼, 백삼 등)은 지정 세관(약품수입 허가세관 & 약재수입 허가세관)을 통하여 수입
※ 첨부 1) 약품·약재 수입 허가세관

구분	세관
약품수입허가세관 (19)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Ning파(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무한(武汉), 광주(广州), 심천(深圳), 주해(珠海), 해구(海口), 중경(重庆), 성도(成都), 서안(西安), 남녕(南宁)
약재수입허가변경세관 (19)	흑하(黑河), 동녕(东宁), 집안(集安), 장백(长白), 도문(图门), 삼합(三合), 이련호특(二连浩特), 만주리(满洲里), 빙상(凭祥), 동흥(东兴), 옹방(龙邦), 서리(瑞丽), 천보(天保), 경홍(景洪), 하구(河口), 아라산구(阿拉山口), 콕이과사(霍尔果斯), 토이소트(吐尔尕特), 흥기랍보(红其拉普), 장목(樟木)

※ 첨부 2)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

人參、人參葉、人參果、三七、土茯苓、大蓯、女貞子、山茱萸、川牛膝、川貝母、川芎、馬鹿胎、馬鹿茸、馬鹿骨、丹參、五加皮、五味子、升麻、天門冬、天麻、太子參、巴戟天、木香、木賊、牛蒡子、牛蒡根、車前子、車前草、北沙參、平貝母、玄參、生地黄、生何首烏、白及、白朮、白芍、白豆蔻、石決明、石斛(需提供可使用證明)、地骨皮、當歸、竹茹、紅花、紅景天、西洋參、吳茱萸、懷牛膝、杜仲、杜仲葉、沙苑子、牡丹皮、蘆薈、蒼朮、補骨脂、訶子、赤芍、遠志、麥門冬、龜甲、佩蘭、側柏葉、制大黃、制何首烏、刺五加、刺玫果、澤蘭、澤瀉、玫瑰花、玫瑰茄、知母、羅布麻、苦丁茶、金蕎麥、金櫻子、青皮、厚朴、厚朴花、姜黃、枳殼、枳實、柏子仁、珍珠、紋殼藍、胡蘆巴、茜草、華荻、韭菜子、首烏藤、香附、骨碎補、黨參、桑白皮、桑枝、浙貝母、益母草、積雪草、淫羊藿、菟絲子、野菊花、銀杏葉、黃芪、湖北貝母、番泻叶、蛤蚧、越橘、槐實、蒲黃、蒺藜、蜂膠、酸角、墨旱蓮、熟大黃、熟地黃、鱉甲

5.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가.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원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상무부 : <http://www.mofcom.gov.cn>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http://www.sda.gov.cn>

나. 관련 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 대외무역법 - 세관법	
행정법규 (국무원)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장행방법	

다. 관련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세칙(2016년)

1. 검역제도 일반

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아래 “질검총국”이라 함) 수출입 검역업무 세관으로 통합

1) 세관의 통관일체화 개혁

- 중국은 수출입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세관의 “통관일체화(通関一体化)” 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임. 기존 중국의 수입 통관은 지역별로 세관의 집행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중국은 각 항구 세관의 통관 수속을 통합화·전산화시키는 “통관일체화(通関一体化)” 제도를 시행함
- 그러나 ‘통관수속 및 세금징수’를 세관이 담당하고 ‘물품 검역’을 질검총국(CIQ)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검역에 민감한 농수산물식품은 세관의 ‘통관일체화’시행에도 불구하고 질검총국(CIQ) 검역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수입항을 통해서만 ‘통관수속, 세금징수, 물품검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2) 질검총국 검역업무 세관으로 통합

- 2018년 3월 17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关于提请审议国务院机构改革方案, 이하 방안)〉에 관한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해당 방안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모두 통폐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수출입 검험검역 관리 책임과 인원을 해관총서로 통합했음. (将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的出入境检验检疫管理职责和队伍划入海关总署.)’는 내용을 명시하여, 양회 이후 질검총국의 검역업무가 해관으로 통합되었음

3) 원 출입국검험검역 주요업무

업무분류	업무내용
수출입상품 검험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출입국 상품과 기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검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상품에 대한 검험
수입상품 인증관리	국가에서 인류건강과 동식물건강 및 환경보호와 공공안전과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인증제도
입국폐기물원료 선적전의 검험	국가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폐기물에 대한 선적전 검험제도
수출상품 품질허가	국가에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
식품위생 감독검험	수입식품(음료, 주류, 설탕류를 포함), 수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공구와 설비에 대한 위생감독검험
동식물 검역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깔개재료, 동식물 전염병지역의 운송공구, 입국시 해체한 폐기 선박, 식물 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재료에 대한 검역허가제도
출국상품 운송포장 검험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운송포장에 대한 성능검험
외상투자재산 감정	외상투자 재산 감정은 상품의 가치감정, 손실감정,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
화물 적재와 파손 감정	선박과 컨테이너로 식량과 식용유식품, 냉동품 등 부식되기 쉬운 식품을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감정
위생검역과 처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컨테이너, 수하물, 화물, 우송물 등에 대한 의학검사와 위생 검사
섭외검험검역감정 심사절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수출입상품 검험, 감정, 인증회사에 대한 심사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합작	WTO/TBT협약의서와 SPS협약의서 자본업무, UN, APCE과 ASEM 등 국제조직과의 연락 업무, 정부 간 검험검역 합작협약의서, 인증인가 합작협약의서, 검험검역 협약의서 집행 의정서 등의 체결과 실시를 책임

법률근거, 검험검역내용, 검험방식

업무	항목	세 부 내 역
수출입상품검험	법률근거	- “수출입상품검험법”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검험내용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검험방식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감정 - 위탁검험
출입국동식물검역	법률근거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검역방식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험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 출입국 운송공구 검역
국경위생검역	법률근거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검험
	검역방식	- 출입국 검역 - 국경 전염병 검사 - 출입국 위생감독

4) 법률체계

- 중국의 검역관리제도는 국가주석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 등 국가법
- 국무원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 주관부서령(令)으로 발표되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출입육류검험검역관리방법〉,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Ⅱ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Ⅱ

구분	분 류	주요법규
1	법 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 식품안전법 - 국경위생검역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사료사료첨가제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국검험검역차압, 압수관리규정 - 수출입상품수량중량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리콜관리규정 - 수입상품파손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라벨관리규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경화물목재포장검험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국검험검역신고규정

2. 품목별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가. 품목별 검역제도(국가질검총국 행정법규)

1)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 144호, 2012.03.01)

-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등기(注册)제도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등록(备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등록(备案)정보 제공. 등기(注册)와 등록(备案) 명단은 총국 홈페이지에 발표(9조)

Ⅰ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기(注册)실시 목록 Ⅰ

No	명 칭	정 의	비 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갑각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물을 번식재료는 불포함

*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수입식품이 진경동식물검역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진경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 가능(10조)

Ⅰ 검험신고 제출자료 Ⅰ (12조)

1.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2. 관련 허가문서
3. 법률법규,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명시한 수출국가(지역) 관방 검역(위생)증서
4.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수입식품라벨샘플과 번역본 제출
5. 최초로 수입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본 방법 8조항 규정 허가증명문서 제출
6. 수입식품에 동봉되는 기타 증서 및 증명서류

* 검험신고 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총 가치, 생산일자(번호)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내용을 일일이 신고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내용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의 부합여부 및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사 진행, 수입식품라벨 및 설명서 중 수상내용, 증서획득, 산지 및 기타내용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16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합격증명 취득 전에는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17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합격증명을 제출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 합격증명은 화물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 (번호) 등을 포함. 브랜드, 규격이 없는 경우 무(无)로 표기(18조)
- 수입식품 검험검역 불합격 시 불합격증명이 발급됨.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서 불합격될 경우 당사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 기타 항목으로 불합격될 경우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재 검험을 통하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8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상은 사전에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등록(备案) 신청(19조)

Ⅰ 수입상 등록신청 자료 Ⅰ

1. 수입상등록신청표(进口商备案申请表)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중, 법정대표인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등 원본&사본
3.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설치, 부서기능 및 담당 직책
5. 경영코자하는 식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식품수입, 가공, 판매 중사 경력자는 관련 설명(식품품종, 수량) 제공
7. 자체 검사신고 시 자체검사신고단위등록등기증명서 원본&사본

2) 수출입 육류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총국령 136호, 2011.06.01)

- 수출입 육류제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육류제품은 동물 도살체의 식용부분(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통조림 제품은 미포함(3조)
- 수입 육류제품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육류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7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 업체만 육류제품 수입 가능(10조)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 취득해야 함(12조)
- 수입육류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검험검역기구가 인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에 저장(13조)

Ⅰ 신선, 냉동육류제품 포장요구 Ⅰ(14조항)

1. 내, 외포장은 무독, 무해 재료 사용하며 완전하고 손상이 없어야함
2. 내, 외포장에 원산지, 품명, 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로트번호표기
3. 외포장에 중문으로 규격, 산지,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 내용 표기, 목적지는 중화 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측 검험검역표기 추가

- 육류제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 원본,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5조)

■ 수입육류제품 현장검역내용 I (18조)

1. 운송도구 위생청결검사. 온도통제설비 정상작동여부. 온도기록계 요구 부합여부
2. 화물과 증서일치여부 검사.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화물명칭, 수량, 중량,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업체명 혹은 등록번호, 생산일자, 포장, 화물기호,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증서번호, 표기 혹은 봉인표기 등 정보
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4. 정량포장 육류제품의 라벨 요구 부합여부
5. 신선, 냉동육류제품은 신선정도, 중심온도의 요구 부합여부, 병리변화여부 및 육안식별가능 기생충, 생활해충, 이물질 및 기타 이상 상황 검사, 필요시 증숙(蒸熟)실험

- 수입신선, 냉동육류제품은 현장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19조)

■ 수입육류제품 검험검역결과 처리내용 I (21조)

1. 검험검역 합격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육류제품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명과 등록번호,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2. 검험검역 불합격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이하 상황은 반품 혹은 폐기처리
 - 1)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는 경우
 -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발급 관련 증서 없는 경우
 - 3) 등기(注册)를 하지 않은 생산업체 수입육류제품
 - 4)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3. 검험검역을 거쳐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4. 대외 클레임 시 관련 증명 발급

- 동물역병 유행국가/지역에서 수입금지 동물 및 그 제품 리스트(2018.05.15.)

국가	역병	수입금지 제품
한국	조류 독감	조류 및 그 제품
	돼지콜레라	돼지 및 그 제품
	구제역	우제(偶蹄) 동물 및 그 제품

※ 자료 : 세관총서(<http://www.customs.gov.cn/customs/jygy/dzwjygy/jsxx/1842256/index.html>)

○ 평가심사요구에 부합하는 국가/지역에서 육류제품 리스트(2018.06.22.)

국가	제품 종류 및 협정서 체결날짜	비고
한국	삼계탕 (2015년 10월31일 협정서 체결)	등록된 삼계탕 가공업체의 등록번호 : 19980476002(가공, 저장), 6430000-00402006-0014(가공, 저장), 2013-0476004(가공, 저장), 6460000-004-1998-0002(가공, 저장), 6430000-004-2009-0002(가공, 저장) 위에 5개 업체가 등록한 제품품목 : 삼계탕 등록된 닭(도재, 분할, 저장) 공장의 등록 번호 : 19900476001, 20060405059, 2006-0405061, 2013-0476033, 6460000-005-1998-0004, 6460000-005-1992-0002 위에 6개 업체가 한국 대중수출 삼계탕 업체에게 닭고기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인 직접 대중수출 불가

* 자료 : 질검총국(http://jckspaaj.aqsiq.gov.cn/xz/spxz/201303/t20130329_349307.htm)

3)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총국령 135호, 2011.06.01)

- 수출입 수산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수산물은 식용 수생동물 및 제품임. 수모류, 연체류, 갑각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하지 않음(3조)
- 수입 수산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산물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 제출(8조)
- 질검총국은 중국내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
(备案)관리 실시, 수입 수산물의 경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기(注册)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10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수산물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수산물 수입 가능(10조)
- 국가질검총국은 안전위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입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
동물 및 기타 양식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상기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허가증을 취득
해야 함(13조)

- 수산물의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정보의 원본, 원산지증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4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령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서에 대하여 심사 확인 후 요구에 부합되면 접수, 검역심사비준수량을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고 입경 화물통관증명 발급(15조)
- 수입수산물물은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 저장(16조)

■ 수입수산물 현장검역내용 ■ (18조)

1. 증서 대조 확인, 화물 검사 확인
2. 포장 수입수산물포장 기본요구 부합여부 검사 확인
3. 식물성해충이 쉽게 번식하는 수입 열장 혹은 건제수산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실시, 필요시 위해제거처리
4. 부패변질여부, 이물질함유여부, 건조여부, 피 얼음 존재여부, 서리 과다여부 검사 확인

- 수입 정량포장 수산물의 중문라벨은 중국식품라벨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함(19조)

■ 수입수산물 샘플 검험항목 ■ (20조)

1.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 중금속, 농수약잔류물 등 유독유해물질
2. 역병, 기생충
3. 기타 요구 항목

- 수입수산물 검험검역 합격 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하여 생산, 가공, 판매, 사용을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수산물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와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등의 항목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규정 합격 후에야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함. 당사자가 클레임증명 등 기타증명 발급을 신청 시 관련 증명 발급(21조)

4) 진경과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총국령 68호, 2005.07.05)

- 진경 신선과일(이하 과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진경과일무역계약 혹은 협의 체결 전 국가질검총국에 진경과일검역심사비준 신청,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취득(5조)

-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신고 시 <검역허가증> 정본과 수출국가 지역 관방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정본을 제출
- 현장 혹은 실험실 검역에서 발견된 벌레, 병균, 잡초 등 유해생물에 대하여 감정 진행,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 검측 진행 후에 검험검역 결과서 발급(11조)
- 이하 상황발생 시 사정에 따라 관련 과일 품종 혹은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잠시 정지(13조)

■ 진경과일 수입잠정조치 상황 ■ (13조)

1. 진경 과일 과수원, 가공 공장지역 혹은 주변 지역에 엄중한 식물 유해물질(생물) 발생시
2. 검험검역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진경 검역성 유해생물 발견 시
3. 검험검역에서 유독유해물질 함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표준규정 초과 시
4. 중국의 검험검역비용, 법규 및 양자협정 혹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검험검역을 받지 않은 진경과일은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전, 판매, 사용을 금지

5) 한국 대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질검총국 한국의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중국질검총국은 태국, 스리랑카, 한국, 에티오피아 검역기관과 협상을 통해 검역요건을 체결 및 확인함¹⁾, 한국과는 ‘중국 여지 대 한국 수출 검역요구 (中国荔枝输韩植物检疫要求)’를 체결. 관련 제품 모두 검역절차를 검토하여 2015년 8월 4일부터 태국(렌우), 스리랑카(바나나), 한국(포도) 및 에티오피아 대두의 대 중국 수출을 허가함

■ 한국 포도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 ■

1. 법률법규의거
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나.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다. ‘한국 신선 포도 대 중국 수출검사검역요구’
2. 입국 허준 품목
- 포도(Vitis vinifera Linn.), 아래 ‘포도’라 함

- 1) 태국 : 태국 렌우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泰国莲雾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스리랑카 : 스리랑카 바나나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斯里兰卡香蕉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대두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埃塞俄比亚大豆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3. 수출 허가 생산지역

- 한국 포도 생산지역

4. 수출 허가 과수원 및 포장공장

- 대중 수출 포도는 등록된 과수원 및 공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수출 화물 본 협정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추적하기 위해 등록정보가 '명칭, 주소 및 표기코드' 포함해야 한다. 등록 리스트는 매년 수출 계절 전 한국동식물검역국(아래 'QIA' 라함)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아래 'AQSIQ')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리스트가 AQSIQ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5.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 5.1 温室条蓟马Hercinothrips femoralis
- 5.2 日本臀纹粉蚧Planococcus kraunhiae
- 5.3 葡萄根瘤蚜Viteus vitifolii
- 5.4 大丽轮枝孢Verticillium dahliae

6. 수출 전 요구

6.1. 과수원 관리

- 가. 매년 포도 성장 시기에 근접한 기간에 실시하거나 인공조사 방법으로 중국에서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요시 화학적(약제)방제 혹은 생물학적 방제 조치를 취한다. 재배자 혹은 가공공장모니터링 및 농약살포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사용된 화학약품은 등록하여 AQSIQ에 제공해야 한다.
- 나. QIA는 부정기 병충해 방제(살포시간, 종류 및 조제량), 논발위생 관리 등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6.2. 포장공장 관리

- 가. QIA는 수확시기에 대 중 수출 포도의 과수원 및 가공공장 검사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된 과수원에 봉지가 완전한 포도만 포장공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확보한다. 과실은 포도 덩굴에서 직접 따야 되며 낙과 없어야 된다. 봉지 달린 채 가공공장으로 운송, 분류 전 봉지를 벗긴다.
- 나. 포장공장 진입된 과실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되며 모든 병충과실, 기형과실 제거, 되도록 과실에 곤충, 진드기, 썩은 과일, 나뭇가지, 나뭇잎, 식물 잔재 및 토양 등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 특히 포도송이 내부 검역성 유해생물 휴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발견 될 경우, 해당 과수원 대 중 포도 수출자격 취소하거나 상응하는 해충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충구제 조치는 AQSIQ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포장상자 내 SO2 랩 깔아야 되며 대 중 수출 포도는 해충 없도록 해야 한다.
- 라. 포장 과정 중 각 포장지 샘플링조사 실시한다.
- 마. 대중 수출 포도 별도로 저장, 유해생물 점염 피하기 위해 전용 창고를 사용한다.

6.3. 포장요구

- 가. 포장재료 새것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하여 관련 식물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포장상자 통풍구 있을 경우, 방충 스크린 덮고 해충을 방지해야 한다.
- 나. 각 포장박스에 밀봉 마크를 붙여야 된다. 밀봉 마크는 AQSIQ 및 한국검역주관기관에 등록해야 된다.
- 다. 각 포장박스 위에 영문으로 과일종류, 산지(주, 시 혹은 현), 국가, 과수원 혹은 그 등록번호, 포장 공장명칭 및 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각 팔레트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이라고 표기해야 되며 팔레트가 없을 경우, 포장박스 위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로 표기해야 한다.

6.4. 수출 전의 검사검역

- 가. 한국수출과일검사검역 일반 절차대로 현장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한다.
- 나. QIA 혹은 QIA 수권자 아래 비례대로 대중 수출 포도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선적운송 포도, 1차수 2% 비례로 샘플링검사 실시, 600송이 이상이어야 된다. 항공 운수할 경우, 1차수 10% 이상 샘플링검사 실시하도록 한다.
- 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이 검출되면 해당 차수의 화물 대중 수출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과수원 및 포장공장을 중지시키며 QIA 혹은 QIA 수권자 문제점을 발견될 때까지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조사기록을 보존하여 요구대로 AQSIQ 혹은 중국입국항구 CIQ에 제출해야 한다.

6.5. 식물검역증서 요구

- 검사검역 합격될 경우 QIA 혹은 QIA 수권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컨테이너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차수의 포도는 <한국신선포도 대 중 수출 검사검역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 생물 없다'란 추가성명을 표기한다.

7. 입경 요구 :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아래와 같은 요구대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7.1. 관련 증명서류 검사

- 가. 한국 대중 수출 포도가 AQSIQ 발급한 '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 구비 여부를 검사한다.
- 나. 관련 증명서류는 본 요구 6.5 규정에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7.2. 입경 검사검역

- '검사검역공작수첩'식물검사검역부첩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합격될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8. 요구 미달에 대한 처리

- 8.1. 검사검역 통해 포장은 6.3 관련 규정에 미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입경 금지
- 8.2. 등록하지 않은 과수원 및 포장공장 생산한 포도를 검출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입경 금지
- 8.3. 검역성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반품, 중계수출, 소각 및 검역처리를 할 것이다. AQSIQ 즉시 QIA 통지하여 해당 과수원 대 중국 포도 수출 임시중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취한다. AQSIQ는 QIA 취하는 개선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수출임시중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9. 예비검사

-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QIA 협조 하에 AQSIQ는 2명 검사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대 중국 수출 포도 과수원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방제, 포장 및 냉장관리 등 상황을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적어도 본 사업 시작한 초년에 AQSIQ는 해당 연도 대 중국 수출 모든 차수의 포도에 대해 QIA 혹은 QIA 수권자 연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가 대 중 수출금지 혹은 개선조치를 취한다. 수입검사검역 상황에 따라 AQSIQ는 추후 수확시기에 검역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예비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10. 회고적인 심사

- 한국포도 유해생물 발생한 변화 및 검출 상황에 따라 AQSIQ는 진일보한 위험평가를 할 것이며 QIA와 협상하여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조정한다.

* 자료 : 중국품질검독관리검사검역국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qg_12538/qtjw/201508/t20150805_446473.htm)

Ⅱ 대 중국 수출 검사검역 허가 신선과일 품종 및 수출지역 리스트(2016.9.18.) Ⅱ

수출국가/지역	과일품종
태국	타마린드, 체리모야, 파파야, 오렐자, 구아바, 람부탄, 로스애플, 바라밀, 롱콩, 파인애플, 인삼열매, 바나나, 달리아, 야자, 용안, 두리안, 망고, 여지, 망고스틴, 쿨, 오렌지, 유자
말레이시아	용안, 망고스틴, 여지, 야자, 수박, 목과, 람부탄
인도네시아	바나나, 용안, 망고스틴, 살라
베트남	망고, 용안, 바나나, 여지, 수박, 람부탄, 바라밀, 용과
미얀마	용안, 망고스틴, 람부탄, 여지, 망고, 수박, 참외, 모에대추
필리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일본	사과, 배

수출국가/지역	과일품종
파키스탄	망고, 감귤류(귤, 오렌지)
인도	망고, 포도
이스라엘	오렌지, 유자, 감귤, 레몬, 자몽
타지키스탄	체리
대만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 체리모야, 목과, 파파야, 오렘자, 망고, 구아바, 로스애플, 빈랑 나무, 자두나무, 비파나무, 감, 복숭아, 대추, 매실, 옹과, 멜론, 배, 포도, 귤, 유자, 자몽, 레몬, 오렌지
미국	자두나무(캘리포니아주), 체리(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포도 (캘리포니아주), 사과, 감귤류(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배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딸기(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체리, 블루베리
멕시코	아보카도, 포도, 블랙베리 및 산딸기
파나마	바나나
스리랑카	바나나
에콰도르	바나나, 망고
콜롬비아	바나나
코스타리카	바나나
우루과이	감귤류(레몬 제외), 블루베리
아르헨티나	오렌지, 자몽, 귤, 사과, 배
칠레	키위, 사과, 포도, 자두나무, 체리, 블루베리, 아보카도
페루	포도, 망고, 감귤류(자몽, 귤 및 그 교잡종, 오렌지 및 레몬), 아보카도
프랑스	사과, 키위
스페인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복숭아, 자두나무
이탈리아	키위, 오렌지, 레몬
키프로스	오렌지, 레몬, 자몽, 감귤
벨기에	배
그리스	키위
네덜란드	배
남아공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사과
이집트	감귤류
모로코	감귤류(오렌지, 귤, 클레멘타인, 자몽)

수출국가/지역	과일품종
호주	감귤(귤, 오렌지, 레몬, 자몽, 라임, 탄젤로, 단자몽), 망고, 사과(태즈메니아주), 포도, 체리, 유도
뉴질랜드	감귤(귤, 오렌지, 레몬), 사과, 체리, 포도, 키위, 자두나무, 배, 매실, 감
키르기스스탄	체리
북한	허니베리, 블루베리
한국	포도

*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js.aqsiq.gov.cn/rdgz/201609/t20160918_474179.htm)

6) 수출입 우유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총국령 152호 2013.02.01)

- 본 법령은 우유제품(乳品)은 초유(初乳), 생유(生乳)와 유제품(乳制品)을 포함(2조)

초유(初乳)	출산 후 7일내 짜낸 우유
생유(生乳)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직접 짜낸 성분을 개변시키지 않은 우유 초유, 항생소 사용기간 및 휴약기간의 유즙, 변질우유는 생유로 사용하지 못함
유제품(乳制品)	우유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이중 생유를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공한 제품은 생유제품이라 함

- 처음으로 중국에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는 검험검역 총국에 수위위생과 공공위생의 법률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 위생제어체계, 잔류감독제어체계, 동물역병의 검측감독제어체계 및 중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종류 등 자료를 제공; 검험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위험이 접수가능범위 내인 경우 관련 검험검역요구 및 관련증서와 증서제출요구를 확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을 허용, 쌍방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검험검역요구를 확정할 수 있음(5조)
- 검험검역총국은 중국으로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등록 제도를 실시함. 경외 생산기업은 수출국가(지역) 주관부서의 비준 하에 설립된 기업 이어야 하며 수출국가(지역)의 법률법규와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 함(6조)
-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은 수출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위생 증서가 있어야하며 증서에는 이하 내용을 증명해야 함(7조)
 - 1) 우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로부터 온 원료임을 증명
 - 2) 우유제품이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역병을 제거 및 전파하지 않음을 증명

- 3) 우유제품생산기업이 현지정부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하에 있음을 증명
- 4) 우유제품이 안전하며 식용 가능함을 증명

증서는 수출국가(지역) 정부주관부서의 인장과 권한수여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되어야 함. 증서 양식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확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

- 검역심사허가수속을 받아야하는 우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함.(8조)
-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등록해야 함. 등록을 신청한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등록요구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짐. 등록리스트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9조)
-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함. 수입상은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등기지역의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 등록 신청(10조)
- 수입 우유제품의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이하 자료로 세관신고지역의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 검사 신고(11조)
 - ①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증빙
 - ② 본 방법 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증서
 - ③ 처음으로 수입²⁾하는 우유제품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공
 - ④ 처음으로 수입하지 않는 우유제품은 최초 수입검측보고서 사본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처음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 항목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우유제품의 위험검측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해야 함
 - ⑤ 수입 우유제품 안전위생 항목(치병성 세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비법첨가물 포함)이 불합격 시 재차 수입에서 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하며 연 5건의 수입에서 안전위생항목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차 수입에서 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사본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함

2) <처음으로 수입>은 경외생산기업, 제품명칭, 배합원료, 경외수출상, 경내수입상 등 정보가 완전하게 동일한 우유제품을 동일 세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함

- ⑥ 포장 우유제품 수입 시 원문라벨 샘플, 원문라벨 중문번역본, 중문라벨샘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함
- ⑦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유제품 수입시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 ⑧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우유제품 수입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⑨ 보건기능과 연관된 경우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을 제공해야 함
- ⑩ 상, 영예, 인증 등을 취득하여 표기 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수입상은 수입한 우유제품이 중국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하며 수입 우유 제품의 종류, 산지, 브랜드를 공포해야 함(12조)
- 수입 정량 포장 우유제품은 중문라벨, 중문설명서, 라벨이 있어야 하며 설명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규정과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함(14조)
- 수입 우유 제품은 입경화물검험검역증서 취득 전에 출입국검험검역기구가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하며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사용하지 못함(15조)
- 수입 우유 제품은 검험검역기구에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 받은 후 판매 및 사용 가능, 검역증명에는 제품명칭, 브랜드, 수출국가 혹은 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입(17조)
- 수입 우유 제품의 수입상은 우유 제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수입 우유 제품의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납부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함.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기록의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함.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내 수입상의 수입과 판매기록에 대하여 검사 진행(19조)

■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수입유제품의 종류 ■

1. 생유(生乳) (건강한 목축유에서 짜낸 어떤 성분변화도 없는 보통우유)
 - 관련 HS코드 : 0401200000
2. 생유제품 (직접 생유를 원료로 하고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 관련 HS코드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3. 파스퇴르살균유(양이나 소의 생유를 원료로 하고 파스퇴르식으로 살균한 액체상품)
 - 관련 HS코드 : 0401100000, 0401200000

[주] 위에서 말한 HS코드는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하는 수입유제품 관련 HS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수입식품이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 질검총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실시 요구 조정 공고(2015년 제3호)]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질검총국 제152호,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함. 현재는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
- 입국 시 검역검사 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수입 유제품 종류는 기 발표한 생유(生乳), 생유제품, 파스퇴르멸균유 외에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가 추가됨. 2015년 2월 1일부터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수입할 때 [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질검총국이 수입 유제품 검사 및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유제품 수입상 혹은 그 대리인이 검사할 때 제출하는 검사보고 규정 사항을 조정함(첨부 참조). 2015년 5월 1일부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본 공고 아래와 같은 규정의 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함

Ⅰ 처음 수입이 아닌 수입유제품 검측 항목표 Ⅰ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파스퇴르 멸균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Pb)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멸균유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상업무균	GB 4789.26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조제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상업무균(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제품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2
	대장균군(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4
발효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효모	GB 4789.15
	곰팡이	GB 4789.15
	유산균(발표 후 가열 처리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35
치즈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리스테리아균	GB 4789.30
	곰팡이(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효모(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생크림, 크림 등	납	GB 5009.12
	상업무균(캔 공정으로 혹은 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생크림에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발효 생크림을 원료로 만드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곰팡이	GB 4789.15
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상업무균(연유 및 조제 연유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2
	대장균군(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4
분유 및 조제분유	단백질	GB 5009.5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납	GB 5009.12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웨이분말 및 락트알부민분말	단백질	GB 5009,5
	회분	GB 5009,4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비탈염 웨이분말에만 적용)	GB 5009,12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초유분말	면역 글로불린(IgG)	GB/T 5009,194
	납	GB 5009,12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효모	GB 4789,15
	곰팡이	GB 4789,15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살모넬라균	GB 4789,4
우유 주요 원료로 만드는 영아식품	단백질	GB 5009,5
	지방	GB 5413,3
	비타민 A	GB 5413,9
	비타민 D	GB 5413,9
	비타민 E	GB 5413,9
	비타민 K1	GB 5413,10
	비타민 B1	GB 5413,11
	비타민 B2	GB 5413,12
	비타민 B6	GB 5413,13
	비타민 B12	GB 5413,14
	엽산	GB 5413,16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판토텐산	GB 5413.17
	비오틴	GB 5413.19
	콜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5413.20
	이노시톨(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5413.25
	타우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5413.26
	카르니틴(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29989
	칼슘(Ca)	GB 5413.21
	인(P)	GB 5413.22
	요오드(I)	GB 5413.23
	셀레늄(Se)(미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해당 안 됨)	GB 5009.93
	철(Fe)	GB 5413.21
	구리(Cu)	GB 5413.21
	아연(Zn)	GB 5413.21
	상업무균(액상 영유아 조제식품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질산염(야채 및 과일 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적용 안 됨)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납	GB 5009.12
	아플라톡신M1	GB 5009.24, GB 5413.37
	납	GB 5009.12
	질산염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아플라톡신M1	GB 5009.24, 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 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 자료 : 질검총국(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5/201501/t20150119_430165.htm) (2015.1.8)

7) 수입 한국 심비디움 식물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2014.12.2)

- 질검총국에서 한국 심비디움 검사검역에 대한 공고 발표(2014년 제131호)
 - 현지조사 실시 및 수입 난초 검사검역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한 양국 검사 검역기관은 협상을 통해 ‘한국산 심비디움 대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구 협정서’를 체결했음. 2015년 1월 28일부터 한국산 심비디움 대 중국 수출은 ‘수입 한국산 심비디움 식물검사검역요구’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분재 난초를 수입할 경우 동 요구를 참고하여 검역 리스크를 통제함

Ⅰ 수입 한국 심비디움 식물 검사검역 요구 Ⅰ

1. 관련법률법규

- 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 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검사법〉,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검사법 실시조례〉
- 다.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심비디움 대 중 수출 식물검역요구에 대한 협정서〉(2014년 10월 28일 체결)

2. 수출제품명칭

- 수입 후 감상용 분재 심비디움(进境后作观赏用途的盆栽介质大花蕙兰), 학명 : *Cymbidium hybrida*, 영문명 : *Cymbidium*, 아래 심비디움이라 함

3. 심비디움 허가 생산지역

- 한국전역

4. 주요 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 1) 菊基腐病菌 *Erwinia chrysanthemi*
- 2) 番茄斑萎病毒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 3) 长针线虫属(传毒种类) *Longidorus*(Filipjev) Micoletzky(The species transmit viruses)

- 4) 根结线虫属(非中国种)Meloidogyne Goeldi(non-Chinese species)
- 5) 剑线虫属(传毒种类)Xiphinema Cobb(The species transmit viruses)
- 6) 毛刺线虫属(传毒种类)Trichodorus Cobb(The species transmit viruses)
- 7) 洋葱腐烂病菌Burkholderia gladiolipv. Alliiicola
- 8) 鳞球茎线虫Ditylenchus dipsaci
- 9) 腐烂茎线虫Ditylenchus destructor
- 10) 短体线虫属(非中国种)Pratylenchus spp.(non-Chinese species)
- 11) 草莓滑刃线虫Aphelenchoides fragariae
- 12) 菊花滑刃线虫Aphelenchoides ritzemabosi
- 13) 非洲大蜗牛Achatina fulica Bowdich

〈비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 1) 兰花细菌性褐腐病Erwinia cypripedii
- 2) 唐菖蒲伯克氏菌唐菖蒲致病变种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 3) 建兰花叶病毒Cymbidium mosaic virus(CymMV)
- 4) 齿兰环斑病毒Odontoglossum ring spot virus(ORSV)
- 5) 西花蓟马Frankliniella occidentalis
- 6) 棕榈斑疹Phytophthora palmivor

* 이상 유해생물 리스트 리스크평가 및 전염병 상황 단속 결합하여 조정할 것이며 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임

5. 수출 전 요구

가. 생산지 관리

- 대 중 수출 난초 재식업체가 유효한 유해생물 방지제도 및 조치를 작성해야 되며 추적시스템 설립, 관련 근무일지를 기록해야 됨. 재식 과정에서 중국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대해 적당한 모니터, 검사 측정,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 중 수출 묘포 중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없도록 함. 한국 측은 상술한 행사 및 조치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함
- 대 중 수출 심비디움 묘포는 해충 방지 설비를 갖춰야 되며 토양 노출하지 않도록 바닥은 시멘트 경화 혹은 비닐, 방수펄트, 모래 깔아야 됨. 재식높이는 비박보다 50cm 이상
- 재식묘포온실은 수출 3개월 전 밀봉해야 되며 유해생물이 난초를 전염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됨
- 관개용수는 수돗물 혹은 적당한 소독 처리된 물이어야 되며 선형 기생충 등 병원성생물이 전염되지 않도록 정기적 수질에 대해 검사를 해야 됨. 재식 매개체가 깨끗해야 되며 반복 사용하면 안 되며 또한 혼합 매개체를 사용하면 안 됨. 매개체 사용 전 적당한 제해처리를 해야 됨
- 한국 측은 심비디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재식묘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됨. 특히 수출 3개월 전 매달 2번씩 실험실 검사측정 포함된 유해생물 조사를 해야 됨

나. 등록요구

- 한국 측은 대 중 수출 심비디움 수출업체, 재식업체에 대해 등록을 해야 되며 해마다 수출계절 전 질검총국에 업그레이드된 합격 등록 리스트를 제공해야 됨. 필요시 질검총국은 한국 등록관리 시스템과 재식업체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가능

다. 포장 및 라벨 요구

- 대 중 국 수출 난초 포장은 충해 방지 여건을 갖춘 시설 내에 진행해야 함. 포장 재료가 깨끗하여 위생적이고 미사용이어야 되고 또한 중국 관련 식물 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함
- 포장라벨에 재식 업체 명칭, 등록번호, 수출상 및 '대 중 수출'라는 정보를 표기해야 되며 포장박스 및 겔 포장주머니 등 재료 위에도 표기를 해야 함
- 나무포장재로 사용할 경우, 국제식물검역조치 제15호 기준 '국제무역나무포장관리통제지침'에 따라 적당한 제해 처리 및 표기를 해야 됨

라. 수출식품검역 및 증서요구

- 한국 측은 수출 전에 2% 이상 비율로 표본 조사해 증서증빙 검사, 화물확인, 감관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 재식 기간에 점염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하여 중국 입국항구 몰수 상황에 근거하여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대해 실험실 검사측정을 해야 됨. 중국 측은 유해생물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들은 대 중국 수출하면 안 됨
- 한국 측은 검역 합격된 화물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하여 첨부 성명문 중에 재식업체명칭 혹은 등록 번호 및 '해당 심비디움 중국 입국 식물검역요구에 부합하여 중국 중시하는 유해생물 없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6. 입국요구

가. 검역심사

- 심비디움 입국 전, 수입업체 및 그 대리상은 중국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심비디움 및 재식매개체 입국식물검역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됨
- 수입 심비디움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하는 중요항구에서만 입국가능

나. 관련 증서 검사

- 식물검역증서가 본 요구 제5조 제4항 규정에 부합 여부 검사
- 입국 심비디움 및 재식 매개체가 중국 관련 부서 발급하는 입국식물검역심사허가증서 첨부 여부 확인

다. 입국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 대 중 수출 심비디움은 입국항구에 도착할 경우, 중국 '식물검역검역공작수첩'에 따라 입국 심비디움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할 것이며 본 요구 중 제4조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중점을 두고 검역 실시. 포장, 깔고 있는 재료, 컨테이너 등 토양, 해충 및 잡초 씨앗이 붙으면 안 됨

7. 요구 미달 경우 처리

- 가. 토양이 검출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수출업체 및 재식업체가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증서 혹은 포장라벨 표기정보가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화물 입국 불가

나. 본 요구 제4조 제시된 중국 중시하는 유해생물이 검출될 경우, 관련 화물을 반품, 소각, 제해처리(유효한 제해처리방법을 한함.) 조치를 취할 것임

- 다. 유해생물이 검출될 경우, 질검총국이 한국 측에 관련 재식업체의 심비디움을 대중 수출을 금지할 것이며 한국 측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수입 정지할 것임.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수출상, 생산지역 및 모든 한국 심비디움 대중 수출을 정지시킬 것임

8. 기타 검사검역 요구

- 항구에서 검사검역 합격 후, 심비디움은 지정된 장소에서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할 것이며 관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을 것임. 감독관리 과정에서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화물 중요를 소각 혹은 제해처리(유효한 제해처리방법에 한함)를 할 것임
- 한국 심비디움 대 중 수출 관련 업체에 실시한 검역 조치의 다름에 따라 리스크별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문제업체 및 문제가 있는 화물에 대해 리스크 경보 및 조치를 강화할 것임. 검역관리를 잘한 업체 및 성실한 업체에 더 편리한 우대조치를 제공할 것임

* 자료 : 질검총국(http://www.aqsiq.gov.cn/xxgk_13386/jlqg_12538/zjgg/2014/201412/t20141216_428536.htm)

8) 절임채소 위생기준(GB2714-2015) 정식 발표(2015.10.31.)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국가표준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국가표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제8호 공고 정식 발표, 그 중 김치 대 중 수출에 해당된 GB2714-2015 절임채소 위생 기준도 포함.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함

Ⅰ 절임채소 위생기준

1. 범위

본 기준은 절임채소에 적용된다.

2. 전문용어 및 정의

2.1 절임류

신선한 채소를 주요원료로 사용하여 절임 및 절임가공을 통해 제조한 각종 채소제품, 장류절임류, 소금 절임류, 간장절임류, 설탕절임류, 식초절임류, 설탕식초절임류, 새우기름절임류, 발효채소류 등이 포함됨

3. 기술요구

3.1 원료요구

채소는 신선해야 하며 원료는 상응되는 식품기준 및 유관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감관요구

감관요구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감관요구〉

항목	기준	검사방법
맛, 냄새	특이한 맛과 냄새가 없음	적당량을 흰색 도자기 접시에 올려 자연광(光) 상태에서 색상 및 상태를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온수로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상태	곰팡이 및 곰팡이 형태의 반점이 없고 정상시력 관찰시 외래 이물질이 없음	

3.3 오염물제한

오염물 제한수치는 GB 2762의 절임채소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 미생물제한

3.4.1 병원균의 제한수치는 GB 29921중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채소과실제품(절임류 포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2 대장균군 제한수치는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 대장균군 함량〉

항목	표본채취a 및 제한수치(CFU/g로 표시)				검사방법
	n	c	m	M	
대장균군b	5	2	10	103	GB 4789.3 평판통계법

a. 샘플채취 및 처리는 GB4789.1에 따름

b. 비멸균발효형제품은 제외

3.5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의 사용은 GB 2760중 절임류 및 발효류 제품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미생물 제한량 관련 설명

① 대장균군 : 제품 생산방법의 차등을 고려, 검사수치 결과에 따라 발효형 절임채소를 멸균형과 비멸균형으로 나누어 관리

· 멸균형 제품의 대장균 기준인 ICMSF 3급 표본추출방안을 $n=5$, $c=2$, $m=10\text{CFU/g}$, $M=1000\text{CFU/g}$ 로 개정하여 검사방법은 GB 4789.3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을 따른다.

· 비멸균형제품은 자연발효를 거쳐 생산되므로 그 제품의 원료는 멸균처리를 거치지 않는다. 검사 수치에 따라, 지속적인 발효에 따른 PH수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장균군 수량도 점차 감소됨. 관련 전문가의 연구 및 산업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방법의 특수성 원인으로 이 부류 제품에 대한 대장균 제한량 규정은 필요 없음

② 질병균

· 질병균 제한량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병균제한량〉(GB 29921-2013) 중 즉석과실채소(절임류 포함)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 살모넬라균 : $n=5$, $c=0$, $m=0\text{CFU}/25\text{g}$,
-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text{CFU}/\text{g}$, $M=1000\text{CFU}/\text{g}$
-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 의미
 - ①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 ② c : 허용기준치 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 보다 적거나 같은 최대허용 시료수; 결과가 m 보다 크고 M 보다 적거나 같은 것 ($> m$ and $\leq M$)은 경우 c 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 ③ m : 허용기준치로서 시료가 “만족(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 이하인 제품은 적합으로 판정
 - ④ M : 최대허용한계치(acceptability threshold)로서 시료가 “불만족(un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 초과인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으로 정의되어 있음
- 참고로 식육가공품의 대장균군 기준은 $n=5$, $c=2$, $m=10$, $M=100$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과의 판정은 대장균군수 시험법에 따라 5개 시료를 검사하여
 - ① 검사결과 1개 시료 이상에서 대장균군수가 100초과 시 부적합으로 판정함
 - ② 검사결과 2개 시료 이하에서 대장균군수가 10초과이면서 100이하이고, 나머지 3개 시료가 모두 10 이하인 경우 또는 5개 시료 모두 10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함

* 자료 :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http://www.nhfpcc.gov.cn/sps/s7891/201510/3ba3419aab8a41a09f4f924788f73793.shtml>)

나. 기타 행정법규 및 주요공고

- 1) 〈식품 중 병원균 제한량〉 국가표준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GB29921-2013)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은 식품 중 병원균 오염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생물성 질병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기준은 육제품, 수산 제품, 곡물제품 등 총 11대 부류 예포장식품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및 호염균 등 5가지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함

Ⅰ 식품 중 병원균 제한량 Ⅰ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혹은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육제품 - 익힌 육제품 - 즉석생육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리스테리아균	5	0	0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대장균	5	0	0	-	소고기제품만 적용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혹은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수산물	살모넬라균	5	0	0	—	—
– 익힌 수산물	비브리오균	5	1	0	—	
– 즉석 생수산물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MPN/g	1,000MPN/g	
– 즉석 해조류제품						
즉석 알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양식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익힌 양식제품(베이커리 포함)						
– 익힌 속 밀가루, 쌀제품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 라면, 쌀 제품						
즉석 공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 발효 공제품						
– 비 발효 공제품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초콜릿 및 코코아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과일야채제품(절임 채소 포함)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대장균	5	0	0	—	과일야채제품만 적용
음료(포장된 생수, 탄산음료 제외)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냉동식품	살모넬라균	5	1			—
– 아이스크림						
– 아이스바	황색포도상구균	5	0	100CFU/g(mL)	1,000CFU/g(mL)	—
– 식용 아이스, 하드						
즉석 조미료	살모넬라균	5	0	0	—	—
간장	황색포도상구균	5	2	100CFU/g(mL)	10,000CFU/g(mL)	
장류제품						
수산물 조미료	비브리오균	5	1	100MPN/g(mL)	1,000MPN/g(mL)	수산물 조미료만 적용
– 복합 조미료(마요네즈)						
건과류 콩알 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 건과류 및 콩알 소스						
– 절인 건과 콩알						

* 1 : 식품종류는 병원균 제한량 적용범위 확정에 사용하며 본 기준만 적용됨

* 2 : n은 샘플링 할 때 샘플 수량 / c는 m수치보다 최대한 초과 허가하는 수량 / m은 병원균 기준치의 허가할 수 있는 제한수치 / M는 병원균 기준치의 최대 안전 제한수치

2)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 공고(제43호, 2014.4.14)

- 수입식품 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업계 스스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수렴, 심사 및 보고하여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함
-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의거하여 연구 판정을 통해 불량기록을 입력함
 -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중 발견한 식품안전 정보
 -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관,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 수입식품 불량기록업체 관리 및 통제조치 ■

리스크사전경고조건				조치	리스크해소조건		
불합격 항목유형	제품 종류	불합격 항목종류	불합격 회수		공공조건	지정 시간	지정 회수
위생안전 항목	1	1	≥2	불량기록제품종류의 불합격항목 검측보고 제출	1. 조치 후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조치실시시간 ≥지정시간 3. 조치실시 후 매식품수입회수 ≥지정회수	6개월	5
	1	≥2	≥4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8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 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非위생 안전항목	1	1	≥3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6개월	5
	1	≥2	≥6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12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 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증명서류 제출 (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기타품질안전Risk				지정제품의 지정항목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10

Ⅰ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Ⅰ

1. 총칙

- 가.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및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 제144호)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 나. 본 세칙은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및 대리상(이하 '수입식품업체'라 함) 불량기록 사용관리에 적용한다.
- 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통제 조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 심사 및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2. 불량기록 발생

-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한 검토 및 판정을 통하여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을 입력한다.
- 가.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나. 국내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다.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구,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라.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3.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 가.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부속문건 1, 2 참조)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한다.
- 나.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 지역의 불량기록 취합하여 보고하고, 엄중한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려 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 다.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판정 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하여 이를 공포한다.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실시목록>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가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총국 2012년 제145호령)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 내 개선,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

4.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 가. 국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공상등기소재지 또는 최근 12개월 내 수입식품 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등급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한다.
- 나. 국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결과를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실시하여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 다.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2)을 갖춘 경우, 해당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문제 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 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5. 부칙

- 가. 전에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와 본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 나. 기업이 제출하는 검사측정보고는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국외의 합법적인 검사측정 역량을 갖춘 검측기구와 국내 식품검사검역기구 자격 인정을 취득한 검사측정기구는 검측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측기구 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하고, 동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 2) 검사측정보고는 수입식품의 생산일자 또는 생산 차수와 일치해야 한다.
 - 3)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기록 판정을 받은 경우, 검측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
- 마.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질검총국이 담당한다.
- 바.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식품리콜관리방법〉 시행(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2호(2015.3.11.))

- 국가식품의약국(CFDA)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이하 ‘관리법’)을 발표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관리법은 리콜 제도를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식후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식품을 1등급으로 분류. 해당식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후 24시간 내 제품 회수를 시작,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모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함. 이어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2등급으로, 가짜 상표 또는 허위로 표시된 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해당식품에 대한 회수를 시작, 근무일 기준 20일과 30일 이내에 전량 회수할 것을 규정함. 이밖에도,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식품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검출될 시 즉각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판매자는 해당식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섭취를 금하는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당식품의 불안전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이번에 발표된 관리법은 리콜 등급을 명확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회수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식품범죄에 관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국당국의 리콜 제도를 구체화해 식품안전제도의 법제화를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식품안전규정을 국제관례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임
 - 중국정부는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을 처음으로 법제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식품 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것이라 발표한 바 있고, 아울러 국무원은 최근 ‘2015년도 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계획’을 발표해 종합적인 식품 안전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 중국정부는 법제화를 통한 식품안전 강화에 앞장설 예정임

-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강화를 선언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방침임

제1조	식품생산 경영관리를 강화, 불안전식품 리스크를 감소 및 피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불안전식품의 생산 경영 중지, 리콜, 처리 및 감독관리를 본 방법에 적용한다. 불안전식품(不安全食品)의 정의 : 식품안전법률법규에 규정된 생산이 금지된 식품 및 인체건강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증명/증거가 있는 식품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에 대한 생산중지, 리콜, 처리의무가 있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각자 행정구역 내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의학, 독성학, 화학, 식품, 법률 등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식품안전 전문가팀을 구성,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요소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행정 지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입, 분석 및 처리를 담당하며 식품경영자 주체 책임 구체화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7조	식품산업협의 자율 강화를 독려 및 지원하여 산업 규범을 제정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의무 실행을 유도 및 추진한다. 국민이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독려 및 지원한다.
제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과정중의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경우 즉시 생산중지하고, 관련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생산중지 및 소비자에게 섭취중지를 알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중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급이상의 식품약품감독기관은 생산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집중거래시장 개설자, 식품경영 장소 대여자, 식품박람회 개최자는 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유효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유효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터넷 식품 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식품경영자가 생산하는 불안전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타 생산경영자가 통제하는 상태 중 일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체검사, 소비자 고발(제보), 경영자나 감독기관의 고지 등의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이 불안전식품으로 인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식약감독기관은 리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식품안전위험정도 및 긴급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리콜 한다. - 1급 리콜 : 식용후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24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2급 리콜 : 식용후 일반적인 건강상 위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48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 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3급 리콜 : 허위표시한 식품은 인지한 후 72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지방 식약감독기관 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제1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 한다.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 은 식품생산자의 리콜계획을 받은 후 전문조직이 리콜계획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리콜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 생산자는 즉시 수정한 후 수정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제15조 식품리콜계획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수량 및 리콜 지역
리콜원인 및 위험
리콜등급, 절차 및 기한
리콜통지 혹은 공고의 내용 및 발표방식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리콜식품의 처리조치, 비용부담 상황
리콜의 예상효과

제16조 식품리콜공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등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등
리콜원인, 등급, 시작하는 기일 및 끝나는 기일, 구역범위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소비자 반품과 보상의 절차

제17조 불안전식품이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성급 주요 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리콜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와 링크해야 한다. 불안전식품은 2개 이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및 중앙 주요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18조 1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2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2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3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발표 후 3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현급이상의 식약감독기관의 동의를 거쳐 식품생산자는 리콜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공포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사실을 인지한 후 불안전식품의 구매, 판매를 중지하여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경영 장소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생산자가 발표하는 공고를 붙여야 되며 식품 생산자 리콜 전개를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가 자체 원인으로 인한 불안전식품 법률법규의 규정대로 경영 범위 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 불안전식품 리콜 하는 것을 공급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즉시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리콜 통지 혹은 공고 중 특별히 자체 원인으로 식품불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걸 표기를 해야 한다.

제21조 생산자가 확정 못하거나 파산 등 원인으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할 수 없을 경우, 식품경영자가 해당 경영범위 내 자발적 불안전식품을 리콜 해야 한다.

제22조 식품경영자가 불안전식품 리콜 절차는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다.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중지, 리콜 등 원인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불안전식품에 대하여 보완, 무공해 처리 및 소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대로 불안전식품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불법으로 비식용 물질, 부패 변질, 병사된 가축 폐기물을 첨가하는 인체 건강 및 생명을 해치는 불안전식품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소각해야 한다. 소각 여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자가 집중 소각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집중 소각하기 전에 현급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라벨, 표기 등 식품안전기준에 미달로 리콜 된 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보완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상태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보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26조 불안전식품을 무공해 처리를 하여 자원 재활용 할 수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에 대한 처리방식을 확정 못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하여 평가의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사실대로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 기일, 번호, 수량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다.

제29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을 발견할 경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생산경영 중지 혹은 리콜, 관련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사 분석을 전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장에서 감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이 비교적 높은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끝난 후 5개 근무일 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생산경영자가 정기적 혹은 부정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하는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보고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하는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보다 더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처리한다.

제35조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하여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조기 경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을 중지시켜 소비자에게 불안전식품을 식용 금지 제시를 해야 한다.

제36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을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불안전식품의 생산중지, 리콜, 처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제8조의 제1항, 제12조의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제1항, 제21조, 제23조의 제1항, 제24조의 제1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지하지 않거나 자발적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시간 내 리콜하지 않거나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식품경영자가 본 방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자가 불안전식품 리콜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또한 5,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13조, 제24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식품 처분을 명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거절하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하여 또한 2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상황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해도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기타 법률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해소하거나 감소할 경우, 법에 따라 가법적 처벌한다. 비교적 경미한 위법 또한 즉시 시정하여 위해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하지 않는다.

제4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본 방법에 규정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나쁜 결과를 일으킬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담당자에게 행정 처분을 한다.

제45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보건식품은 본 방법에 적용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도매, 소매시장 혹은 생산 가공업체에 들어가는 식용농산물의 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은 본 방법 참조하여 이행한다.

제46조 본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0053/115580.html>)

4)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최신 수정,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신팡고법 출범, 보건식품 및 주류 관련 규정 강화
 - 1994년 광고법을 반포한 후 처음으로 수정한 것으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공상기관에 접수된 보건식품 신고 사건이 총 201만 건, 보건식품 중에는 면역력 제고 효능인 보건식품은 36.2% 차지, 신고원인은 대부분 허위 광고 및 품질 문제임. 그래서 신팡고법은 보건식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으며, 적발 시 부과하는 벌금도 1994년판 광고법과 비교하면 10~20배 올랐음
 - 최신 수정된 광고법 중 보건식품 및 주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18조 보건식품 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효능 및 안전성의 확인 혹은 보장할 경우
 2. 질병예방 및 치료기능
 3. 광고제품은 건강보장 필수 표시하거나 암시할 경우
 4. 약품 혹은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할 경우
 5. 홍보대사를 이용하여 추천하거나 증명할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금지하는 기타 내용
- 보건식품 광고는 명확히 '본 제품 약품 대체 불가' 표기해야 됨

제23조 주류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음주를 유도, 권하거나 무절제하게 홍보할 경우
2. 술을 권하는 동작이 나타날 경우
3. 차, 배 및 비행기 운전하는 장면이 나타날 경우
4. 음주가 긴장 및 불안 해소, 체력 증가 등 효능을 명시 혹은 암시할 경우

제40조 미성년자에게 대중매체에서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계,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및 미성년 건강에 안 좋은 온라인게임을 발표하면 안 되며,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광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미성년이 부모에게 광고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 달라고 타일러 유도할 경우
2. 불안전 행위 모방을 일으킬 때

*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0784/118160.html>)

5)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발급에 대한 공고(2015년 제91호) 발표

- 질검총국에서 수입식품, 화장품의 검사검역증서 발급을 규범화하여 검사검역증서 발급 통일성 및 엄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수출입 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증서발급, 문구 규범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 증서종류 :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합격 혹은 검사검역 불합격, 추후 유효적인 조치를 취해 합격해서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받을 경우, 더는 '위생 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 제정 추이】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관리조례 (1979)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초 행정법규로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제정한 규범성 문건
- 식품위생법(시행) (1982)
- 식품위생법 (1995)
 - 총 9장 57조로 구성, 현 식품안전법의 전신
- 식품안전법 (2009)
 - 총 10장 104조로 구성, 식품 단계별로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분산형 감독체계를 명문화

○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 수입되는 식품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 첨부 필수
- 중국 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 시, 수입업체는 국제표준 또는 생산국의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결과, 생산국의 합법적인 생산증명 제출 필수
- 수입업체의 해외 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 수립 필수
 - ※ 수입식품이 중국의 법, 법규, 식품안전표준 등을 이행하는지 심사

-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수입산 식품이 본 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중국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식품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제와 식품 안전상황 관련 평가 및 심사 진행 가능, 평가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사 검역요구를 정할 수 있음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특히 위탁, OEM, 소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조제방식으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을 금지
 - ※ 영유아분유 생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

- 국가는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원료의 입고로부터 완성품 출고까지 전반과정에 대하여 품질관리하고 출고한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차수로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보증해야 함
- 영유아조제식품에 사용하는 신선우유, 보조원료 등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영유아 생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임을 보증해야 함
-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배합방법 및 라벨 등 사항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登記(备案)해야 함

○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타오바오, 1호점 등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에 대해 실명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함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연대책임과 선배상을 의무화
- ※ 기존 온라인전자상거래 특히 B2B상거래에서 난무하는 가짜식품, 모방식품에 대한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제시함

-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에 입점하는 식품경영자에게 실명등기를 요청하고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법에 의해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함.
-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 시 즉시 그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동시에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소재지 현급 식품약품안전관리부문에 보고하고 엄중한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중지해야 함
- 소비자들이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구매 후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볼 경우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식품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플랫폼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을 한 후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했을 경우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본 조항의 1,2항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연대책임을 담당할 의무가 있음

○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 관련업계의 책임 및 처벌 강화
 - 불법 첨가물 등 안전사고는 5~10배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인상하여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심각한 범죄 시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소비자가 부적합 식품으로 손실을 본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실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후,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 청구
- 기업처벌 강화
 - 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책임자는 5년간 식품생산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을 처벌 받은 자는 영원히 종사할 수 없음
- 정부담당자 문책강화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결과가 심각한 경우 면직처분함

- 신고 포상 및 책임보험제도 마련
 - 책임보험제도 : 식품산업 관련 기업이 일정 액수의 식품안전보험비를 납부
- 보건식품 관리강화 및 제도변경
 -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
 -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
 - ※ 등록(注册) : CFDA(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의 심사를 요함(까다로움)
 - ※ 신고(备案) : 신고제도로 등록(注册)에 비해 용이

- 국가는 특정 보건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이하 보건식품)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 관리함. 보건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혹은 만성 위해를 주면 안 되며 라벨과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야 하고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적합한 균종, 적합하지 않은 균종, 기능성분 혹은 상징성 성분 및 성분함량 등을 명시해야 함.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과 설명서에 일치해야 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수출국가 주관부서에서 출시, 판매를 승인한 제품이어야 함
-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함.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식품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목록(이하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식품이 성명 가능한 보건기능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국가중의약관리부서와 연동하여 제정 및 조정하여 발표함
-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해야 함.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함. 기타 보건식품(신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보건식품 혹은 처음 수입이 아닌 보건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신고(备案)관리를 실시함
- 보건식품 등록(注册), 신청인은 보건식품의 연구개발보고,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안전성과 보건기능 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함.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술심사 평가를 조직하여 안전과 기능이 성명한 요구에 부합되면 등록을 승인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시 등록불가와 함께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함.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에 등록을 허가한 경우 기 신원료를 적시에 보건식품원료목록에 넣어야 함
- 보건식품 신고(备案), 등기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및 제품 안전성과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건식품의 등록인, 등기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짐. 성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사회에 등록 및 등기한 보건식품 목록을 발표해야 함

다. 검험검역 관리

1) 검험검역 형식 및 방법

☐ 법정 검험검역

- 법정 검험검역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통칭 : 법정검험검역 대상)에 대해 검험, 검역, 감정 등 검험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음

□ 검험검역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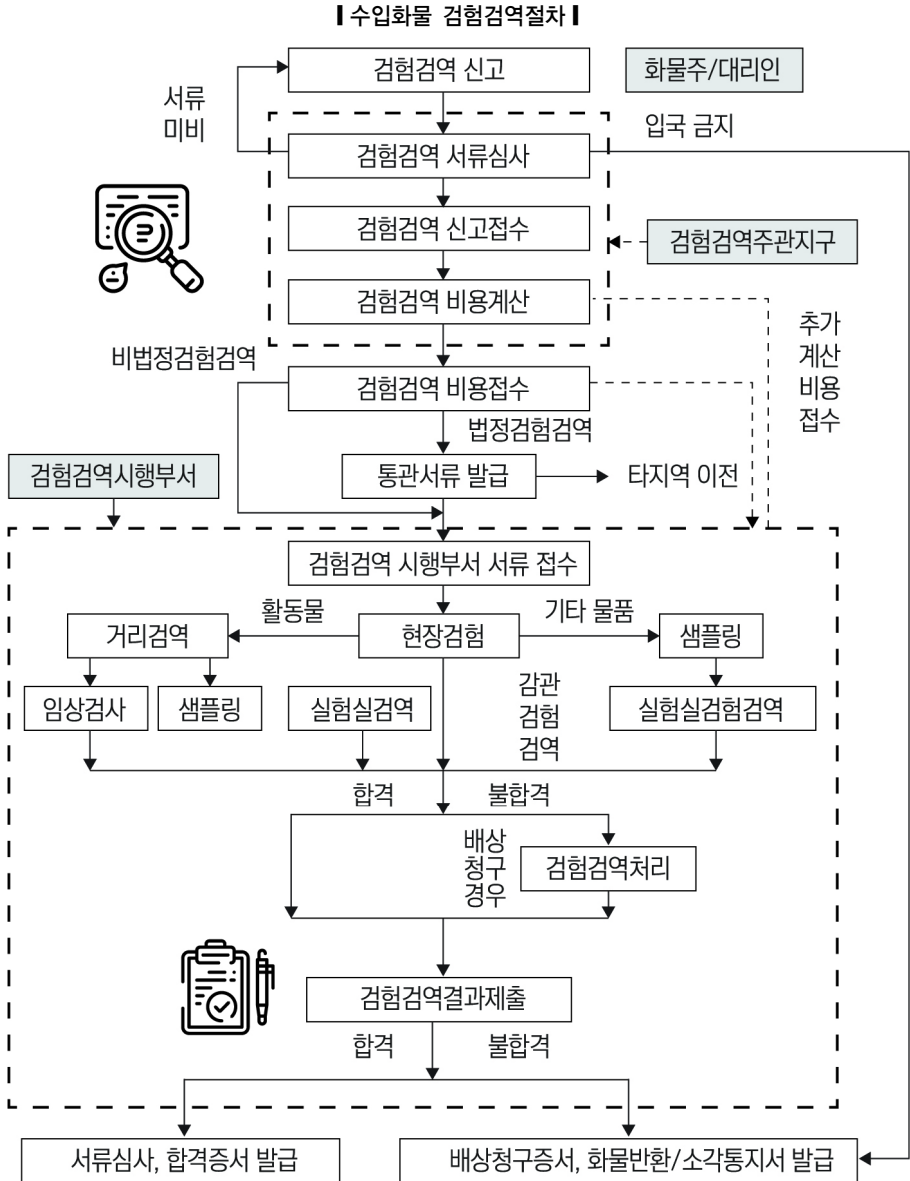
- 수출입 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 상품의 공동 검험, 위탁 검험과 인가 검험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자체검험
 -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
- 공동검험
 - 공동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검험은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 위탁검험
 - 위탁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격이 있는 국내의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 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 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가검험
 - 인가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험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 검험검역 방법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방법은 ①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② 각종 방법으로 저장 운송, 하역 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공구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분류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험으로 진행

2) 검험검역 절차 및 제도

□ 수입화물의 검험검역



□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① 검험검역 범위

구 분	검험검역 대상
수입식품	- 식품 - 식품첨가제 - 식품용기 - 포장재료 - 식품용공구 및 설비 -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수출식품	- 수출식품 - 식품첨가제

②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수입식품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위생증명서 (단, 야채&과일류 식물검역증 제출) -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수출식품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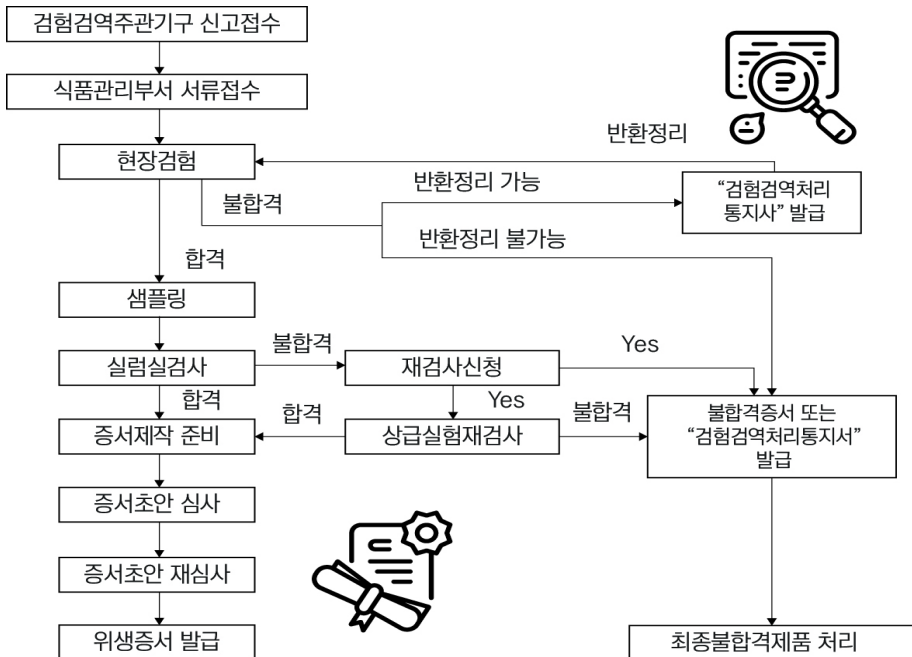
③ 검험검역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입국 30일 전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입국 15일 전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입국 7일 전
입국화물의 대외 배상청구에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 유효기간의 최소 20일 전

④ 검험검역제도 위반 시 제재조치

구 분	관련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의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 불법 생산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5만 위안 벌금 -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10배 벌금 -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 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수입증지를 명령 - 불법소득을 몰수 - 상품가치의 10~50% 벌금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 시정을 명령 및 경고 - 거절할 경우, 2천~2만 위안 벌금 - 엄중할 경우, 생산증지를 명령, 허가증 취소

Ⅰ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3.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가.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원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농업부 : <http://www.moa.gov.cn>

나. 관련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행정법규 (국무원)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라벨링 제도 일반

가. 식품라벨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102호, 2008.09.01)

1) 총칙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2)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Ⅰ 식품명칭 표기요구 Ⅰ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 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 크기로 1~2행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혹은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호상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성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 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 함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 및 주소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Ⅰ 생산자&주소 기타규정 Ⅰ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기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산기지 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装)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装)문자 명시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 하며 특수 저장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 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면제 가능. 일자는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 포장식품 내용량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 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배합원료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 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집행표준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한 기업표준 번호 표기(12조)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비 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 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 경고설명 표기(15조)

Ⅱ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 Ⅱ (16조)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 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Ⅲ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 Ⅲ (18조)

1. 질병예방, 치료 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 보건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오도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19조)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3)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식품라벨의 표기형식】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 함(23조)
2.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3.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4.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함(23조)
5.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 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6.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나.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감독관리 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27호 공고, 2012.06.01실시)

1) 총칙

- 본 규정은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설명서 포함)의 검험과 감독관리업무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 감독관리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가 관할지역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 검험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2) 라벨검험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 포장식품 제공자료】(6조)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 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상, 경소상 혹은 대리상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 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의 일상검험감독 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 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험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Ⅰ 라벨 불합격 상황 Ⅰ(9조)

1. 수입 정량 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 정량 포장식품 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수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 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최초 수입 시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증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3) 감독관리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검사업무를 관리하며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 포장식품 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수출입 정량 포장식품 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 전까지는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는 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2.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가.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04.20실시)

1) 범위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 포장식품 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 포장식품 라벨에 적용함. 정량 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 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용어의 정의

조항	용어	정의
2.1	정량 포장식품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2.2	식품 라벨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
2.3	성분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2.4	생산일자/ 제조일자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날짜
2.5	품질보증기간	정량 포장식 물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기한 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품질을 유지함
2.6	규격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합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2.7	주요전시면	소비자가 정량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3) 기본요구

- 3.1 정량 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3.2 정량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3.3 정량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됨
- 3.4 정량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글자 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함
- 3.5 정량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됨

- 3.6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 3.7 정량 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함
- 3.8 정량 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3.8.1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됨
 - 3.8.2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국외등록상표 제외)
- 3.9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cm²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3.10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해야 함
- 3.11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4) 표시내용

- 4.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4.1.1 일반요구 :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4.1.2 식품명칭(食品名称)
 - 4.1.2.1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 4.1.2.1.1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 4.1.2.1.2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4.1.2.2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 명칭” 혹은 “상표명칭”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5.1.1.1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해야 함

- 4.1.2.2.1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 명칭” 혹은 “상표명칭”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해야 함
- 4.1.2.2.2 식품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스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해야 함
- 4.1.2.3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음
- 4.1.3 배합원료표(配料表)
- 4.1.3.1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 4.1.3.1.1 배합원료표는 〈配料〉 혹은 〈配料表〉로 하여야 함
- 4.1.3.1.2 각종 배합원료는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 하지 않아도 됨
- 4.1.3.1.3 모종 배합원료가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배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함. 모종의 복합배합 원료가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 4.1.3.1.4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식품첨가제의 통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 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음.(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정량 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 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함.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음.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

방법이 포함되지 않음. 첨가량이 식품 총량의 25%보다 적은 복합배합 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여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됨

4.1.3.1.5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배합원료표에 표시하여야 함. 가공과정에서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배합원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음.

4.1.3.1.6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배합원료표에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함.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캡슐, 캔디, 참쌀종이 등임

4.1.3.2. 아래의 식품배합원료는 표 1 표시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 표 1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

성 분	유형소속명칭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포함하지 않음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검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제	“츄잉검 기초제”, “검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4.1.4 배합원료의 정량표시(配料的定量标示)

4.1.4.1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한 경우 강조한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해야 함

4.1.4.2 식품라벨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 가지 성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 강조하는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해야 함

4.1.4.3 식품명칭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4.1.5 내용량과 규격(淨含量和規格)

4.1.5.1 내용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합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부록 C 참조)

4.1.5.2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합량을 표시해야 함

- a. 액체식품 :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b. 고체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c.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4.1.5.3 내용량 계량단위는 표 2에 따라야 함

【 표 2 내용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

계량방식	내용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 1000\text{mL}$	毫升 (mL) (ml)
	$Q \geq 1000\text{mL}$	升 (L) (l)
질 량	$Q < 1000\text{ g}$	克 (g)
	$Q \geq 1000\text{ g}$	千克 (kg)

4.1.5.4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표 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표 3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

내용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mm
5mL $< Q \leq 50\text{mL}$ 5g $< Q \leq 50\text{g}$	2
50mL $< Q \leq 200\text{mL}$ 50g $< Q \leq 200\text{g}$	3
200mL $< Q \leq 1\text{L}$ 200g $< Q \leq 1\text{kg}$	4
$Q > 1\text{kg}$ $Q > 1\text{L}$	6

4.1.5.5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해야 함

4.1.5.6 용기 중 고체, 액체 두 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일 경우, 내용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표시형식 부록 C 참조)

4.1.5.7 동일한 정량포장에 여러 개 독립된 정량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내용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해야 함

4.1.5.8 규격의 표시는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规格”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규격인 즉 내용량을 가리킴(표시형식 부록C 참조)

4.1.6 생산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生产者, 经销者的名称, 地址和联系方式)

4.1.6.1 법에 근거하여 등록하여 제품안전품질책임을 질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해야 함

4.1.6.1.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4.1.6.1.2 독립 법률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 기지는 그룹과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해야 함. 혹은 그룹의 명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해도 됨. 산지는 행정지역별 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함

4.1.6.1.3 위탁을 받고 정량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혹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산지만 표시해도 됨. 산지는 행정지역별 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함

4.1.6.2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온라인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로 표기함

4.1.6.3 수입정량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혹은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해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4.1.7 일자표시(日期标示)

4.1.7.1 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일자표시를 <포장의 어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해야 함. 일자표시는 따로 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됨(표시형식 부록 C 참조)

4.1.7.2 동일 정량포장에 다양한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이 표시된 독립 정량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장에 표시되는 품질보증기한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으로 표시함.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최초 생산한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거나 외포장 완성일자 혹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각각 표시해도 됨

4.1.7.3 년, 월, 일의 순서대로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짜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함(표시형식 부록 C 참조)

4.1.8 저장조건(贮存条件)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함(부록 C 참조)

4.1.9 식품생산허가증번호(食品生产许可证编号)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함

4.1.10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代码)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정량포장식품(수입은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해야 함

4.1.11 기타 표시내용

4.1.11.1 조사(방사선)식품(辐照食品)

4.1.11.1.1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辐照食品”이라고 표시해야 함

4.1.11.1.2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 배합원료는 배합원료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4.1.11.2 유전자변형식품(转基因食品)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4.1.11.3 영양라벨(营养标签)

4.1.11.3.1 특수 식사류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부식류 식품은 주요 영양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함

4.1.11.3.2 기타 예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4.1.11.4 질량(품질)등급(质量(品质)等级)

집행하는 제품표준이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함

4.2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응당 4.1항의 상응한 요구에 따라 식품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함

4.3 표시내용의 면제

4.3.1 아래 정량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 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 4.3.2 정량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²보다 작을 경우
(최대표면면적 계산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됨

4.4 추천 표시 내용

4.4.1 로트번호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4.4.2 식용방법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음

4.4.3 알레르기 유발물질

- 4.4.3.1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배합원료표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함

- a.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 종류)
- b.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 c. 어류 및 그 제품
- d. 알(蛋)류 및 그 제품
- e. 땅콩 및 그 제품
- f. 대두 및 그 제품
- g.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h. 견과류 및 씨(果仁)류 제품

5) 기 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부록 A)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최대 표면면적 계산방법

A.1 장방체형 포장물 또는 장방체형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장방체형포장물 또는 장방체포장용기의 최대 한 개 측면의 높이(cm)곱하기 넓이(cm)

A.2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용기 또는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물 용기에 근접한 포장물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높이(cm) 곱하기 원 둘레 길이(cm)의 40%

A.3 기타 모양의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총 표면적의 40%

만약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에 명확한 주요 전시 면이 있을 경우 주요전시면의 면적을 최대표면면적으로 하여야 함

포장포대 등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번두리밀봉면적을 감해야 함. 병 또는 캔의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어깨부분, 목 부분, 정상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부록 B) : 배합원료 중 식품첨가제의 표시방법

B.1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스트로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 시럽,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2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 명칭 및 국제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3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트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 식품첨가제항 통일표시 형식건립

B.4.1 일반원칙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반드시 표식, 영양강화제, 식용에센스향료, 츄잉껌기초제(胶基糖果中基础剂)물질은 배합원료표의 식품첨가제항 외에 표시할 수 있음.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표시하지 않음. 배합원료표 중 식품첨가제항의 표시순서는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제의 총중량에 따라 결정됨

B.4.2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트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3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국가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4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부록 C) : 부분 품목 라벨링에 대한 추천 표시양식

C.1 요약

본 부록은 부분 정량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추천 양식 예시를 통해 매칭된 항목을 표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식에 국한되지는 않음. 그러나 만약 식품의 특성이나 포장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정을 통해 사용 시 반드시 추천 양식의 기본 함의와 일치해야 함

C.2 내용량과 규격 표시

내용량을 표시 할 때 계량단위는 통일적으로 g을 사용하며 구분 기호로는 콜론을 사용함 라벨링 시 실제 상품의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고 빈칸 혹은 기타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C.2.1 단일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45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25g(200g+25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25증정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25)g

C.2.2 내용량과 고형물의 표시(ex : “통조림배시럽”)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425g 沥干物(혹은 固形物 혹은 배 토막) :
≥250g(혹은 ≥60%)

C.2.3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동질 정량포장식품 포함 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40g×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5×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5×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40g×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5가지);

净含量 : 200g 规格 : 5×40g;

净含量 : 200g 规格 : 40g×5;

净含量 : 200g 规格 : 5가지;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100g+5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80g×2+40g);

净含量 : 200g 规格 : 100g+50g×2;

净含量 : 200g 规格 : 80g×2+40g;

C.2.4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이질 정량포장식품 포함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A상품 40g×3, B상품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200g(40g×3,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100g A상품, 50g×2 B상품, 50g C상품;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净含量/规格 : 100g(A상품), 50g×2(B상품), 50g(C상품);

净含量/规格 :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C.3 일자 표시

일자 중 년, 월, 일은 빈칸, 사선, 하이픈, 기간 등 부호로 분리하거나 구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년은 보통 4자리 수로 표시하며 작은 포장 식품의 경우 2자리 수로 표시하고 월, 일은 2자리 수로 표시함

일자의 표시형식

2010년 3월 20일 :

2010 03 20; 2010/03/20; 20100320; 20일3월2010년; 3월20일2010년;

(月/日/年) : 03202010; 03/20/2010; 03202010;

C.4 품질보증기한 표시

품질보증기한의 표시형식

....전 까지 식용 권장함; (最好在....之前食(饮)用)

....전 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之前食(饮)用最佳)

...전까지 제일 좋다; (...之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제일 좋다....; (此日期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此日期前食(饮)用最佳....)

유통기한은까지 입니다; (保质期至....)

유통기한 **개월(保质期....个月)(혹은 *日, 혹은 *天, 혹은 *周, 혹은 *年)

C.5 보관조건 표시

보관조건 표시 시 “贮存条件”, “贮藏条件”, “贮藏方法” 등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보관조건의 표시 형식

상온(혹은 냉동, 냉장, 어두운 곳, 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

(常温(혹은 冷冻, 冷藏, 避光, 阴凉干燥处)保存)

-℃보관; (**-**℃保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请置于阴凉干燥处)

상온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냉장 보관 하십시오; (常温保存, 开封后冷藏)

온도 : <<***℃, 습도 : <<***℃ (温度 : <<***℃, 湿度 : <<***℃)

나.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28050-2011(위생부. 2013.01.01실시)

- 1) 범위 : 본 표준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에 제시하는 영양정보의 묘사와 설명에 적용된다. 본 표준 보건식품 및 정량포장식품특수음식용식품(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의 영양라벨표기에 적용하지 않음

2) 용어와 정의

조항	용어	정의
2.1	영양라벨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 성분표, 영양성명 및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포함함. 영양라벨은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일부분임
2.2	영양소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대사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및 비타민을 포함함
2.3	영양성분	식품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성분 ³⁾
2.4	핵심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 등
2.5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참고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
2.6	영양소기준치 (NRV)	식품영양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됨
2.7	영양성명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성명,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 영양성명은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을 포함함

3) 각 영양성분의 정의는 GB/Z21922 <식품영양성분기본용어>에서 참조할 수 있음

조항	용어	정의
2.7.1	함량성명	함량성명 :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성명. 성명용어는 '높', '낮' 혹은 '없음' 등 포함함
2.7.2	비교성명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류 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성명. 성명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등을 포함함
2.8	영양성분 기능성명	한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성명
2.9	반올림 간격	반올림 수치 최소한 수치의 단위
2.10	식용 가능 부분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은 식용 불가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

3) 기본요구

- 3.1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진실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함.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됨
- 3.2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은 중문을 사용해야 함.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함
- 3.3 영양성분표는 '블록 다이어그램'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블록 사이즈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함
- 3.4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 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음. 각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NRV)는 부록A 참조
- 3.5 영양라벨의 양식이 부록B 참조,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음
- 3.6 영양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함

4) 강제표기내용

- 4.1 모든 정량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 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함.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이게 해야 함
- 4.2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성명 혹은 영양성분 기능성명을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 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3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예포장식품은 4.1 제시한 내용 이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4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와 (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 4.5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됨

5) 선택표기내용

- 5.1 강제표기내용을 제외하고 영양성분표 중에 표1 제시한 기타 성분도 선택 표기할 수 있음
- 5.2 한 영양성분 함량 표기수치 표C.1의 함량요구와 제한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함량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 성명방식이 표C.1 참조. 한 영양성분 함량은 표C.3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비교성명을 표기할 수 있음. 성명방식은 표C.3 참조. 한 영양성분은 동시에 함량성명 및 비교성명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두 가지 성명방식을 동시 사용할 수 있거나 함량성명만 사용해도 됨.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동의어는 표C.2와 표C.4참조
- 5.3 한 영양성분의 함량 표기수치 함량성명 혹은 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부록D 제시하는 상응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양성분기능성명 기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기능성명용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수정, 첨가 및 합병을 하면 안 됨

6) 영양성분의 표기방식

- 6.1 정량포장식품 중 열량과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100그램(g)과(혹은) 매100밀리리터(mL)과(혹은) 한 묶의 식품가능부분 중의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함. 한 묶으로 표기할 때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함. 한 묶의 크기 식품의 특징 혹은 추천물량에 의거하여 규정함
- 6.2 영양성분표 중 강제표기 및 선택 가능 표기의 영양성분의 명칭, 순서, 표기 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 등 표 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한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순서대로 위로 이동함
- 6.3 표 1을 제외하고 GB14880과 고생부 공고 중 강화를 허락된 기타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표 1에 나열한 영양소 뒤에 표기해야 함

【 표 1 열량, 영양성분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및 '0' 경계치 】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열량	킬로줄(kJ)	1	≤17kJ
단백질	그램(g)	0.1	≤0.5g
지방	그램(g)	0.1	≤0.5g
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트랜스지방(산)	그램(g)	0.1	≤0.3g
단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다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1	≤5mg
탄수화물	그램(g)	0.1	≤0.5g
설탕(유당)	그램(g)	0.1	≤0.5g
식이섬유(혹은 단체성분,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그램(g)	0.1	≤0.5g
나트륨	밀리그램(mg)	1	≤5mg
비타민A	(μgRE)	1	≤8μgRE
비타민D	마이크로그램(μg)	0.1	≤0.1μg
비타민E	(mg α-TE)	0.01	≤0.28mg α-TE
비타민K	마이크로그램(μg)	0.1	≤1.6
비타민B1(티아민)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2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6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12	마이크로그램(μg)	0.01	≤0.05μg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밀리그램(mg)	0.1	≤2.0mg
니코틴산	밀리그램(mg)	0.01	≤0.28mg
엽산	(μg) 혹은 (μg DFE)	1	≤8μg
판토텐산	밀리그램(mg)	0.01	≤0.10m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비오틴	마이크로그램(μ g)	0.1	$\leq 0.6\mu$ g
콜린	밀리그램(mg)	0.1	≤ 9 mg
인	밀리그램(mg)	1	≤ 14 mg
칼륨	밀리그램(mg)	1	≤ 20 mg
마그네슘	밀리그램(mg)	1	≤ 6 mg
칼슘	밀리그램(mg)	1	≤ 8 mg
철	밀리그램(mg)	0.1	≤ 0.3 mg
아연	밀리그램(mg)	0.01	≤ 0.30 mg
요오드	마이크로그램(μ g)	0.1	$\leq 3.0\mu$ g
셀레늄	마이크로그램(μ g)	0.1	$\leq 1.0\mu$ g
구리	밀리그램(mg)	0.01	≤ 0.03 mg
볼소	밀리그램(mg)	0.01	≤ 0.02 mg
망가니즈	밀리그램(mg)	0.01	≤ 0.06 mg

- a. 영양성분의 표기단위가 표 중의 중문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음
b. 한 영양성분 함량수치 $\leq$ '0' 경계치, 함량은 '0'로 표기해야 함. '뿔'으로 계량단위를 할 사용할 때 매 100mg 혹은 100ml의 '0' 경계치 규정에 부합해야 함
c. 우유 및 유제품의 영양라벨은 직접 유당을 표기할 수 있음

6.4 제품 유통기한 안에 열량과 영양성분함량 허용오차범위는 표 2 제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함

표 2 열량 및 영양성분함량의 허용 오차범위

열량과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제외), 광물질(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	$\geq 80\%$ 표기치
식품 중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반식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유당 제외)	$\leq 120\%$ 표기치
식품 중 비타민A와 비타민D	80%~180% 표기치

7)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
- 알코올함량 $\geq 0.5\%$ 의 음료 주류
- 포장 총면적 $\leq 100\text{cm}^2$ 혹은 최대 표면면적 $\leq 20\text{cm}^2$ 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하는 음용수
- 매일 식용량 $\leq 10\text{g}$ 혹은 10ml 의 예포장식품
- 기타 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표기 안해도 되는 정량 포장식품과 영양라벨 표기가 면제된 식품이 영양 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함

부록 A) : 식품라벨영양소기준치(NRV) 및 그 사용방법

A.1 식품라벨영양기준치(NRV)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열량a	8400kJ	엽산	400 μg DFE
단백질	60g	판토텐산	5mg
지방	$\leq 60\text{g}$	비오틴	30 μg
포화지방산	$\leq 20\text{g}$	콜린	450mg
콜레스테롤	$\leq 300\text{mg}$	칼슘	800mg
탄수화물	300g	인	700mg
식이섬유	25g	칼륨	2000mg
비타민A	800 μgRE	나트륨	2000mg
비타민D	5 μg	마그네슘	300mg
비타민E	14mg $\alpha\text{-TE}$	철	15mg
비타민K	80 μg	아연	15mg
비타민B1	1.4mg	요오드	150 μg
비타민B2	1.4mg	셀레늄	50 μg
비타민B6	1.4mg	구리	1.5mg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비타민B12	2.4μg	불소	1mg
비타민C	100mg	망가니즈	3mg
니코틴산	14mg		

a. 열량은 2000kcal와 대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제공하는 열량은 각각 총열량의 13%, 27%, 60%

A.2 사용목적 및 방식

열량 혹은 영양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 것과 묘사에 적용됨. 영양성명과 수치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음

사용방식이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지정한 NRV%의 반올림 간격은 1이다. 예를 들어 1%, 5%, 16% 등

A.3 계산

영양소기준치(NRV)에 영양성분함량이 차지하는 백분비 계산공식(A.1) :

$$NRV\% = X/NRV \times 100\%$$

X = 식품중 모 영양소의 함량

NRV = 해당된 영양소의 영양소 기준치

부록 B) : 영양라벨형식

B.1 본 부록에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의 형식을 규정함

B.2 아래 6가지 형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영양라벨을 표기해야 함

B.2.1 열량과 핵심 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예>

Ⅰ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Ⅰ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B.2.2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예〉

Ⅰ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Ⅰ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饱和脂肪 (포화지방)	克(g)	
胆固醇 (콜레스테롤)	毫克(m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糖 (설탕)	克(g)	
膳食纤维 (식이섬유)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维生素A (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μgRE)	%
钙 (칼슘)	毫克(mg)	%

* 주의 : 적당한 형식을 사용하여 핵심영양소를 눈에 더 띄게 해야 함

B.2.3 외국어 표기하는 형식<예>

【营养成分表/nutrition information】

项目 Items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per 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 NRV%
能量 energy	千焦(kJ)	%
蛋白质 protein	克(g)	%
脂肪 fat	克(g)	%
碳水化合物 carbohydrate	克(g)	%
钠 sodium	毫克(mg)	%

B.2.4 가로 형식<예>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脂肪 (지방)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	-	%

* 주의 :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나열하여 2칸 혹은 이상 표기한다.

B.2.5 문자 형식

포장의 총면적이 100cm²보다 작을 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 표 아닌 다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양기준치(NRV) 생략해도 됨.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도 됨

〈예〉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100g, 能量(열량)××kJ, 蛋白质(단백질)××g, 碳水化合物(탄수화물)××g, 钠(나트륨)××mg

B.2.6 영양설명과 영양성분기능설명을 표기하는 영양라벨

Ⅰ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Ⅰ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영양설명 : 저지방××

영양성분기능설명 : 매일 음식 중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 비례는 총열량의 30% 초과하면 적당하지 않다.

영양설명, 영양성분기능설명이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해도 됨. 글자크기는 식품명칭과 상표보다 크면 안 됨

부록 C) :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 성명과 비교성명의 요구, 여건과 동의어

C.1 표C.1 정량 포장식품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C.2 표C.2 정량 포장식품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성명의 동의어

C.3 표C.3 정량 포장식품 열량과 영양성분 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C.4 표C.4 정량 포장식품 열량과 영양성분 비교성명의 동의어

Ⅰ 표C.1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Ⅰ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 고체 ≤80kJ/100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 $\geq$ 10% NRV 매 100ml 함량 $\geq$ 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 $\geq$ 5% NRV	
	단백질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 $\geq$ 20% NRV 매 100ml 함량 $\geq$ 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 $\geq$ 10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leq 0.5g/100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지방	$\leq 0.3g/100g$ 고체; $\leq 1.5g/100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 $\leq$ 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와 요구르트 : 지방함량 $\leq$ 0.5%; 분유 : 지방함량 $\leq$ 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1g/100g$ (고체) 혹은 100ml (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저포화지방	$\leq 1.5g/100g$ 고체 $\leq 0.75g/100ml$ 액체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생긴 열량 $\leq$ 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3g/100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5mg/100g$ (고체) 혹은 100ml (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성명함량 요구 및 제한여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 콜레스테롤	$\leq 20mg/100g$ 고체 $\leq 10mg/100ml$ 액체	
탄수화물 (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5g/100g$ (고체) 혹은 100ml (액체)	
	저당	$\leq 5g/100g$ (고체) 혹은 100ml(액체)	
	저유당	유당함량 $\leq 2g/100g$ (ml)	유제품만 제한
	유당이 없음	유당함량 $\leq 0.5g/100g$ (ml)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함	$\geq 3g/100g(\text{고체})$ $\geq 1.5g/100ml(\text{액체})$ 혹은 $\geq 1.5g/420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 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geq 6g/100g(\text{고체})$ $\geq 3g/100ml(\text{액체})$ 혹은 $\geq 1.5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5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성명의 성명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leq 40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leq 120mg/100g(\text{고체})$ 혹은 100ml (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 (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광물질 (나트륨 불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 $\geq 15\%$ NRV 매 100ml $\geq 7.5\%$ NRV 혹은 매 420kJ $\geq 5\%$ 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 (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geq 30\%$ NRV 매 100ml $\geq 15\%$ NRV 혹은 매 420kJ $\geq 10\%$ NRV	

* ‘몹’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만 성명할 수 있음

【표C.2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 ‘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 ‘지방이 적다.’ 저지방설명에만 적용됨

【표C.3 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비교성명의 방식	요구	여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표C.4 비교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증가	증가 ×% (×배)	감소	감소×% (×배)
	증 ×% (×배)		감 ×% (×배)
	가 ×% (×배)		소 ×% (×배)
	제고×% (×배)		줄임 ×% (×배)
	첨가×% (×배)		하락 ×% (×배)
	증가×%, 제고(×배)		하락 ×% (×배) 등

다. 정량 포장 특수 식용 식품 라벨 통칙 GB13432-2013(국가질검총국. 2015.07.01실시)

□ 특수식용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의 정의

- 특수 소비자들의 생리수요 혹은 부분 질병환자의 영양수요에 따라 특수 배합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성분함량이 일반식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

□ 기본요구

- 정량 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의 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이하 내용에도 부합되어야 함
 - 질병 예방, 완화, 치료 혹은 치유작용을 언급해서는 안 됨
 - 정량 포장 특수 식용 식품 라벨 통칙 중의 라벨, 설명서에 관련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0~6개월 영아배합식품 중의 필수성분에 대한 함량표시 및 기능표시 금지

□ 강제표기내용

- 식품명칭
 - 정량 포장 식품 라벨 통칙 2.1조항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명칭에만 “특수식용 식품” 또는 상응하는 특수의미가 있는 수식어 사용 가능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의 실제 영양소로 표기, 영양강화제 첨가 시 강화영양제한량 표기
- 저장조건
 - 라벨에 정량 포장 특수 식용 식품의 저장조건 표기, 필요시 개봉 후의 저장조건 표기
 - 개봉된 정량 포장 특수 식용 식품은 저장 금지하거나 원 포장에 저장 금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게시 필요
- 식용방법 및 적합군체
 - 식용방법, 매일 혹은 매찬 식용량 표기
 - 식용에 적합한 소비자 군체 표기

□ 표기 허용내용

- 정량 포장 특수 식용 식품의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² 미만일 경우, 제품명칭, 함량, 생산자(또는 경소상)의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와 유효기한만 표기 가능⁴⁾

4) (<http://file4.foodmate.net/foodvip/biaozhun/2016/GB13432-2013.pdf>) 참조

3. 라벨링

가. 등록사례

2012.09.17 중국·비빔고추장 450 g 103°61' ————— 6도  92°48' ————— 2도  90°49' ————— 2도 	○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상표 - 무색소, 방부제표기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주소 - 수입상&주소&전화 - 주의사항 - 식용방법 - 영양성분		○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 제품유형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수입상&주소&전화 - 영양성분
--	---	---	--

나. 영양성분 표시 사례

春日井什锦果汁软糖 (凝胶糖果)

配料: 糖、白砂糖、浓缩果汁17.28% (苹果、葡萄、桃子)、柠檬酸、苹果酸、土亚油、五香粉、大豆粉、明胶、食用香料、果胶、巴西棕榈蜡、聚甘油磷酸酯、大苏打、山梨糖醇、食用香精、D-葡萄糖、D

4.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가. 웹사이트

- 원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위생부 : <http://www.moh.gov.cn>
- 푸드메이트 : <http://www.foodmate.net>

나. 관련 법규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규정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
-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28050-2011)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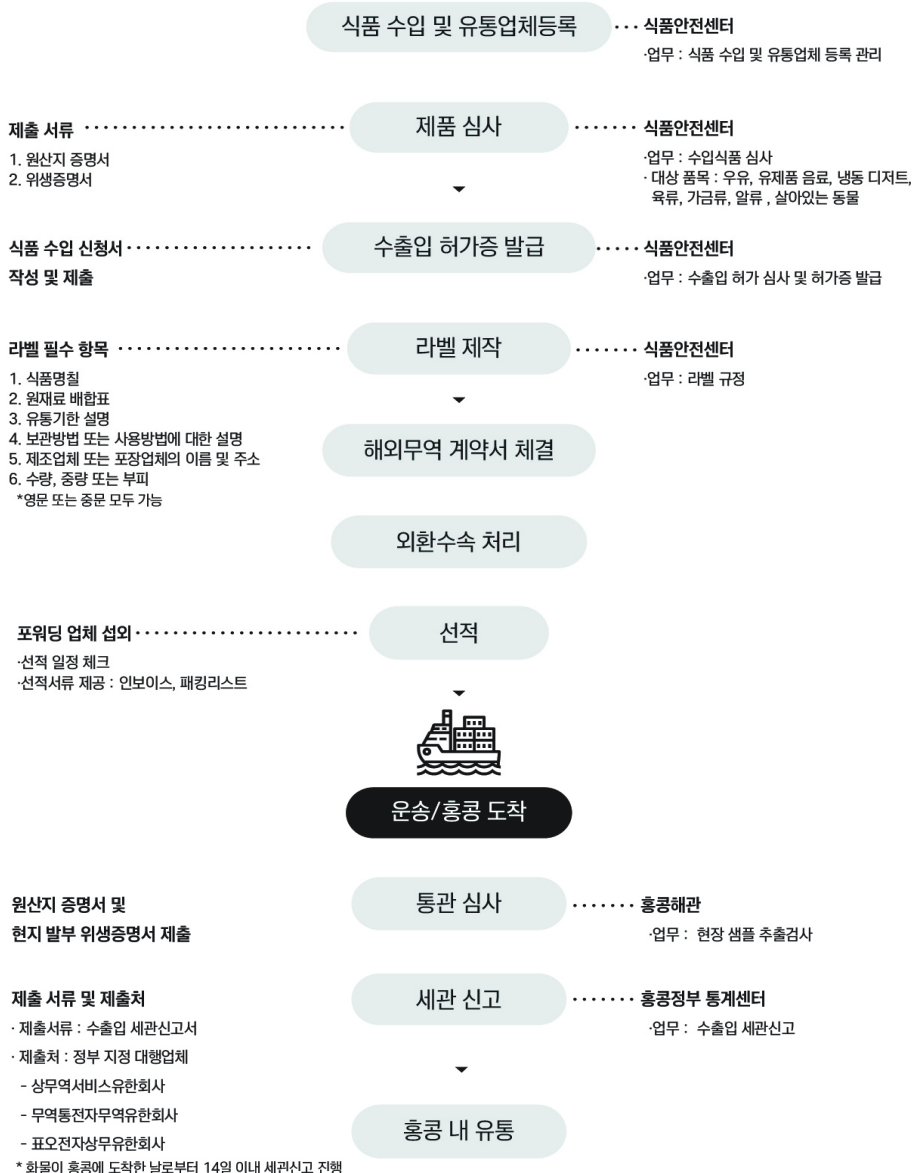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1
	제2장 통관제도	122
	1. 관리·법률체계	122
	2. 통관절차 개요	122
	3. 단계별 통관절차	123
	4. 제출서류	125
	5. 관세제도	126
	제3장 검역제도	128
	1. 관리·법률체계	128
	2. 품목별 검역절차	129
	제4장 라벨링 제도	137
	1. 관리·법률체계	137
	2. 표시사항	138
	3. 라벨링 샘플	146
	4. 라벨링 사례	148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련 법 및 규정

- 홍콩은 일반 수출입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절차가 없음
 -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 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선사나 운송사, 관할 세관 등에 문의할 수 있음
- 홍콩의 통관 및 검역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ap. 60)¹⁾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나. 관련기관 : HK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www.customs.gov.hk)

- 주요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부과 물품 확인, 라이선스와 허가 신청, 수출입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 검역 담당부서 : 세관관리부(Dutiable Commodities Administration)
 - 연락처 : (852)3759-2398 / 팩스 : (852)2542-4660

2. 통관절차 개요

- 홍콩은 전체 품목 가운데 97% 이상이 비과세물품으로 거의 모든 식품에 관세가 없으며, 수출입 절차가 간단하고 인프라 시설이 우수해 수출입이 용이함
 - 일반적으로 수출 후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통관절차가 완료됨
 -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홍콩 내 판매하기 위해 수출국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공식 보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상품의 통관은 주로 송장(manifests)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선택적 기준의 실질조사(physical examination)가 이뤄짐. 이 경우 선택된 물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

1) 수출입통관 기본규정(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

■ 수입통관 절차 ■

순서	절차
1	선적
2	수출입 신고서 제출(수출 후 14일 이내)
3	화물 도착 통지
4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해 통관 대행(필요시)
5	완료

자료원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3. 단계별 통관절차

가. 수출입 신고서 제출

- 수출입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 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HK\$ 4,000(약 US\$ 513)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목적의 HK\$ 1,000(약 US\$ 128)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空)컨테이너, 인가한 배에서 포획한 어류 등임²⁾
- 대부분의 상품은 신고 후 3~7일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은 수출입 규정,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수입 허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 홍콩은 화물 통관 시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을 20가지로 분류하고 관련 부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 한편, 수입자는 라이선스 및 유통을 위한 도소매 라이선스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인삼 등의 한약재는 허가받은 수입자만이 취급 가능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20품목 ■

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파괴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화학약품, 광학디스크기기, 복사기, 엔진(111.9kw 초과), 멸종위기 동식물, 무기, 섬유, 가금류, 라디오운송장비,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

자료 : 홍콩 관세청

- 2) 신고 면제 품목의 경우 해당 면제품목의 카테고리(적하목록(cargo manifest))에 분명히 명시하고 운송자(carriers/forwarders)에게 고지해야 함

나. 화물 도착 통지

- 해상운송 : 카이칭(KWAI CHUNG)항과 빅토리아(VICTORIA)항을 이용함
 - 카이칭(KWAI CHUNG)은 신계(新界, NEW TERRITORIES)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80% 이상을 담당
 - 빅토리아항은 홍콩섬과 홍콩반도(九龍半島)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만 양쪽 해안의 크고 작은 부두로 홍콩 전체 물동량의 30~40%를 담당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반드시 환적에 따르는 비용과 추가 소요기간(약 1~2일)을 감안해야 함
- 항공운송 : 홍콩섬과 구룡반도 서쪽에 위치한 란타우섬 북쪽에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홍콩국제공항 또는 첵랍콕 공항) 위치
 - 전체면적은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비슷한 378만 평(1,255ha) 사이즈로 홍콩의 구 카이탁 공항의 4배이며, 매일 약 900회 이상의 비행기가 중국 대륙의 45개 지역을 포함하여 160개 도착지로 연결됨
 - 2017년 기준, 매시간 68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세계 3위 규모로 연간 평균 4,500만 명의 여객(공항처리가능 최대 여객 수 : 8,700만 명), 500여 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
- 한국에서 홍콩으로 오는 항공편은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 캐세이퍼시픽, 타이항공, 진에어, 홍콩익스프레스 등이 있음

Ⅱ 대홍콩 수출입시 운송방법별 문의처 Ⅱ

운송방법	연락처	팩스
항공	(852)2116-4130 / 2286-0157 (24시간 이용가능)	(852)2116-4201
해상	(852)2410-8045	(852)2420-2429
해상화물	(852)2534-7188 (24시간 이용가능)	(852)2854-1280
육로	(852)2482-8758	(852)2482-2552
열차	(852)2954-0219/2774-3494	(852)2363-8242

자료 : 홍콩 통계청

다. 통관

- 통관 시 Bill of Entry(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필요시), 화물검사증명서(필요시)가 요구됨

- 수입 라이선스 : 수입업체는 “The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특히 수입 검역이 까다로운 일부 품목은 라이선스(license)와 함께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증명서(certificate) 등을 갖춰야 함
-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하며 취득을 위한 비용은 아래와 같음

■ 홍콩 수출입시 라이선스 종류와 비용 ■

구분	세부내역	비용
수출입 라이선스	수출입 라이선스	1,200HKD
	특별수입 라이선스	1,200HKD
라이선스의 개정	라이선스 개정 및 내용 변경	515HKD
대체수령	대체수령	200HKD

자료원 : 홍콩 세관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원산지증명서
- 식품은 홍콩 보건위생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받은 식품허가증명서와 생산국의 법령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관세제도

가. 관련 법 및 규정

- 관세품목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 109)에서 아래의 4가지 관세품목에 대한 규정 및 취급방법을 다루고 있음

■ 홍콩의 관세품목조례 내용 ■

구성	주요내용	관세여부
PART I	서론(preliminary)	-
PART II	일반 제품(general)	비관세
PART III	주류(liquors)	일부 관세
PART IV	담배(tobacco)	관세
PART V	하이드로카본 오일(hydrocarbon oil)	관세
PART VI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관세

자료원 : HongKong e-Legislation

나. 주요 내용

- 홍콩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이나, 담배 · 주류 · 하이드로카본오일 · 메틸알코올의 경우에만 품목과 무게에 따라 과세
- 주류는 2008년 2월부터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어,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와인의 경우 2008년부터 0%로 조정되어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음

Ⅰ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Ⅰ

1. 탄화수소	관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중국 제조	HK\$ 468/kg
수입 시가	HK\$ 2,455/kg
수입 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한 그 외 모든 담배	HK\$ 2,309/kg
3. 주류	
와인	0%
알코올 30% 이하 주류(맥주 등)	0%
알코올 30% 이상 주류(위스키 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자료원 : 홍콩 세관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홍콩은 식품 수입 시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HKD \$50,000의 벌금 및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함
- 식품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한 위생검역 관련 증서를 제공해야 함
-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서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해 관리
- 특히 수입 엽서류 · 육류 · 가금류는 원산지과 관련한 식품당국(food authority)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서 발급받은 사전서면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 가능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식품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환경위생부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을 시,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 수입이 불가함

■ 홍콩의 수입 검역이 까다로운 항목 ■

위험 약물 (Dangerous Drugs)		화학물 (Controlled Chemicals)		의약품 (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중국산 한약 (Chinese Herbal Medicines and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가축 (Live Animals)		식물과 식물해충 (Plants & Plant Pests)	
쌀,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육 (Rice, 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엽서류 (Game)		기타 금지품목 (Other Prohibited Goods)	

자료원 : 홍콩 세관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과일·채소는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홍콩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에서 검역하며 가축은 ‘Man Kam To’나 도매시장 및 도살장에서 검역함⁴⁾

나. 법률체계

-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은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Part 5. Cap.132) 및 Food Safety Ordinance(Cap. 612)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관련 문건 : 홍콩 식품 수입 안내서(Guide to Import of Food into Hong Kong), 식품 리콜 가이드(Food recall Guidelines), 식품 안전 수칙(Code of Practice on Food Safety Orders)

2. 품목별 검역절차

- 수입 가이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는 한국의 對홍콩 식품 수출과 관련된 (II) 냉동 당과류 식품수입, (III)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 (IV) 우유와 우유음료, (V) 수산물, (VI) 냉동·냉장 육류, 냉동·냉장가금류, (VII) 식품리콜, (IX) 잔류농약모니터링, (X) 계란 식품수입 가이드에 대해 다룸

Ⅰ 수입가이드내 품목 분류 Ⅰ

No.	항 목
I	중국산 냉동 닭의 수입 가이드
II	냉동 당과류 식품 수입 가이드
III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 수입 가이드
IV	우유와 우유음료 수입 가이드
V	수산물 수입 가이드
VI	냉동 육류, 냉장 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 허가 신청 가이드
VII	식품 리콜 가이드
VIII	저산성식품 관리 및 안전 가이드
IX	잔류농약모니터링
X	계란 수입 허가 신청 가이드
XI	심천의 첸하이완 보세구를 거쳐 홍콩으로 수입되는 냉동고기에 관한 가이드
XII	유럽연합 회원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입에 관한 홍콩 가이드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4) 검역 담당부서 : Health Inspector(Import/Export) Import Licensing
연락처 : (852) 2156 3041 or (852) 2156 3042, 이메일 : fsc@fehd.gov.hk

가. 냉동 당과제품(Frozen Confections)⁵⁾

- 냉동 당과류 수입업체는 수입품이 홍콩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 수입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홍콩으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당과류 식품은 식품환경위생부의 승인을 받은 제조원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수입업체는 제조원 허가 신청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냉동 당과류 처리 공장의 이름과 주소
 - 냉동 당과류 생산국의 법률
 - 냉동 당과류의 라벨이 붙은 포장 또는 빈 용기
 - 냉동 당과류 공장의 열처리 방법, 처리 공장의 설비, 급수 설비 등을 포함한 정보
 -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생 및 식품안전 인증서
- 수입업체는 식품환경위생부가 요청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냉동 당과류의 수입 가능
 - 식품환경위생부가 수입 식품 검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냉동 당과류의 수하물이 도착한 후 출고되기 전 수하물에 대한 검사 진행
 -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부에서 직접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에게 판매 허가서 발행
- 식품환경위생부는 제조원 승인신청 절차를 12일 이내로 진행
 - 실제 수하물의 도착날짜와 도착 통지를 받은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판매 허가서 발급

나. 염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Poultry)

- 수입 및 수출 조례 법령(Cap. 60)에 따라 냉동 및 냉장한 소고기·양고기·돼지고기·가금류는 수입 라이선스 관리를 받아야 함
 - 라이선스 관련 내용은 ‘냉동·냉장육류, 냉동·냉장가금류 수입라이선스 신청 가이드’ 참조⁶⁾
- 식품환경위생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기관의 증명서를 가진 육류·가금류만 수입이 가능함
 - 공인되지 않은 관할기관의 국가 및 장소에서 수입할 시 해당 관할기관 혹은 정부가 식품환경위생부에 서면으로 수입신청, 해당 국가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출

5) 문의 : 식품수출입과 (852)2867-5577 또는 관공서 핫라인 1823

6)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tsg_04.html

- (a) 동물 질병 상황 및 육류·가금류의 위생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 (b) 육류·가금류 처리 공장의 위치, 시설 및 처리 과정과 생산, 저장 및 운송 정보
- (c) 육류·가금류 도축 전후 검사 과정에서의 상세내용과 그 과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에 대한 정보
- (d) 공인된 수의과의 건강증명서 샘플
- (f) 수의과의 건강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식 명칭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가 있는 경우 육류·가금류 수입은 식품 환경위생부의 사전 허가 불필요
- 금지된 육류·가금류의 수입
 - 수입 육류·가금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육류·가금류를 수입하기 전 식품환경 위생부의 사전허가 필요
 - 허가를 받기위해 수입업체는 위의 (a)~(f)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금지된 육류나 가금류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위생부에 제출

다. 수입우유 및 우유제품(Milk and Milk Beverages)

- 우유와 우유제품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Chapter 132 관련법령, 조례 제54에 기반을 둬
 - 조례 제54에 의거,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음. 특히 우유와 우유제품의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
- 수입 신청 시 주의사항
 - 홍콩에 수입하는 모든 우유·우유제품은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 가능함
 - 홍콩에 우유·우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 수입 전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a) 우유·우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b) 우유·우유제품 생산에 관한 생산국의 법률
 - (c) 라벨이 첨부된 우유 또는 유제품의 빈 용기
 - (d)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급수 시설, 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e) 생산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 (f) 우유·우유제품의 살균, 가공, 포장, 열처리 방법에 관한 위생 및 품질보증서
 - (g)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 홍콩 도착 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홍콩 수입가능
 - 수하물이 도착해 출고·판매되기 전 식품환경위생부에서 직접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에게 ‘판매 허가서’를 발행
- 식품환경위생부는 제조원 승인을 위한 신청서 처리를 12일 근무일 이내로 진행
 -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도착통지를 받은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판매 허가서’ 발급
- 신청 및 문의 : 식품수출입과 및 식품환경위생부⁷⁾

라. 수산물(Marine Products)

- 수산물은 수확 구역이나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학적·화학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 식품군으로 간주
 - 식품환경위생부는 수산물의 수입에 관하여 생산국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행 받은 보건인증서를 취득하도록 강력 권장
- 수입업체 관련사항
 - 식품수입업체는 수출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수입한 수산물이 홍콩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수하물의 도착
 - 공공보건과 지자체 규제 59(1)(c)에 따르면 식품환경위생부는 수입 식품 검사를 위한 특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수하물 홍콩 도착 시 위생부가 검사 또는 샘플링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동안 수입업체가 보건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식품환경위생부는 제품 판매 전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식품수출입과 및 식품환경위생부⁸⁾

마. 냉동·냉장육류, 냉동·냉장가금류의 수입허가 신청

(Frozen Meat, Chilled Meat, Frozen Poultry and Chilled Poultry)

- 냉동·냉장 육류, 냉동·냉장가금류 수입은 수입 라이선스를 가진 식품 수입 업체, 식품 유통업체로 등록된 수입업체, 식품안전 규제에서 제외된 식품 취급 업체(다른 규제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에게만 수입 허가증을 발급함

7) (852)2867-5577 또는 관공서 핫라인 1823 / (이메일) fsc@fehd.gov.hk / (팩스) 2521 4784

8) (852)2867-5577 또는 관공서 핫라인 1823/ (이메일) fsc@fehd.gov.hk / (팩스) 2521 4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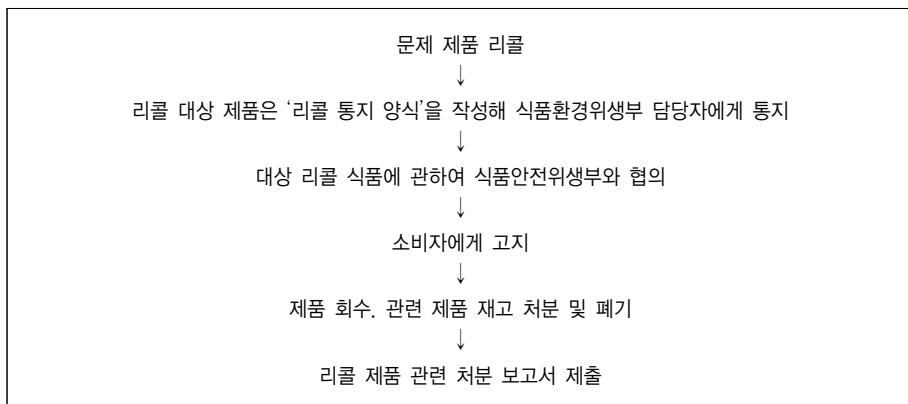
- 수입업체가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안전조례에 따라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 먼저 등록해야 함
- 개인적인 용도로 15kg 이하의 육류나 가금류를 홍콩으로 수입할 경우 라이선스 등록 사항에서 면제됨
- 냉동·냉장 육류, 냉동·냉장가금류 각각의 수화물은 하나의 수입 라이선스로 가능하며,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신청을 원하는 식품 수입·유통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방문 접수
- 냉장 저장창고 등록
 - 식품환경위생부의 냉장보관 라이선스를 통해 수입된 육류 및 가금류는 냉장보관 창고에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식품사업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 수입업체는 자신이 허가받은 식품업체를 수입 육류나 가금류의 냉장 저장 창고로 등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는 신청 후 24시간 뒤 수령(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청일·발급일 제외)되며, 발급날짜로부터 6주간, 1번의 선적에 대해 유효

바. 리콜 제도(Food Recall Guidelines)

- 리콜이란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판매, 유통 및 소비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를 의미하며, 식품환경위생부는 식품안전 규정 제30항에 따라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품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공급을 금지
 - 식품에 대한 리콜 명령
 - 식품에 대한 압류, 격리, 처분 명령
 - 식품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
- 리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업체의 자발적 리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식품업체가 취한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함
 - 소비자들이 리콜 조치 중인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식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시 대외적으로 선전함
 - 관련 식품으로 인해 공공보건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경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식품 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리콜조치에 대한 식품업계의 역할
 - 식품업체는 리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포함하여 모든 리콜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리콜 및 리콜 수행 절차는 식품환경위생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리콜절차에 관한 최신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리콜에 해외 수출 품목이 포함된 경우, 업체는 실행 가능한 대로 신속히 수령자에게 고지해야 함

■ 리콜관련 식품 진행 과정 ■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 (리콜 개시)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의료 관계자, 정부 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시될 수 있으며, 리콜이 개시되면 짧은 시간 내에 회수되어야 함
- (통지 및 협의) 공공보건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관련 식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환경위생부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함⁹⁾¹⁰⁾
- (고지) 언론보도,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신, 유료 광고, 공공안내 메시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상점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 전달
- (회수) 관련 식품을 즉각 회수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소매상은 유통업체에게 반품하기 위해 관련 식품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기록
 - 리콜한 식품은 다른 식품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따로 저장하며 적절한 표시마크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함
 - 리콜상품 복구 시 소비자가 소비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출시 전 재가공을 거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 가능

9) 리콜 신청서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8_recallform.html

10) 관련 문의 : (이메일) : Food_Recall_Notification@fehd.gov.hk, (전화) (852)2867-5567

- (보고서 제출) 리콜식품 취급업체는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회수 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 내 포함해야 할 내용
 - (a) 리콜 시행 배경
 - (b) 마스크 선전 세부사항 등을 포함하여 취급업체가 취한 조치
 - (c) 홍콩 및 해외 유통 범위와 규모
 - (d) 리콜 결과(회수 물품의 수량, 총계 등)
 - (e) 폐기방법 또는 회수된 식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
 - (f) 결함 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된 조치 및 조사보고서

사. 잔류농약 모니터링(Monitoring Pesticides Residues in Food)

- 관련법령 :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132CM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식품안전센터(CFS)는 홍콩의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2011년 CODEX 권장 표준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수출하는 기타 주요국의 기준을 추가·보충해 총 584개 농식품 가운데 농약 360종류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7,083개 항목 마련 (78개의 제외대상 농약류 별도 규정)
- 홍콩은 통관 단계 이외에도 필요시 유통 중에도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 2018년 11월 현재, 한국산은 없음
- 홍콩 식품안전센터 웹사이트에서 잔류농약 허용치 관련 규정 및 기준치 검색이 가능

- 잔류농약 관련 법령(Chapter 133)
http://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
- 잔류농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
http://www.cfs.gov.hk/tc_chi/food_leg/food_leg.html
-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 검색
http://www.cfs.gov.hk/english/mrl/mrl_preinput.php

-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이 인체에 위협하지 않거나 무해할 경우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유해성 여부는 식품환경위생부의 유해성 평가로 결정
 - 유해성이 판단된 식품의 경우 시장에 판매 불가하며, 전량 리콜조치 실시 및 관련 수입상에 잔류농약허용 기준 초과와 동일한 기준의 벌금형(HKD 50,000) 및 구금형(6개월) 부과

아. 달걀 수입가이드(Import of Eggs)

- 수입 전 식품환경위생부 담당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달걀류 수입상은 반드시 식품안전조례 제162장에 따라 식품환경위생부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된 식품 수입상이어야 함
 - 달걀류 수입상은 식품환경위생부 또는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FEHB 270 양식 또는 전자양식 e-FEHB 270로 서면 허가 신청 가능
- 허가서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수입 달걀류의 종류 및 수량
 - 해당 달걀류의 홍콩도착 예정일 및 운송수단
 - 해당 달걀류가 컨테이너 적재로 운반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
 - 해당 수입 달걀류의 수입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아래의 경우 달걀류 수입 불가
 - 위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 해당 달걀류가 환적 되었으나 환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 위생국이 발행한 서면허가서가 없을 경우
 - 위생국의 추가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서면허가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수입한 달걀류의 양이 비준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면허가를 사용하여 1회 이상 운송 가능하므로 별도 수입허가증 필요 없음.
- 달걀류 수입 서면허가 발급의 경우(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가능
- 신청비는 무료이며, 신청서는 아래 식품안전센터 산하 식품수출입부서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¹¹⁾

11)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 팩스 (852-2521-4784)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라벨링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로, 제조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됨
- 관련 법규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의 Part V와 Part VA 및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 Cap.132W를 따름

Ⅰ 홍콩의 식품관련 규정 명칭 Ⅰ

No.	내용	규정
1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Cap.132H
2	Dried Milk Regulations	Cap.132R
3	Sweeteners in Food Regulations	Cap.132U
4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Cap.132V
5	Food and Drugs(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Cap.132W
6	Food Business Regulation	Cap.132X
7	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Cap.132AC
8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Cap.132AF
9	Imported Game, Meat and Poultry Regulations	Cap.132AK
10	Milk Regulation	Cap.132AQ
11	Mineral Oil in Food Regulations	Cap.132AR
12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Cap.132BD
13	Slaughterhouses Regulation	Cap.132BU
14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132CM

자료 : 홍콩 식품안전센터

- 홍콩 라벨링 규정은 크게 식품·의약품(Food and Drugs)과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서는 포장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라벨링을 기술하고자 함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 라벨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아래의 기본 표시사항을 제시해야 함

구 분	필수 / 선택	샘 플 사 진																				
產品名稱 / Product Name	필수	產品名稱：固力果蕃茄百力滋餅乾條 Product Name: Glisco Tomato Pretz Biscuit Sticks 配 料：小麥粉,植物油,起酥油,蕃茄乾,糖,異構化糖,蔬菜膏(含有牛奶及大豆),酵母,食鹽,芹菜精,乾菜粉,改性澱粉(糊精),酵母精華,調味料及調味劑,乳化劑(E476,E473,E477,E322(大豆製品)),酸度調節劑(E296,E330,E270,E260),香辛料精華 本產品可能含有微量雞蛋 Ingredients :Wheat flour, Vegetable oil, Shortening, Tomato paste, Sugar, isomerized sugar, Vegetable paste(contains milk and soybean), Yeast, Table salt, Celery extract, Dried spinach, Modified starch(Dextrin),Yeast Extract,Flavour&flavouring, Emulsifier(E476,E473,E477,E322(Soybeans product)), Acidity Regulator(E296,E330,E270,E260), Spice extract This product may contain traces of egg. 淨 重：90克(22.5克×4袋) Net Weight: 90 g (22.5 g × 4 bags) 貯藏方法：請存放於陰涼乾燥處，避免陽光直射及高溫 香港總代理：洲洋貿易有限公司 地 址：香港九龍彌敦道23號 Manhattan Place 21樓 寄 地：日本 Product of Japan <table><tr><th colspan="2">Nutrition Information 營養資料</th></tr><tr><th colspan="2">Per 100g/ 每100克</th></tr><tr><td>Energy/能量</td><td>497 kcal/千卡</td></tr><tr><td>Protein/蛋白質</td><td>9.1g/克</td></tr><tr><td>Total fat/總脂肪</td><td>21.9g/克</td></tr><tr><td>Saturated fat/飽和脂肪</td><td>8.0g/克</td></tr><tr><td>Trans fat/反式脂肪</td><td>0.1g/克</td></tr><tr><td>Carbohydrates/碳水化合物</td><td>63.7g/克</td></tr><tr><td>Sugars/糖</td><td>4.6g/克</td></tr><tr><td>Sodium/鈉</td><td>609mg/毫克</td></tr></table> 製 造 商：EZAKI GLICO CO., LTD. Manufactured by: 6-5, 4 chome, Ujima, Nishiyodogawa-ku, Osaka, JAPAN 555-8502	Nutrition Information 營養資料		Per 100g/ 每100克		Energy/能量	497 kcal/千卡	Protein/蛋白質	9.1g/克	Total fat/總脂肪	21.9g/克	Saturated fat/飽和脂肪	8.0g/克	Trans fat/反式脂肪	0.1g/克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63.7g/克	Sugars/糖	4.6g/克	Sodium/鈉	609mg/毫克
Nutrition Information 營養資料																						
Per 100g/ 每100克																						
Energy/能量	497 kcal/千卡																					
Protein/蛋白質	9.1g/克																					
Total fat/總脂肪	21.9g/克																					
Saturated fat/飽和脂肪	8.0g/克																					
Trans fat/反式脂肪	0.1g/克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63.7g/克																					
Sugars/糖	4.6g/克																					
Sodium/鈉	609mg/毫克																					
配料 / Ingredients	필수																					
貯藏方法 / (Special Conditions for storage or instruction for use)	필수																					
淨重 / (Count, weight or volume)	필수																					
製造商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or packer)	필수																					
營養資料 / (Nutrition label)	필수																					
此日期前最佳 / (Best Before)	필수																					

나. 용어정의

- 產品名稱(Name of the food) : 제품의 고유명칭
- 配料(Ingredients) : 성분목록,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함
- 貯藏方法(Special Conditions for storage or instruction for use) : 유통기한 까지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 보관방법과 사용 방법
- 淨重(Count, weight or volume) : 중량
- 製造商(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or packer) : 제조사 이름 및 소재지
- 營養資料(Nutrition label) : 영양소 정보
- 此日期前最佳(Best Before) : 유통기한

다. 표기방식

- 포장식품의 표기 및 라벨링은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하거나 공용 가능
 - 영·중문이 혼용되었을 경우 성분목록 또한 영·중문으로 표기
- 제조국의 전통식품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식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기 가능
- 폰트 사이즈 : 일반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 x를 기준으로 최소 1.2mm의 높이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때 중문은 눈에 띄는 사이즈로 제작되어야 함(권장사항)
- 라벨 제작 시 검정 또는 짙은 컬러와 밝은 색 바탕, 문자와 단어, 줄, 문단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가독성을 높일 것
- 브랜드명이나 상표에 특이한 명칭이 포함되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본래 성질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브랜드명이나 상표 바로 뒤에 “Brand”(牌子) 또는 “TM”(商標)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글자·기호 크기는 3mm 이상으로 표기
- 아래와 같은 가공처리 식품은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품명에 관련 가공처리 내용을 적절히 명시할 것을 권장
 - 분말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상태
 - 건조, 냉동건조, 응집, 훈제 또는 기타 처리한 상태

라. 표시사항별 표기방식

- 제품이름 : 제품의 이름 또는 명칭을 명료하게 표기해야 함
- 성분목록(List of ingredients)
 - 포장식품은 성분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 또는 라벨링 하되, 안내 서두에 ingredients(配料), composition(成分組合), contents(內含物質)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기
 -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식품첨가물을 포함하면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성분은 식품 포장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하며 물은 식품 전체의 부피의 5% 미만일 경우 생략
 - 아래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라벨에 적시해야 하며, 표기 방법은 “재료명(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같이 표기함

- ※ 표기사례 1) 밀가루(글루텐 포함 곡류), 계란, 새우(갑각류), 게살(갑각류 부산물)
 ※ 표기사례 2) 고등어(생선), 소이소스(콩류 부산물), 유장 단백질(우유 부산물)

- 글루텐(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이나 부산물)을 포함하는 곡류
- 갑각류(crustacea) 및 갑각류 부산물
- 계란 및 계란 부산물
- 생선 및 생선 부산물
- 땅콩, 콩 및 그들의 부산물
- 우유 및 우유 부산물(락토스 포함)
- 견과류 및 견과류 부산물

- 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식품성분이 첨가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능부류와 함께 특정이름이나,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 번호, 또는 접두사 “E”+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ID번호 성분을 표기¹²⁾

※ 표기사례 1) Preservative (Benzoic acid) → 기능부류(특정이름)

※ 표기사례 2) Preservative (210) → 기능부류(INS ID번호)

※ 표기사례 3) Preservative (E 210) → 기능부류(“E”+INS ID번호)

산미제 Acid (酸味劑)	산화방지제 Acidity regulator (酸度調節劑)	항결결제 Anti-caking agent (抗結劑)
소포제 Anti-foaming agent (消泡劑)	항산화제 Antioxidant (抗氧化劑)	호색제 Colour retention agent (護色劑)
증체제 Bulking agent (增體劑)	색소 Colour (色素)	유화제 Emulsifier (乳化劑)
유화염 Emulsifying salt (乳化鹽)	고화제 Firming agent (固化劑)	증미제 Flavour enhancer (增味劑)
면분처리제 Flour treatment agent (麵粉處理劑)	발포제 Foaming agent (發泡劑)	교응제 Gelling agent (膠凝劑)
상광제 Glazing agent (上光劑)	수분보지제 Humectant (水分保持劑)	방부제 Preservative (防腐劑)
추진제 Propellant (推進劑)	팽창제 Raising agent (膨脹劑)	온정제 Stabilizer (穩定劑)
첨미제 Sweetener (甜味劑)	증조제 Thickener (增稠劑)	

○ 보관 및 사용 방법

-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시 라벨에 기술
-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해 특별한 설명 및 방법이 필요할 시 라벨에 기술

12) http://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13_ins.html

- 무게 · 부피 · 수량 : 포장식품의 총 무게 또는 총 부피 또는 수량 표기
- 제조자 정보
 -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업체명, 주소를 명시해야 함. 단, 아래의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① 식품 원산지 및 홍콩 유통업체, 브랜드 소유주의 이름이 식별 가능한 코드로 표시 혹은 라벨링 되었을 경우
 - ② 홍콩 유통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주가 원산지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의 주소 및 식별가능 코드를 홍콩 당국에 서면으로 알렸을 경우
 - ③ 제조공장 또는 포장업체 등의 가공장소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의해 소유 · 운영 되어 라벨에 해당 정부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표기할 경우

- 영양소 정보 : 별도로 다름
- 유통기한
 - 일반적으로 식품이 본래의 뚜렷한 가치를 존속하는 기간인 best before(此日期前最佳)를 일자로 표기
 - 영문 ‘best before’와 중문 ‘此日期前最佳’표기에 이어 유통기한을 표기

기 간	표기법
3개월 미만	월, 일 단위로 표기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일자 앞에 영문 ‘end’와 중문 ‘底’를 표기한 후 년, 월 단위로 표기
18개월 이상	일자 앞에 영문 ‘end’와 중문 ‘底’를 표기 한 후 년,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표기

- 상하기 쉬운 제품은 “use by(此日期前食用)”로 표기
-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중국어 · 영어로 함께 표기하며, 일(day), 월(month), 년(year) 순서로 표기

구 분	표기법
일(day)	“DD”, “dd”, “D” 또는 “d”와 중문 “日” 사용
월(month)	“MM”, “mm”, “M” 또는 “m”와 중문 “月” 사용
년(year)	“YY”, “yy”, “Y” 또는 “y” 중문으로 “年” 사용

- 유통기한은 라벨링이 아닌 다른 위치에 명시 가능하며, 이 경우 라벨 상 유통기한이 명시된 위치를 기술

마. 영양소 라벨링(The New Nutrition Labelling)

- 홍콩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소 정보(nutrition information)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라벨이나 선전 문구를 규제하는 데 있음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칼로리(energy)와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s), 염분(sodium), 당류(sugars)의 함유량임
 - 칼로리(energy)는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전체 영양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에너지로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계산방식을 따름
 - 칼로리를 포함한 7대 영양소 외에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추가 표기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내 식이섬유(dietary fibre) 미포함 함유량이라면, 식이섬유 함유량도 반드시 별도로 표기
 - 각 영양소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표기하며, 최대량(maximum)과 최소량(minimum) 등 범위(Ranges)로는 표기 금지
- 영양소 정보는 표 형태(tabular format)로 포장식품 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공하며, 포장 표면적이 200cm²일 경우에는 선형(linear)으로 표기 가능
- 영양소 라벨은 영어·중국어 또는 병용으로 표기가능하나, 함유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Ⅰ 영양소 라벨링 예시 Ⅰ

Nutrition Information(營養資料)		
Per Serving / Per Package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가능		Per 100g / 每100克
칼로리	Energy/能量	103kcal/千卡(433kJ/千焦)
단백질	Protein/蛋白質	7.5g/克
총지방	Total Fat /總脂肪	2.6g/克
포화지방	- Saturated fat/飽和脂肪	0.2g/克
트랜스지방	- Trans fat/反式脂肪	0g/克
탄수화물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19g/克
당류	- Sugars/糖	4.0g/克
나트륨	Sodium/鈉	105mg/毫克

○ 영양소 선전문구(nutrition claims)

- 영양소 라벨링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low fat’, ‘high fibre’, ‘lower cholesterol’ 등 영양소와 관련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주요 영양소 표현에 대한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

Ⅱ 주요 영양소 표현에 대한 조건사항

구성성분	표현방법	조 건 내 용
Energy (칼로리)	(1) Low	고체 식품(solid food)은 100g당 40kcal 이하 함유
		액체 식품(liquid food)은 100ml당 20kcal 이하 함유
	(2) Free	액체 식품은 100ml당 4kcal 이하 함유
Protein (단백질)	(1) Low	어느 식품이든 단백질이 칼로리의 5%를 이하 함유
	(2) Source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10%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ml당 중국 NRV의 5% 이하 함유
	(3) High	고체 식품은 단백질 100g당 중국 NRV의 20%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단백질 100ml당 중국 NRV의 10% 이하 함유
Total Fat (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3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지방이 1.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지방이 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지방이 0.5g 이하 함유
Saturated Fat (포화지방)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1.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포화지방산이 0.7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포화지방산이 0.1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포화지방산이 0.1g 이하 함유
Trans Fat (트랜스지방)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트랜스지방산이 0.3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트랜스지방산이 0.3g 이하 함유
Cholesterol (콜레스테롤)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2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01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0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005g 이하 함유
Sugars (당류)	(1) Low	고체 식품은 100g당 당성분이 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당성분이 5g 이하 함유
	(2) Free	고체 식품은 100g당 콜레스테롤 0.5g 이하 함유
		액체 식품은 100ml당 콜레스테롤 0.5g 이하 함유
Sodium (염분)	(1) Low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12g 이하 함유
	(2) Very low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04g 이하 함유
	(3) Free	어느 식품이든 100g/㎖당 염분 0.005g 이하 함유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 표현이 다음과 같이 대체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 Low : Little, Low source, Few, Contains a small amount of
 - Very Low : Extremely low, Super low
 - Free : Zero, 0, No, Contains no, Without, Off, Does not contain
 - Source : Contains, Provides, Has, With
 - High : High source, Good source of, A valuable source of, Rich in, Plenty of
- 영양소 라벨링 규정적용 제외 사례
 - 포장 표면적이 100cm²일 경우
 - 차잎(Tea Leaves), 양념류(spices), 증류수(distilled water), 육류(raw meat), 신선과일 및 채소 상품일 경우
 - 포장식품의 연간 판매(annual sales)가 30,000미만일 경우 영양소 라벨링 규정 제외
- 영양소 라벨링 규정 제외제품은 관련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해야 함
 - 예) Nutrition Labelling Exempted(營養標籤產品)

바. 기타 라벨링 규정

□ 영·유아 조제분유·포장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 영·유아 보건, 영·유아용 안전식품 선택 가이드 및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포장식품의 라벨링을 규정
 - 영아용 조제분유에 들어가는 25가지 영양소(1+25)의 에너지 값·내용물의 라벨링을 규정
 - 영·유아용 포장식품은 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1+4) 등 4대 영양소와 비타민 A·비타민 D에 대한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을 포함해야 함
 -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해 조제된 영·유아용 분유는 영양성분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되나 규정에 따라 특수 라벨 부착
 - 기 시행 중인 영양 라벨링제도(Nutrition Labelling Scheme) 규정에 따라 소포장 조제분유·포장식품 역시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
 - 소포장 상품은 총 250cm² 미만의 용기로 포장된 유아용 조제분유 또는 100cm² 미만 면적의 용기로 포장한 영·유아용 포장식품¹³⁾

13) (www.cfs.gov.hk/english/press/20160613_0549.html) 참조

□ 소금 및 설탕 라벨링에 관한 권고안

- 소금·설탕 줄이기 위원회(CRSS),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식품안전센터(CFS)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소금·설탕이 함유된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권고안을 추진했으며, 2018년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동 제도는 소비자가 저염·저당 식품을 보다 쉽게 식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트륨 및 당 함유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저염·저당 제품이 시장에 더욱 많이 출시되어 자국민 건강 증진을 기대
- 적용기준
 - 저염, 무염, 저당 및 무당의 정의에 해당하는 포장 식품은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중문, 영문, 또는 중문·영문을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님

Ⅰ 라벨 적용 기준 Ⅰ

영양소	표시 기준	조 건
나트륨(소금)	Low	100g / mL 식품 당 0.12g 이하의 나트륨을 함유 한 고체 또는 액체 식품
	No	100g / mL 식품 당 0.005g 이하의 나트륨을 함유 한 고체 또는 액체 식품
설탕	Low	100g 당 5g 이하의 설탕을 함유 한 고형 식품, 또는 100mL 당 5g 이하의 당을 함유 한 액상 식품
	Now	100g 당 0.5g 이하의 설탕을 함유 한 고형 식품, 또는 100mL 당 0.5g 이하의 당을 함유 한 액상 식품

Ⅰ 라벨링 로고 예시 Ⅰ

■ 70C 25Y	■ 50M 100Y	■ 35M 8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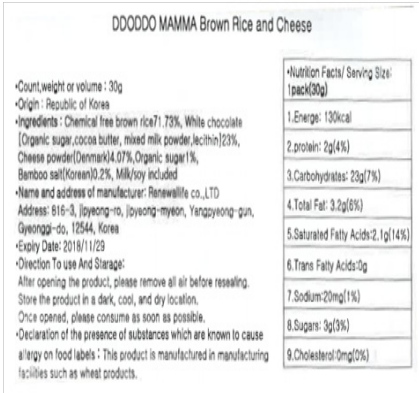
○ 신청 방법

- 라벨 사용 시 식품안전센터에 직접 신청가능, 사전 승인절차 불필요
- 소금·설탕 표기 신고서(FEHB 277)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가 첨부된 자료와 함께 식품안전센터에 송부,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식품에 라벨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식품의 홍보용 자료에 라벨 표기 가능

3. 라벨링 샘플

표시사항	영양성분	라벨링사진
제품명칭 : 멘**	칼로리 : 391kcal	
원산지 : 베트남	단백질 : 0g	
성분목록 : 설탕, 포도당 시럽, 코코넛 오일 등	총지방 : 1.6g	
중량 : 200g	포화지방 : 1.6g	
제조상 : ***	트랜스지방 : 0g	
제조위치 : Duong Province, Vietnam	탄수화물 : 93.1g	
수입상 : ***	당류 : 73.2g	
유통기한 : 별도부착	나트륨 : 41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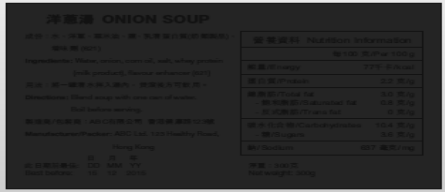
표시사항	영양성분	라벨링사진
제품명칭 : *** ** 초코스틱	칼로리 : 510kcal	
원산지 : 일본	단백질 : 8.7g	
성분목록 : 밀가루, 전지분유, 코코아 매스 등	총지방 : 23.9g	
중량 : 56g	포화지방 : 13.5g	
제조상 : ***	트랜스지방 : 0.1g	
제조위치 : Osaka, Japan	탄수화물 : 63.1g	
수입상 : ***	당류 : 37.2g	
유통기한 : 31/07/2019	나트륨 : 191mg	

표시사항	영양성분	라벨링사진
제품명칭 : 또또**	칼로리 : 130kcal	
원산지 : 한국	단백질 : 2g	
성분목록 : 무농약현미, 리뉴얼화이트, 혼합탈지분유 등	총지방 : 3.2g	
중량 : 30g	포화지방 : 2.1g	
제조상 : **	트랜스지방 : 0g	
제조위치 : Gyeonggi-do, Korea	탄수화물 : 23g	
보관방법 : 실온보관	당류 : 3g	
유통기한 : 29/11/2018	나트륨 : 20mg	

표시사항	영양성분	라벨링사진
제품명칭 : 카레치킨덮밥	칼로리 : 539kcal	
원산지 : 중국	단백질 : 4.2g	
성분목록 : 쌀, 물, 닭고기 등	총지방 : 3.0g	
중량 : 550g	포화지방 : 1.2g	
제조상 : **	트랜스지방 : 0g	
제조위치 : Kwai Chung, Hong Kong	탄수화물 : 21g	
수입상 : 생략	당류 : 3.0g	
유통기한 : 2/12/2018	나트륨 : 265mg	

4. 라벨링 사례

구분	사유																		
洋蔥湯 ONION SOUP 淨重：30克 Net weight: 30g 成份：水、洋蔥、粟米油、鹽、乳清蛋白質(奶類製品)、增味劑(621) 用法：將一罐清水拌入湯內，煲滾後方可飲用。 製造商/包裝商：ABC有限公司 香港健康路123號 Ingredients: Water, onion, corn oil, salt, whey protein(milk product), flavour enhancer (621) Directions: Blend soup with one can of water. Boil before serving. Manufacturer/Packer: ABC Ltd. 123 Healthy Road, Hong Kong <table border="1"> <thead> <tr> <th>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th><th>每100克/Per 100 g</th></tr> </thead> <tbody> <tr> <td>能量/Energy</td><td>77千卡/kcal</td></tr> <tr> <td>蛋白質/Protein</td><td>2.2克/g</td></tr> <tr> <td>總脂肪/Total fat</td><td>3.0克/g</td></tr> <tr> <td>碳水化合物/Carbohydrates</td><td>10.4克/g</td></tr> <tr> <td>- 飽和脂肪/Saturated fat</td><td>0.8克/g</td></tr> <tr> <td>- 糖/Sugars</td><td>3.6克/g</td></tr> <tr> <td>- 反式脂肪/Trans fat</td><td>0克/g</td></tr> <tr> <td>鈉/Sodium</td><td>637毫克/mg</td></tr> </tbody> </table>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좋은 예) 알파벳 소문자 x가 최소 1.2mm이며, 종문의 사이즈가 영문과 비교될 수 있는 폰트 크기의 라벨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洋蔥湯 ONION SOUP 淨重：30克 Net weight: 30g 成份：水、洋蔥、粟米油、鹽、乳清蛋白質(奶類製品)、增味劑(621) 用法：將一罐清水拌入湯內，煲滾後方可飲用。 製造商/包裝商：ABC有限公司 香港健康路123號 Ingredients: Water, onion, corn oil, salt, whey protein(milk product), flavour enhancer (621) Directions: Blend soup with one can of water. Boil before serving. Manufacturer/Packer: ABC Ltd. 123 Healthy Road, Hong Kong <table border="1"> <thead> <tr> <th>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th><th>每100克/Per 100 g</th></tr> </thead> <tbody> <tr> <td>能量/Energy</td><td>77千卡/kcal</td></tr> <tr> <td>蛋白質/Protein</td><td>2.2克/g</td></tr> <tr> <td>總脂肪/Total fat</td><td>3.0克/g</td></tr> <tr> <td>碳水化合物/Carbohydrates</td><td>10.4克/g</td></tr> <tr> <td>- 飽和脂肪/Saturated fat</td><td>0.8克/g</td></tr> <tr> <td>- 糖/Sugars</td><td>3.6克/g</td></tr> <tr> <td>- 反式脂肪/Trans fat</td><td>0克/g</td></tr> <tr> <td>鈉/Sodium</td><td>637毫克/mg</td></tr> </tbody> </table>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좋은 예) 알파벳 소문자 x가 최소 0.8mm이며, 중문 폰트 사이즈가 최소 1.8mm인 라벨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洋蔥湯 ONION SOUP 淨重：30克 Net weight: 30g 成份：水、洋蔥、粟米油、鹽、乳清蛋白質(奶類製品)、增味劑(621) 用法：將一罐清水拌入湯內，煲滾後方可飲用。 製造商/包裝商：ABC有限公司 香港健康路123號 Ingredients: Water, onion, corn oil, salt, whey protein(milk product), flavour enhancer (621) Directions: Blend soup with one can of water. Boil before serving. Manufacturer/Packer: ABC Ltd. 123 Healthy Road, Hong Kong <table border="1"> <thead> <tr> <th>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th><th>每100克/Per 100 g</th></tr> </thead> <tbody> <tr> <td>能量/Energy</td><td>77千卡/kcal</td></tr> <tr> <td>蛋白質/Protein</td><td>2.2克/g</td></tr> <tr> <td>總脂肪/Total fat</td><td>3.0克/g</td></tr> <tr> <td>碳水化合物/Carbohydrates</td><td>10.4克/g</td></tr> <tr> <td>- 飽和脂肪/Saturated fat</td><td>0.8克/g</td></tr> <tr> <td>- 糖/Sugars</td><td>3.6克/g</td></tr> <tr> <td>- 反式脂肪/Trans fat</td><td>0克/g</td></tr> <tr> <td>鈉/Sodium</td><td>637毫克/mg</td></tr> </tbody> </table>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좋은 예) 라벨의 바탕이 밝고, 글자가 짙은 디자인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洋蔥湯 ONION SOUP 淨重：30克 Net weight: 30g 成份：水、洋蔥、粟米油、鹽、乳清蛋白質(奶類製品)、增味劑(621) 用法：將一罐清水拌入湯內，煲滾後方可飲用。 製造商/包裝商：ABC有限公司 香港健康路123號 Ingredients: Water, onion, corn oil, salt, whey protein(milk product), flavour enhancer (621) Directions: Blend soup with one can of water. Boil before serving. Manufacturer/Packer: ABC Ltd. 123 Healthy Road, Hong Kong <table border="1"> <thead> <tr> <th>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th><th>每100克/Per 100 g</th></tr> </thead> <tbody> <tr> <td>能量/Energy</td><td>77千卡/kcal</td></tr> <tr> <td>蛋白質/Protein</td><td>2.2克/g</td></tr> <tr> <td>總脂肪/Total fat</td><td>3.0克/g</td></tr> <tr> <td>碳水化合物/Carbohydrates</td><td>10.4克/g</td></tr> <tr> <td>- 飽和脂肪/Saturated fat</td><td>0.8克/g</td></tr> <tr> <td>- 糖/Sugars</td><td>3.6克/g</td></tr> <tr> <td>- 反式脂肪/Trans fat</td><td>0克/g</td></tr> <tr> <td>鈉/Sodium</td><td>637毫克/mg</td></tr> </tbody> </table>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나쁜 예) 라벨 바탕 패턴으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營養資料 Nutrition Information	每100克/Per 100 g																		
能量/Energy	77千卡/kcal																		
蛋白質/Protein	2.2克/g																		
總脂肪/Total fat	3.0克/g																		
碳水化合物/Carbohydrates	10.4克/g																		
- 飽和脂肪/Saturated fat	0.8克/g																		
- 糖/Sugars	3.6克/g																		
- 反式脂肪/Trans fat	0克/g																		
鈉/Sodium	637毫克/mg																		

구분	사유
	(나쁜 예) 라벨 바탕과 글자가 모두 어두워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
	(나쁜 예) 라벨 바탕과 글자가 모두 밝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라벨
	(나쁜 예)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움 (가장 작은 폰트 사이즈가 알파벳 소문자 0.8mm 미만, 중문 1.8mm 미만의 경우)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대만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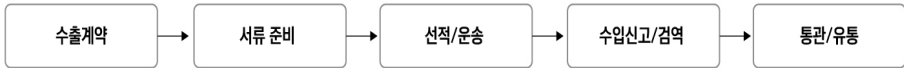
제5장 출처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55
	제2장 통관제도	156
	1. 관리 · 법률체계	156
	2. 통관절차	156
	3. 통관비용	158
	4. 통관 시 제출서류	159
	5. 기타 통관제도	161
	6. 관세제도	163
	7. 주요품목 수입규정	165
	8. 최근 이슈	171
	제3장 검역제도	173
	1. 관리 · 법률체계	173
	2. 검역범위	174
	3. 검역절차	175
	4. 검역비용	177
	5. 검역 시 제출서류	179
	6. 주요품목별 검역제도	180
	7. 최근 이슈	194
	제4장 라벨링 제도	198
	1. 관리 · 법률체계	198
	2. 식품 라벨링 기준	198
	3. 표시사항	200
	4. 품목별 라벨링 표기	205
	5. 최근 이슈	220
	제5장 출처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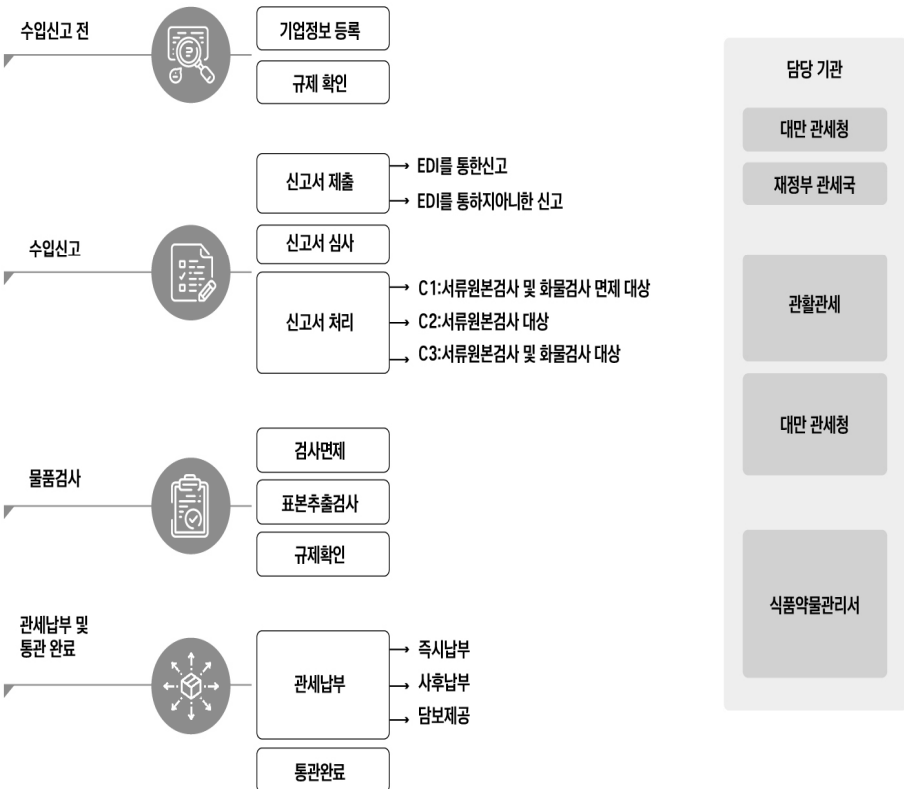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 식품 수출절차

1)



☞ 대만 통관절차



1)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방식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통관 관련 상위기관은 재정부(財政部, 산업통상자원부 격)이며, 주무기관은 관무서(關務署, 관세청 격)²⁾
 - 관무서는 수입품 관세 부과, 통관 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 단속, 보세구역 관리, 무역통계 등 업무 담당
 - 관무서는 타이베이(台北) · 지룽(基隆) · 타이중(台中) · 가오슝(高雄) 등 4개의 세관을 관리하며, 각 세관 산하 10개 분국(分局) · 지국(支局)으로 나뉘어 업무 담당

나. 법률체계

- 수출입 관련 사항은 관세법(關稅法)에서 규율
 - 관세법은 1967년 8월 8일 58개 조항을 시작으로 현재 103개 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5월 9일 개정
 - 총 7장³⁾*으로 구성
- 세부 실행 규정은 관세법실행세칙(關稅法施行細則)에 따라 실시

2. 통관절차

가. 통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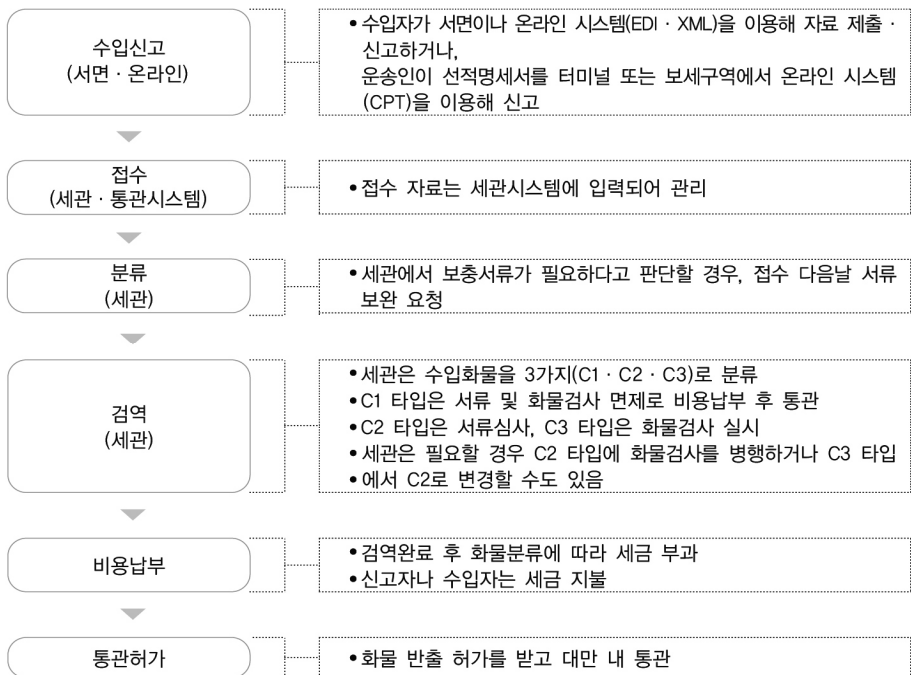
- 수입신고
 - 서면신고 시 수입자나 통관업자가 수입 관련 자료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고 세관에서 전자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물품 분류 후 검역 필요여부 고지
 -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고 시 수입자가 재정부 관무서 세관신고시스템(關港貿單一窗口, CPT)에 관련서류 신고
- 접수(모든 접수 자료는 세관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2) web.customs.gov.tw

3) 1장 총칙, 2장 통관절차(통관 및 검사, 완세가격, 납세기한 및 행정구제), 3장 세금우대(세금 면제, 보세, 세금 환급), 4장 특별관세, 5장 벌칙, 6장 집행, 7장 부칙

- 물품 분류(접수자료 및 세관이 채취한 샘플 등을 바탕으로 물품 분류)
- 검역
 - 세관은 수입화물을 3가지(C1 · C2 · C3)로 분류
 - 분류 후 해당제품에 규정한 방법으로 검역 실시
- 비용납부
 - 검역에 소요한 비용 납부 후 통관
- 통관허가

〈대만, 통관절차도〉



* 출처 : 대만 재정부 관문서

나. 수출업체 유의사항

- 통관신청자는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통관은 납세 의무인이나 화물 수출입자 혹은 위탁통관업자로 지정
 - 화물수입자 · 위탁통관업자는 반드시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에 수출입업체등록(Registration as Exporter Importer)을 마쳐야 함

3. 통관비용

가. 통관 관련 세금

- 입항세
 - 비용등급비율표(收費等級費率表)에 따라 교통부 항만국(航港局)에서 징수
- 무역진흥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의 0.04%
 - 국제무역국을 대신해 세관에서 수납
- 수입관세
 - 3가지 과세방식으로 나뉨
 - 종량제⁴⁾
 - 종가세⁵⁾
 - 복합세⁶⁾
- 화물세
 -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후 화물세 세율을 곱해 환산
 - 화물세조례(貨物稅條例)상 화물세면제대상⁷⁾일 경우 면세
 - 음료 관련 화물세⁸⁾는 CIF가격과 수입관세율을 더한 후 화물세율을 곱해 환산
- 담배주류세
 - 담배세의 경우 일반담배는 590NTD/1,000개비 당, 담배가루·시가렛·기타담배 제품은 590NTD/Kg 징수
 - 주류의 경우 양조주류 25NTD/1L당, 기타 양조주류는 알코올 성분을 기준으로 7NTD/1도, 증류주류 알코올 성분을 기준으로 7NTD/1도
- 건강복지세
 - 담배관련 품목에 대해 추정

4) 수입화물의 수량·종량·용적 등을 기준으로 수량(종량)에 단위세액을 곱한 값

5)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완납가격(CIF)에 세율을 곱한 값

6) 동일 과세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해 과세

7) 제조 후 화물세 별도 지급하는 상품원료, 전시회 참가 목적의 비매품, 군사 증여품, 국방부가 허가한 군용 화물 등

8) 석천연과채주는 관세를 포함한 세금완납가격의 8%

기타음료품(알코올 0.5% 미만)은 관세를 포함한 세금완납가격의 15%, 천연과즙·과일잼·가당과일잼·농축과일즙·순수천연과채즙은 관세 면제

- 영업세
 - CIF · 수입관세 · 화물세 · 담배주류세 · 담배건강복지세를 합산한 값의 5%
- 특별화물 및 노무세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平衡稅) :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을 수입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준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 관세를 징수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反傾銷稅) : 수입물품을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줄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 관세 징수

나. 비용지불방식

- 인터넷
- 현금 지불 방식
 - 세관 세금 수납처에 직접 지불
- 송금 방식
 - 거래 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구를 통하여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입금 계좌로 송금 대행을 함
- 수입화물 선 방출 후
 -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 후 지불

4. 통관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명

- INVOICE(Commercial Invoice)
 - 수취인 명칭, 주소, 화물 명칭, 브랜드, 수량, 품질, 규격, 형태, 시리얼넘버, 단가, 운송비, 보험비, 기타 추가요금, 수출입 감세 항목 등 명시
- PACKING LIST(P/L)
 - 벌크 및 단일 물품의 박스 포장일 경우 제출 생략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 서면 신고자는 수입 신고 시 D/O 또는 AWB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통관 전자시스템 실시자는 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해 제출 생략

- 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인 공동 성명

○ 제품 카달로그 · 설명서 · 검역 샘플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대만으로 직접 운송하는 제품의 최종 수출국 명기

- 최종 수출국은 화물 생산이 동일 제조국에서 완전 취득을 진행

- 제3국 경유 시 화물 운송기간 내 상품의 적재나 가공 또는 기타 작업 불허

- 화물포장 상 원산지 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
자료 요청 면제

○ 기타 규정상 제출필요로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요청

〈대만, 통관신고서 샘플〉

[illegible][illegible]

* 출처 : 대만 재정부 관무서

5. 기타 통관제도

가. 통관 작업 일원화

- 세관 항구 무역 원스톱창구(關港貿單一窗口)
 -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기관·업체의 수출입 업무 전반 운영
 - 모든 수출입 업무는 세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및 전송
 - 수출입신청·운수·도급·창고·화물집산지·기타 통관 업무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서류 전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제10조 1항)
 - 자동화 시스템 연결 또는 등기·신청·관리·통관·기타 사항은 재정부의 화물 통관자동화실시방법을 기준으로 함(제10조 3항) 등 관련 사항 적시

〈대만, 세관 항구 무역 원스톱창구 홈페이지〉



* 출처 : 관무서

나. 사전 통관

- 관련 법률
 - 수출입화물선행통관처리준칙(進出口貨物預行報關處理準則)
 - 수입화물의 선행 통관 처리는 1975년 2월 20일 관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정한 해당 법규에 따라 실시
- 주요내용
 - 수입 화물은 화물 운송의 책임자 또는 수탁인이 세관에 수입목록을 작성 후 신청
 - 납세의무자는 각 목록의 증명서와 함께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 수입화물은 납세 의무인이 수입관세 혹은 보증금을 납입 한 후 수령 가능하며, 화물 수령 시 규정상 검사 면제자 외 검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수령이 가능함

- 해운·항공의 수입 적하목록은 분할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해운의 경우 각 목록과 정식 수입 적하목록의 선박 번호가 동일해야 함
- 항공으로 수입하는 신선 제품·부패하기 쉬운 화물·생물·식물·시간적 효력 제한이 있는 신문·잡지·위험물품·방사능 원소·뿔가루·사체·LCL·FCL 화물·기타 특수 화물 등은 통관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검열
- 물·전기·석유·천연가스 등 미래형 자원 수입 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적하 목록 제출 없이 통관 신청 가능
- 납세의무자는 화물 수입 후 일정기간 내에 송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실제 수입량에 의거해 세관에 신고하거나 환급 또는 세금 납부

다. 해운특송화물 통관

○ 연혁

- 2013년 11월 29일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제정한 해운특송화물 통관방법(海運特送貨物通關辦法)에 따라 해운특송화물 통관 실시

○ 특송화물 분류

- 수입 시 : (면세) 2,000NTD 이하 물품·세금 포함, (저가) 2,001~50,000NTD 이하 물품/세금 포함, (고가) 50,001NTD 이상 물품/세금 포함
- 수출 시 : (저가) FOB가격 50,000NTD 이하 물품, (고가) FOB가격 50,000NTD 이상 물품

○ 주요 내용

- 해운 택배 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선박이 최종도착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해운 택배 수출입 업자는 물품의 성질·가격에 따라 분류해 기재해야 함
- 비매품 화물 통관 시 발송인의 서명인 들어간 내용증명서를 부착
- 외국인의 대만 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물품 인계 시 여권번호 및 외국인거류증번호 모두 기입 가능

○ 예외사항

- 세금 포함 50,001NTD 이상의 물품, 화물세 조항·특수 화물·노무세조항(勞物稅條) 규정 내 고가 해운 택배 물품
- 수출입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
- 세금환급 및 보세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 복사본 제출
- 반입·반출 안건은 수출 원형 반출 및 수입 면장 요구

- 세법에서 정의한 감세 혜택 규정 범위 내의 화물
- 수입코드 「G1」(외국 화물 수입 SHEET) 및 수출코드 「G5」(국내화물 수출 SHEET)범위 외의 수입 품목
- 화물세 조항·특수 화물·노무세 조항 내 규정 화물
- 재정부에서 공고한 특별 범위내의 화물
-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 화물
- 해운특송 제한물품
 -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 물품·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신선 농축수산물·살아 있는 동식물·야생보호 동식물 등 수입 금지
 - 화물의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이 각 70kg을 초과하는 물품 금지

6. 관세제도

가. 관리·법률 체계

- 관세제도 관리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 관세관련 관리 법률 : 세관수입세칙(海關進口稅則)

나. 관세기준

- 수입품 품목분류⁹⁾¹⁰⁾
 - 대만은 자체적으로 숫자 11자리의 CCC코드를 이용하며, 앞 6자리는 HS코드와 동일
- 관세기준
 - 제1란(Column I) 세율은 세계무역 조직위원 또는 대만 우혜국의 수입품
 - 제2란(Column II) 세율은 특정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또는 대만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품
 - 제3란(Column III)은 제1란·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
 - 한국 수입품은 제1란 관세를 적용

다. 수입규정¹¹⁾

- 중화민국수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輸入貨品分類表)
 - 수입품을 시판하기 위해서 CCC코드 따라 분류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

9) 대만 : <http://web.customs.gov.tw/Rateweb/search1.aspx>

10) 한국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11)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P050Q.asp> 참조

-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에서 검사 마쳐야 수입허가증 취득 가능
- 구성
 - 3개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구성

〈대만, 식품 관련 주요 수입규정〉

코드	내용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동식물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이 정한 ‘동·식물 검역대상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
F01	‘식품및관련제품수입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에 수입 검사 신청
F02	이에 속한 식품·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식품용 세정제 등은 ‘식품및관련제품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 신청
H01, H02	위생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약재의 수입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가 발부한 수입허가통지에 따라 수입 실시
MW0	중국지역 물품 수입 불가
W01	주류 수입은 재정부(財政部)·행정부 위생복지부의 ‘수입주류검사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에 따라 재정부에 수입검사 신청
MP1	(1) 중국산 상품의 조건적 수입허가 규정인 ‘중국상품조건적수입허가 항목 및 수입관리법 규정표’에 따라 실시 (2) ‘중국산 상품 조건부 허가항목·수입관리 법규정법’내 Mxx의 조건이 붙은 것은 국제 무역국(國際貿易局)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함 (3) 한국산은 제외
114	북한 물품 수입 불가
442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의 동의문건 별도 첨부
451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동의문서를 첨부하거나 식량산업등기(업무종류가 수입을 포함)증명서 제출 : 벼·현미는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동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
463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서를 첨부·제출할 것 : 자가용 담배 주류는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 인 물품의 경우 제출을 면함 (1) 일반 담배 : 1,000개, 시가렛 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2) 주류 : 5리터·벌크·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업체는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501	위생복지부의 동의문건 별도 첨부
502	건조제품 수입(뿌리삼 일 경우) : (1) 약재상 판매 자격증이나 한의사 자격증(또는 행정원 위생복지부가 발부한 약품 제조 허가증) 복사본을 구비해 첨부 제출 (2)분말일 경우, 위생 복지부가 발부한 약물허가증 복사본을 별도 첨부 (3) 화물명칭은 서류상 한약재 및 중문 약초명을 기재, 건품이 아닌 것은 상술의 제한을 받지 않음

코드	내용
508	- 수입첨가물은 아래의 규정에 따름 - 위생보리부가 발표한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식품첨가물사용범위및제한량 및규격표준)」 기재된 단일조합식품첨가물(향료제외)는 위생보리부가 발표한 식품첨가물 허가증 복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F01규정대로 검사함 - 향료 또는 복합조합식품첨가물은 F01규정에 의거 처리함 - 수입된 비식품첨가물이 아닌 식품원료는 F01규정에 의거 처리함 - 식품첨가물의 샘플, 증정품에 속하는 경우 위생보리부가 발표한 「화물수입동의서신청서 (식품, 첨가물 샘플)」을 첨부함 - 수입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용도가 아닌 것은 수입신고서에 DH999999999508 기입하여 상술 규정을 면함
511	타블렛형(알약형) 캡슐형 식물 제조품은 위생보리부에 ‘검사등록’ 허가인증을 받은 후 식품 명의로 수입(허가 서류는 수입업체 본인이 신청하고 타 업자는 사용 권한 없음) 샘플 증정품일 경우 위생사가 발부한 ‘식품(첨가물) 샘플 수입 심사 통지서’ 제출

* 출처 : 대만 관무서

7. 주요품목 수입규정

가. 신선식품

○ 사과

- 사과 관련 제품의 수입세율은 15~26%
- 신선사과는 F01(FDI에 수입 검사 실시), B01(동식물검역국 검역 실시), MWO (중국산 제품 수입 불가) 등 규정 적용함
- 한편 건조·탈수·무가당 냉동 사과는 수입 규정 F01만 해당

○ 배

- 신선 배의 수입세율은 제품별로 kg당 49NTD 또는 13~20%를 징수
- 해당 수입규정은 B01·F01·MWO 등 적용함
- 한편 기타 저장 배는 수입세율 20%에 수입 규정 F01 적용함

○ 배추

- 신선 배추의 수입세율은 20% 부과
- 수입규정은 B01·F01·MWO 등 규정을 적용함

○ 마늘

- 수입세율은 신선·건조마늘의 경우 킬로당 27NTD이며, 조제·건조마늘은 25.5%를 부과

- 수입규정 역시 신선·건조마늘은 B01·F01·MW0·114(북한산 수입 불가), 조제·건조마늘은 F01·MW0 적용함
- 고추 및 파프리카
 - 고추류·단고추류 파실의 수입세율은 20% 부과
 - 수입규정은 B01·F01 적용함
- 고등어
 - 고등어 수입세율은 수입 형태에 따라 상이함.
 - 신선 고등어는 kg당 9.3NTD 또는 30%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대서양·망치·참고등어 등 기타 냉동 고등어는 kg당 7.3NTD 또는 2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 기타 고등어류는 25~30%의 수입세율 적용해 부과
 - 수입규정은 고등어 형태별로 상이하며, F01·MW0 해당
- 석반어 먹이용 어류
 -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2013.5.16.일부터 양식업 지원을 위해 미끼용 고등어 및 전갱이에 대한 단독 CCC코드를 제정하고 관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
 - 현행 12%~50%에서 인하여 일괄 6%로 인하
 - 수입업체나 양식업자는 어업서의 자격심사를 거쳐 관세율인하동의서 및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 기업은 자격증 소지 업체를 통해 수출 시 인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대만 사료용 어류 수입규정 및 관세율〉

CCC코드	품 목	관세율	인하시	수입규정
03035400107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7.3NTD/kg 또는 25%	6%	442 MW0
03038984203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 전갱이	50%	6%	
03038985104	석반어 사료용, 기타 냉동 고등어류	30%	6%	
05119199102	석반어 사료용, 냉동 고등어 및 냉동 전갱이 (대서양 죽협어·병치매가리는 제외)	12%	6%	442

* 출처 : 대만 관무서

- 김
 - 김의 수입세율은 제품 형태별로 10~25% 부과
 - 수입규정은 건조·냉동 김은 F01, 구이·조미 김은 F01·MW0 적용

○ 버섯

- 건조 표고버섯의 수입세율은 킬로그램 당 369NTD이며, 기타 건조 양송이 · 이카리쿠스 · 목이류 · 백목이 · 풀버섯 · 송로 등 버섯은 30%, 신선 · 냉장 버섯은 24% 부과
- 버섯의 수입규정은 해당 형태별로 상이하며, B01 · F01 · MW0 적용

〈대만 주요 신선식품 수입규정 및 관세율〉

품 목	세부품목	CCC코드	관세율(%)	수입규정
사과	신선 사과	08081000002	20	B01, F01, MW0
	건조 및 탈수 사과	08133000001	26	F01
	무기당 냉동 사과	08119031003	15	F01
배	기타 신선한 배	08083090009	49NTD/kg	B01, F01, MW0
	제808309000호의 기타 신선한 배	98180000004	18	B01, F01, MW0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0084000000	20	F01
배추	신선한 배추 및 냉장 배추	07049010008	20	B01, F01, MW0
마늘	기타 마늘(신선 · 냉장된 것)	07032090007	27NTD/kg	B01, F01, MW0, 114
	건조마늘(전체 · 절개 · 분말 · 다진 마늘 포함)	07129040002	27NTD/kg	B01, F01, MW0, 114
	식초 ·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마늘	20019011101	25,5	F01, MW0
	식초 ·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마늘 · 캔	20019011904	25,5	F01, MW0
파프리카	고추류 및 단고추류의 과실(신선 또는 냉장)	07096000001	20	B01, F01
고등어	고등어(신선 · 냉장된 것)	03024400003	9,3NTD/kg 또는 30% 중 높은 세율 적용	F01, MW0
	기타 고등어(신선 · 냉장된 것)	03028985007	30	F01, MW0
	염장 고등어	03056940002	30	F01, MW0
	조제 ·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냉동된 것	16041510009	30	F01, MW0

품 목	세부품목	CCC코드	관세율(%)	수입규정
	조제 ·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캔	16041590100	30	F01, MW0
	기타 냉동 고등어(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03035400900	25	F01
	건조 염장 혹은 침장 고등어 절편(단, 훈제되지 않음)	16041510009	7.3NTD/kg 또는 25%, 높은 세율 적용	F01, MW0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간 것 제외), 캔	16041590100	30	F01, MW0
	기타 조제 또는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또는 조각(간 것 제외)	16041590903	25	F01
김	건조 김(신선 · 냉장된 것)	12122121208	10	F01
	냉동 김	12122122001	15	F01
	구이 · 조미된 김	20089950009	25	F01, MW0
버섯	건조한 표고버섯	07123920000	369NTD/kg	F01, MW0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신선 · 냉장된 것)	07095190003	24	B01, F01, MW0
	송로(신선 · 냉장된 것)	07095930008	24	B01, F01, MW0
	표고(신선 · 냉장된 것)	07095910002	24	B01, F01, MW0
	풀 버섯(신선 · 냉장된 것)	07095920000	24	B01, F01, MW0
	새송이(신선 · 냉장된 것)	07095990103	24	B01, F01, MW0
	기타 식용버섯(신선 · 냉장된 것)	07095990906	24	B01, F01, MW0
	건조한 양송이	07123110000	30	F01
	건조한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07123190003	30	F01
	건조한 목이류	07123200001	30	F01, MW0
	건조한 백목이	07123300000	30	F01
	건조한 풀버섯	07123910002	30	F01
	양송이(신선하거나 또는 냉장된 것)	07095110000	24	B01, F01, MW0
	기타 건조한 버섯류 및 건조한 송로	07123990005	30	F01

* 출처 : 대만 관무서

나. 가공식품

○ 라면

- 라면 수입세율은 고기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 부과
- 수입규정은 2가지 항목으로 F01(식품약품관리서에서 검역 실시) 및 MW0(중국 지역 물품 수입금지)에 부합해야 함

○ 과자류

- 과자류의 수입세율은 제품 형태에 따라 5~25% 적용
- 수입규정은 동일하게 F01·MW0 실시

○ 인삼

- 한국의 인삼 관련 對대만 주요 수출 품목은 (6가지 항목¹²⁾으로, 수입세율은 제품 형태에 따라 1.5~30% 적용
- 수입규정은 502·B01·H01·F01·F02·MP1·511 등 적용

○ 김치

- 김치의 수입세율은 25% 부과
- 수입규정은 2가지 항목으로 F01(식품약품관리서에서 검역 실시)·MP1(중국산 조건별 수입)임
-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제무역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삼계탕

- 삼계탕의 수입세율은 제품 형태에 따라 10~20% 부과
- 수입규정 역시 다양하며, 제품별로 B01·F01·MW0 등 항목에 부합해야 함

○ 유제품

- 유제품의 수입세율은 제품에 따라 5~26%로 상이
- 수입규정 역시 제품형태마다 다양하며 제품별로 501(FDI의 동의문서에 부합)·F01·MW0(중국산 수입 불가)·MP1(중국산 조건별 수입) 항목에 부합해야 함

○ 주류

- 주류의 수입세율은 제품 형태에 따라 0~40%까지 상이
- 재정부의 수입주류검사방법(進口酒類查驗辦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신청
- 한편 통관 시 재정부가 허가한 주류수입업체의 허가증(복사본) 및 재정부의 수입 동의문서를 제출해야 함

12) 고려인삼·홍삼의 뿌리 및 분말100%, 기타 인삼뿌리, 수삼, 인삼·홍삼 농축액, 인삼 캔디류, 홍삼·인삼 절편 및 정과, 홍삼·인삼차, 홍삼톤 등 인삼·홍삼 음료나 홍삼액, 홍삼 캡슐·정환·타블렛

〈대만 주요 가공식품의 수입규정 및 관세율〉

품목	세부품목	CCC코드	관세율(%)	수입규정
인스턴트면류	고기 포함	19023010107	20.0	F01, MWO
	고기 불포함	19023010205		
과자류	생강 과자 및 그와 비슷한 과자류	19052000000	21.0	F01, MWO
	단맛 과자류	19053100007	25.0	
	와플 및 얇은 과자류	19053200006	17.5	
	영유아 전용 과자류	19059030009	5.0	
인삼류	고려인삼·홍삼의 뿌리 및 분말 100%	12112020005	1.5	502, B01, H01
	기타 인삼뿌리	12112090000	5.0	
	수삼	12119091914	—	B01, F02
	인삼·홍삼 농축액	13021990003	5.0	F01
	인삼 캔디류	17049000909	27.5	MP1, F01
	홍삼·인삼 절편, 정과	20089991901	20.0	MP1, F01
	홍삼·인삼차	21069099903	30.0	MP1, F01
	홍삼톤, 인삼·홍삼 음료, 홍삼액	22029990309	10.0	F01
	홍삼 캡슐, 홍삼정환, 홍삼타블렛	21069099208	30.0	F01, 511
김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 채소 (냉동하지 않았으며, 제2006호 물품 제외)	20059990996	25.0	B01, F01, MP1
삼계탕	기타 조제·저장 처리된 닭고기, 캔	16023220204	20.0	F01, MW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16023220909	20.0	B01, F01, MW0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육류 20% 이하)	21041011006	10.0	B01, F01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조제품 (육류 20% 이하)	21041019008	10.0	F01
유제품	영·유아분유 및 영아 액체 유제품	19011000104	5.0	501, F01
	기타 여아 조제품	19011000907	5.0	F01
	조제분유, 5파운드 이하 포장 유제품	19019021004	12.0	F01
	기타조제분유	19019022003	12.0	F01
	조제 액체 유제품, 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함유	19019025000	15.6NTD/ kg	F01, MW0

품목	세부품목	CCC코드	관세율(%)	수입규정
	조제 액체 유제품, 무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미함유	19019026009	26.0	F01, MW0
	조제유	19019027008	15.6NTD/kg	F01, MW0
	기타 유제품	19019029006	25.0	F01, MP1
	우유기초로 한 아이스크림용 혼합료	19019030003	5.0	F01, MW0
주류	맥주, 기타맥아양조주	22030000001	0	463, W01
	기타 포도주, 2리터 이하 용기포장	22042100005	10.0	463, MW0, W01
	곡류주	22060010006	40.0	463, MW0, W01
	과일주	22060020004	20.0	463, MW0, W01
	미주 또는 미주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액화·당화·발효 증류 등으로 제작한 증류주	22089090115	40.0	463, MW0, W01
	기타 곡류주	22089090197	40.0	
	기타 과일주	22089090204	40.0	463, MW0, W01

* 출처 : 대만 관무서

8. 최근 이슈

가. 통관 관련 규정 개정안 실시

○ 관세법 개정

- 관세법(關稅法) 일부 조항 개정안이 2018.4.13.일 입법원(국회 격)에서 통과해 2018년 5월 11일부터 전면 적용
- 주요내용은 17조 조항 삭제(세관밀수조례 관련 사항 해당조례로 변경), 84조 2항 신설(누락신고 부분 자진 신고시 처분 감경), 96조 수정(수입금지품목의 대만 내 물품 처분기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 등임
- 이는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독려하고 국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우리 기업은 대만 측 위탁 판매기업과 원활한 소통으로 수출 진행 시 해당 조항을 참고해 통관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밀수행위규정 강화 및 관련 용어 변경

- 위 관세법과 같이 세관밀수조례(海關緝私條例) 일부조항을 개정, 2018.5.11부터 전면 적용
- 향후 밀수품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교토협약 등 국제적인 추세에 따를 목적
- 화폐단위 통일(기존 원(元)에서 신타이완달러(NTD)의 3배로 수정, 용어 수정 (선장·船長에서 주관인·管領人으로 변경), 일부 규정 삭제(벌금형 범위 조정), 자진신고 유도(기존 행정처분 감경), 국세부담 완화(화물물수처리비용의 처분자 부담) 등 개정

나. 국제무역협정 체결 현황

○ 국제무대에서 좁아진 입지

- 대만은 2018년 총 9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모두 발효한 상황
- 무역협정체결국은 중미 5개국(파나마·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중국(ECFA), 뉴질랜드(ANZTEC), 싱가포르(ASTEPA), 파라과이(ECA)임
- 차이잉원 정부 출범이후 중국과 관계 악화로 최근 2년간 서아프리카 수교국인 상투메프린시페·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부르키나파소·엘살바도르 등 5개국과 단교하는 등 외교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
- * 현재 수교국은 16개국(바티칸,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티, 에스와티니, 파라과이)으로 상당수가 중미·카리브 지역
- 이에 따라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시장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
- * 차이잉원 정부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으로 아세안 10국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과 인적교류·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 한편 한국과는 민간교류 확대(항공증편 논의)·조세 협력(이중과세방지 조세 협약 추진)·주식시장 협력(상장지수펀드(ETF) 교차 상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일반식품 및 중약재 검역 관련 상위기관은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이며, 주무기관은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¹³⁾
 - FDA는 대만 내 식 · 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 감독함
 - 동식물 검역 관련 상위기관은 행정원(行政院)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이며, 주무기관은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이하 BAPHIQ)¹⁴⁾
 - 수입식품 가운데 동 ·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검역이 필요한 화물에 한해 행정원(行政院)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산하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검역 · 방역 실시
- 검역기관
 - 수입 농식품(채소 · 과일 · 육류 · 수산물 · 혼제농수산물)의 내용 · 규격 · 라벨링 등 사항은 국가 검역기관인 표준검역국(標準檢驗局,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이하 BSMI)¹⁵⁾에서 국가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
 - 검역이 필요한 중약재에 한해 FDA내 중의약사(中醫藥司)에서 서면 검사 또는 정밀 검역 실시

〈대만 농식품 검역 관련 정부기관〉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經濟部標準檢驗局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M.O.E.A.R.O.C.



行政院農業委員會
動植物防疫檢疫局



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13) www.fda.gov.tw

14) www.baphiq.gov.tw

15) www.bsmi.gov.tw

나. 법률체계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대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위생·안전·품질관리법
 - 식품과 식품 재료를 모두 포함해 적용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내 검역관련 조항은 제7장(37~43조) 해당
- 기타 시행규정
 - 식품및관련제품수입검역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2. 검역(검사)범위

가. 검역대상

- 對대만 수입 식품·식품첨가제·식품조리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재·식품용세정제
- 동·식물 포함 식품

〈대만 검역 진행 모습〉



*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FDA)

나. 검역방식

- 현장검사
 - 문서검사, 일반검사, 강화검사 등 3가지 방식 실시

문서검사	검사 불필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식품기본 자료표 등 제출 문서를 중심으로 위생증명·검역증·성분·라벨링 등 사항 종합 검토
일반검사	수입제품 가운데 수입량의 2~10%를 대상으로 샘플을 채취해 검역
강화검사	수입제품의 20~50%를 샘플로 채취해 현장서 검역 실시

○ 실험실검사

- 대상제품 : 현장검사 외에 별도 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입제품
- 일반검사, 강화검사, 전수검사를 실험실에서 실시

일반검사	수입량의 2~10%를 대상으로 샘플을 선정해 검사 실시
강화검사	수입량의 20~50%를 샘플로 선정해 실험실내 검사 실시
전수검사	수입업체나 수입대리인이 물품의 항구도착 전 15일 이내 수입항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 물품 도착 후 현장검사를 실시 한 후 표본을 채취해 지정 실험실에서 별도 검사 실시

3. 검역(검사)절차

가. 수입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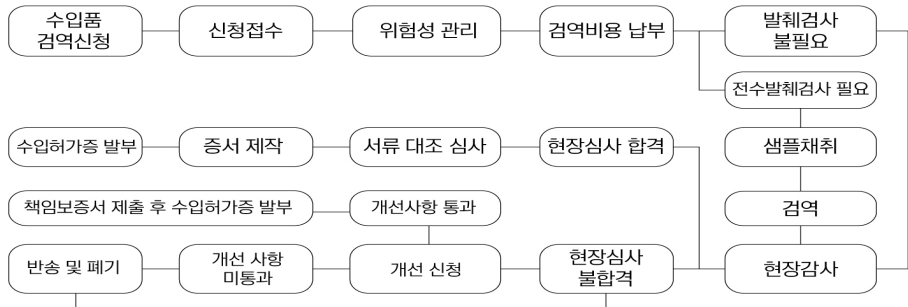
○ 검역절차

- 수입업체·대리인이 물품의 항구 도착 전 15일내 수입항 소재 담당기관에 검역 신청
- 세관은 통관신청 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실시, 발체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발체검사 요구
- 발체검사 면제 제품은 외관 및 라벨링을 심사 한 후 수입허가증 발부
- 외관 및 라벨링 심사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내용보충을 요청

○ 재검사시 유의사항

- 식품 약물 관리서는 신청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 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사를 요청
- 개선요청 당일부터 15일 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1회로 제한
- 재검사는 전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정밀검사 실시

〈대만 수입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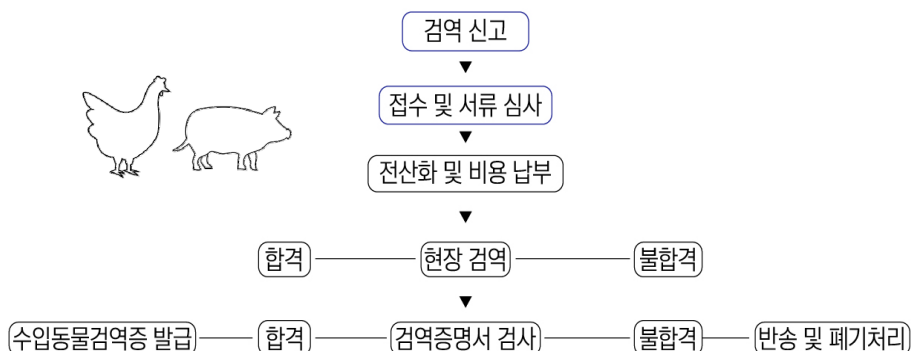
*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FDA)

나. 동·식물

○ 수입 동물 검역절차

- 제품의 항구 도착 후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이 지정한 도착 항구·역·검역소에서 진행
- 수입업체·대리인은 담당기관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검역 신청
- 동물 관련 식품검역은 검역 신고 후 접수, 서류 심사, 비용납부, 현장 검역 실시 후 검역증명서 검사 순으로 진행

〈대만 수입 동물 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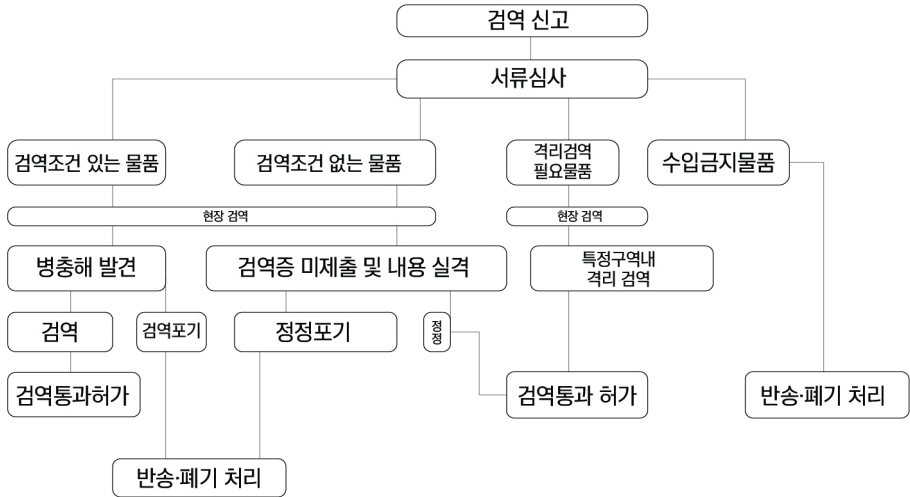


* 출처 : 동식물방역검역국

○ 수입 식물 검역절차

- 제품의 항구 도착 후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이 지정한 도착 항구·역·검역소에서 진행
- 수입업체·대리인은 담당기관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검역 신청
- 식물 관련 식품검역은 검역 신고 후 서류 심사를 거쳐 1. 검역조건 있는 물품, 2. 특별검역 조건이 없는 제품, 3. 격리검역 필요제품, 4. 수입금지제품으로 분류
-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1. 병충해 발견 시 재검역 실시 후 통과, 검역포기 시 반송·폐기, 2. 검역증 미제출 또는 검역증 내용 실격 시 정정을 거쳐 검역통과, 3. 격리검역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 특정 구역 내 격리검역 후 보충서류 필요시 요청하며 합격제품은 통과

〈대만 수입 식물 검역 절차〉



* 출처 : 동식물방역검역국

○ 유의사항

- 검역 불합격 제품은 시장 방출이 불가능해 반송·폐기 처리
- 검역 완료 후 시장 방출 후 역병충해 발견될 경우 수입 금지 및 처벌
- 신고대상 검역물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승무원 역시 검역 신청 필요

4. 검역비용

가. 가공식품

○ 비용 책정 기준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역 비용수납기준(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規費收費標準)
- 검역비용은 조사비, 현장검사비, 연장작업비, 통지서 발급비, 온라인 전송 자료 수정비, 검험비로 분류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 밀·보리·옥수수·대두 조사비는 수입품 CIF가격의 0.05%
- 식품·식품첨가물·식품조리기구·식품용기·식품포장재·식품용 세정제의 조사비는 수입품 CIF가격의 0.15%

- 최소 검사비는 300NTD이며 조사비가 10만NTD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검사비
 - 1인이 1개 장소를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500NTD.
 - 정규근무시간 외 공휴일 작업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연장작업비
 -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 외 시간 작업 시 작업자 1인당 400NTD
 - 휴일 6시부터 22시까지 작업자 1인당 1,000NTD
 - 야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작업시 1인당 2,000NTD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재발급·수정발급·추가발급 등 제반비용 포함 1부당 100NTD 정수
- 온라인 전송자료 수정비
 - 수정 내용 변경 등재 및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허가 통지서 1통 발급비용, 1건당 100NTD
- 검역비
 - 검사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항목비·재검사·배치별 검험비용
 - 검사항목에 따라 1,400~50,000NTD로 다양하게 책정
 - 일반 검험비(외관·평균중량·중량차이·분해·산도)는 2,300NTD, 감별비 3,800NTD, 순도측정비 4,900NTD, 함량측정비 15,100NTD 등임.

나. 동·식물

- 비용책정기준
 - 동식물검역수수료비용실시방법(動植物檢疫規費收費實施辦法)에 따름
 - 검역비용은 검역비·작업비·공임비를 포함
- 검사비
 - 수입인·대리인이 검역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
- 작업비
 - 동물계류비 : 소·말·당나귀·노새·돼지 등 1일당 30 NTD/1마리, 양·사슴·개 1일당 20 NTD/1마리, 고양이·토끼·가축·조류 1일당 5 NTD/1마리, 출생 2주내 가축은 1일당 1 NTD/1마리

- 동물시체분해(焚燬)비 : 격리 중 동물 사망 했을 시 납부, 가축 종류별로 마리당 5~1,000 NTD 정수
- 연장 작업 공임비
 -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 작업 시 작업자 1인당 200NTD
 - 휴일 6시부터 22시까지 작업자 1인당 1,000NTD
 - 야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작업 시 1인당 2,000NTD
- 표시작업 공임비
 - 일반검역표시 : 건당 1장, 매장 0.2 NTD
 - 컨테이너용검역표시 : 컨테이너당 1장, 매장 80 NTD
 - 기타 포장용검역표시 : 매 단위 1장, 매장 40 NTD

5. 검역 시 제출서류

가. 수입식품

- 수입검역신청서
 - 검사신청의무인은 식품약품관리서가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신청
- 수입식품 기본자료
- 수입신고서 사본
- 기타 요청 자료

나. 동·식물

	동물검역	식물검역
	동물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필요서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사본	
	기타 영수증, 포장명세서 등 요청자료	

* 양식샘플은 책자인쇄 시, 파일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화질

6. 주요품목별 검역제도

가. 농산물

○ 농약잔류허용량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 (별첨 1) 내 세부내역 참고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항¹⁶⁾
- 축·수산물을 제외한 식품은 잔류농약허용기준의 기준치에 부합해야 함
- 2018년 9월 최신개정을 거쳐 현재 6,682개 항목에 대해 실시
- 1. 농약잔류허용량기준표, 2. 외인성농약잔류허용량기준표, 3. 면제허용농약일람표, 4. 사용금지농약일람표, 5. 농약잔류허용량기준표 중 농작물류농산품의분류표 등 세부기준 제정

〈대만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농약명칭(국제통용명칭)	식품명	잔류허용량(ppm)	농약종류
1-methylcyclopropene	감	0.01	성장촉진제
1-methylcyclopropene	배	0.01	성장촉진제
1-methylcyclopropene	사과	0.01	성장촉진제
2,4-D	사탕수수류	0.05	살초제
2,4-D	자두	0.05	살초제
...	...	...	

* 출처 : FDA

○ 야채·과일식물류중금속제한기준(蔬果植物類重金屬限量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¹⁷⁾
- 채소·과일·허브류 등 식품의 잔류 중금속(카드뮴·납) 함량은 해당 규정 내 기준치 이하여야 함

16) 관련조항 :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17) 관련 조항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93>

〈대만 야채·과일식물류 내 중금속 함량 제한 기준〉¹⁸⁾

(단위 : ppm)

농산물 분류	카드뮴	납
엽채류	0,2	0,3
브라시카 채소류	0,05	0,3
뿌리채소류	0,1	0,1
인경채류	0,05	0,1
줄기채소	0,1	—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0,1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1	0,2
대두 및 땅콩	0,2	—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0,2
감귤류	0,05	0,1
사과 및 배류	0,05	0,1
견과류	0,05	0,1
메론류	0,05	0,1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허브 및 향신료	0,2	0,3
버섯류	3,0	2,0
쌀*	0,4	0,2

* 쌀은 수은 역시 0,05ppm 이하여야 함

* 출처 : FDA

○ 수입식물및식품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 근거법규 : 식물방역검역법(植物防疫檢疫法) 제14조 1항 1조항¹⁹⁾

- 한국의 정부검역기관에서 규정 내 제품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대만에서 수입이 가능함

18) 2016년 2월 개정 버전

19) 관련 조항 : <https://law.coa.gov.tw/glrnewsout/LawContent.aspx?id=GL000134>

- 해당 규정은 1999년 최초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폴란드산 사과 수입검역 조건을 제정하며 매년 개정 중
- 1. 수입금지 식물 및 제품, 2. 조건별 수입가능 식물 및 제품 등 2개 부분으로 구성
- 수입금지 식물 및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2개 분야에 해당

〈대만 한국 관련 수입금지 식물 및 제품〉

식물명칭 및 부분	국가명	금지원인(병충해명칭)
아래 식물의 과실 - Aronia arbutifolia - Chaenomeles japonica - Chaenomeles speciosa - Cornus mas - Crataegus spp. - Cydonia oblonga - Malus spp. - Phoenix dactylifera - Prunus americana - Prunus armeniaca - Prunus domestica - Prunus dulcis=P. amygdalus - Prunus mume - Prunus persica - Prunus salicina - Pyrus spp. - Rosa spp. - Sorbus aucuparia - Sorbus commixta - Ziziphus jujuba	아시아태평양지역 - 중국 - 일본 - 북한 - 한국 - 러시아	Carposina sasakii Matsumura= Carposina niponensis Walsingham
아래 식물의 전부 혹은 부분(꽃·과실·종자·직경3cm<포함> 이하의 줄기 및 나무줄기 최대 직경 3cm<포함> 이하의 종묘 외) - Acer spp. - Aesculus spp. - Alnus spp. - Betula spp. - Citrus spp. - Elaeagnus angustifolia - Fraxinus spp. - Hibiscus spp.	아시아 - 중국 - 북한 - 한국 - 유럽 - 오스트리아 - 미국 - 캐나다	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Asian longhorned beetle,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식물명칭 및 부분	국가명	금지원인(병충해명칭)
- Liriodendron tulipifera - Malus spp. - Melia spp. - Morus spp. - Paulownia fortunei - Platanus spp. - Populus spp. - Prunus spp. - Pyrus spp. - Robinia spp. - Rosa spp. - Salix spp. - Sophora spp. - Ulmus spp.		

* 출처 : FDA

- 신선과일 및 채소의 경우 검역 필수 병충해 포함 여부를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

과일·채소명	검역필수 병충해	비고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
사과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을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Frakliniella occidentalis	
배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Ditylenchus dipsaci(Kuhn)Filipjev)	
복숭아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딸기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
	Ditylenchus dipsaci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
참외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과일·채소명	검역필수 병충해	비고
포도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레몬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
	Unaspis yanonesis	-
밀감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
	Arrow head scale	-
	Unaspis yanonesis	-
감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석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
인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옥수수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
호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Ditylenchus destructor Thorne	-
시금치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당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잎이 달린 경우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브로콜리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과일·채소명	검역필수 병충해	비고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파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
마늘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양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고추류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가지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Potato late blight A2 type ; 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사탕무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
아스파라거스	Frakliniella occidentalis	-

주) 주요 병충해의 한국 명칭은 서양꽃삽주벌레(Frakliniella occidental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줄기선충(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화살깍지벌레(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임

* 출처 : 동식물방역검역국(BAPHIQ)

나. 축산물

- 동물용의약품잔류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항²⁰⁾
 - 동물용 의약품은 표기에 사용한 마커를 포함하여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 의약품(marker residue)과 의약품의 대사 검사
 - 동물용의약품잔류 안전량 기준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제정
 - 의약품 잔류량 안전기준 위반 시 제조·가공 등 제한
 - 2018년 11월 현재 총 462개 기준 마련해 실시 중

다. 가공식품

- 일반식품 위생기준(一般食品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항·17조²¹⁾
 - 품목별 특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위한 위생기준
 - 식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변색·악취·이취·오염·곰팡이·기생충 등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을 명기
 - 준비처리 없이 제공하는 일반식품의 경우 대장균·병원성 대장균수에 대해 미생물 제한치를 마련
 - 2018년 5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은 1. 식용얼음·음료·포장음용수의 경우 음용수수질기준(飲用水水質標準)을 따를 것, 2. 포장음용수의 경우 브롬산염(bromate) 함량이 0.01mg/L 이하일 것, 3. 포장용 차·코코아음료는 카페인함량이 500mg/L 미만이어야 하며, 이외 포장용 음료는 카페인함량이 320mg/L 미만일 것, 4. 12개월 이하 영아 식품은 잔류농약이 0.01ppm 미만일 것 등 내용을 포함

〈대만 일반식품의 미생물 제한량〉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하는 일반식품(세정·탈피·가열·조리처리 등)	10 ³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 제공하는 일반식품(세정·탈피·가열·조리처리 등)	-	-

* 출처 : FDA

20) 관련 조항 : <https://consumer.fda.gov.tw/Law/VeterinaryDrugList.aspx?nodeID=519#>

21) 관련 조항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93>

○ 냉동식품류미생물위생기준(冷凍食品類微生物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 냉동식품 중 중금속 · 진균독소 · 기타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판매식품의 위생불량 및 제조과정상 품질관리 문제 등 오염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 포함
- 기존 냉동식품류위생기준(冷凍食品類衛生標準)에서 2018년 5월 명칭을 변경하여 공고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대만 냉동식품류 내 미생물 제한량〉

식품종류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군 (MPN/g)	대장균 (MPN/g)
냉동선어개류 (냉동식용어개류 제외)	300만 이하	—	10 이하
냉동식용어개류	10만 이하	10 이하	음성
냉동과일류	10만 이하	—	10 이하
냉동야채류	10만 이하 (즉석 식품)	—	10 이하
	300만 이하 (조리 후 섭취)	—	10 이하
기타 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	10만 이하	10 이하	음성
기타 냉동 제품 (조리필요)	10만 이하 (냉동 전 열처리 한 것)	10 이하	음성
	300만 이하 (냉동 전 열처리 하지 않은 것)	—	50 이하

* 출처 : FDA

라. 영아식품 및 유제품

○ 영아식품류미생물위생기준(嬰兒食品類微生物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²²⁾

22) 관련 조항 : <https://www.mohw.gov.tw/cp-16-41650-1.html>

- 12개월 이하 영아의 분유·시리얼·콩을 원료로한 보조식품류 관리를 위한 규정
- 영아식품류위생및잔류농약안전허용량기준(嬰兒食品類衛生及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에서 2018년 5월 명칭 변경을 공고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은 1. 일반세균수는 1g당 50,000 미만, 2. 대장균 검출불가, 3. 호르몬·항생제·방사능 물질·농약·아플라톡신 등 오염물질 혼합 금지

〈대만 영아식품 미생물 제한량〉

식품종류	표본*		제한량**		비고
	n	c	m	M	
대장균군	5	2	〈3***	10	샘플 n개 중 ≤c개 샘플의 미생물검출치는 m과 M의 사이이나, 검역치≥M는 허용치 않음
사카자키균	10	0	음성		분말형태의 영아조제식품에 한함
살모넬라	10	0	음성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10	0	음성		-

* 표본의 n은 1종류의 상품에서 채취하는 샘플 건수, c는 허가초과m수치의 최대샘플수

** 제한량의 m은 용인가능 미생물 제한치, M은 최대안전제한치

*** m수치는 〈30에 따라 대장균군 검역결과 가장 정확한수치의 표시방식

* 출처 : FDA

○ 유제품 위생기준(乳品類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 대만 내 시판 중인 우유·유제품의 위생기준
- 유제품 종류를 액상우유·분유·연유·가미액상우유·크림·버터로 분류하며, 제품 상태·산도·일반세균수·대장균수·병원성대장균수·식품첨가물 등 기준 제시

〈대만 우유 및 유제품 위생기준〉

유제품종류		상태	산도	일반세균수 (CFU/g)	대장균수 (MPN/g)	병원성 대장균수 (MPN/g)	식품 첨가물	비고
액상우유	유지방·저지방·탈지우유	부패·변색·악취·이취가 없어야 함 - 살균우유는 응고나 침전이 있으면 안 됨	0.18% 이하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첨가 불가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포도상 구균 검출 불가
	살균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영양 강화 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편유	전지·탈지·조미·조제 분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연유	무당·가당 전지·가당 탈지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가미액상우유	가미우유			50,000 이하	10 이하	음성		
	살균가미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		
크림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버터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 출처 : FDA

마. 음료 · 식수

- 음료류 미생물 위생기준(飲料類微生物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음료류위생기준(飲料類衛生標準)에서 2018년 5월 명칭 변경 공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물의 품질은 음용수수질기준(飲用水水質標準)에 부합
 - 탄산음료 · 미발균 생과일 및 야채즙 · 환원 과즙 · 야채즙(퓨레) · 발효과즙 · 야채즙 · 커피 · 코코아 · 차 · 시리얼 · 콩 포함 음료 ·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음료 등은 일반세균 · 대장균 · 병원성대장균 · 살모넬라 등 미생물 허용치를 준수해야 함

〈대만 음료류 미생물 허용치〉

음료종류	일반세균수 (cfu/mL)	대장균수 (MPN/mL)	병원성대장균수 (MPN/mL)	살모넬라
탄산음료	104 이하 (포장 시 100 이하)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음성	음성
생과일즙 · 생야채즙(미발균)	—	103 이하	10 이하	
환원과즙 · 환원야채즙 · 퓨레	104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음성	
발효 과즙 · 야채즙	—			
커피 · 코코아 · 차 · 시리얼 · 콩 등 포함 음료	104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10 이하 (포장 시 음성)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 음료	—			

* 출처 : 대만, FDA

- 포장음용수미생물위생기준(包裝飲用水及盛裝飲用水微生物衛生標準)
 - 근거법규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²³⁾
 - 기존 포장용음용수위생기준(包裝飲用水及盛裝飲用水衛生標準)에서 2018년 5월 명칭 변경을 공고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비 목적으로 포장 판매하는 식수는 대장균군 · 분원성 연쇄상 구균 · 녹농균 등 미생물을 미포함하며, 브롬산염(bromate)은 0.01ppm 이하여야 함

23) 관련 조항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00040019>

바. 주류

○ 주류위생기준(酒類衛生標準)

- 근거법규 :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제26조 1항²⁴⁾
- 메틸알코올 용량은 주류에 따라 규정(소주·맥주는 리터당 1,000mg 이하)
- 주류의 납 허용치는 리터당 0.3mg 이하
- 주류의 첨가물은 인체에 유독하거나 치명적인 것을 미포함해야 하며, 식품·음료에 사용 전례가 없거나 안전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사용을 금지

〈대만 주류내 잔류 첨가물 허용치〉

첨가물종류	내용
sorbic acid	과일발효주에서 잔류량 리터당 0.2g 이하
benzoic acid	알콜도수 18% 이하에서 잔류량 리터당 0.4g 이하
색소	주류에서 Lutein 잔류량 리터당 10mg 이하
Sulfur dioxide	과일발효주에서 잔류량 리터당 0.4g 이하, 맥주·곡물발효주서 잔류량은 리터당 0.03g 이하 기타주류에선 검출불가

* 출처 : FDA

○ 수입주류검험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

- 근거법규 : 담배주류관리법 제39조 7항²⁵⁾
- 수입주류는 해당 위생기준에 따라 검역에 부합해야 수입 가능
- 수입주류는 재정부 산하 국고서(國庫署)에서 검역 접수를 담당하고 검역은 경제부 산하 표준검험국(BSMI)이 진행
- 검사항목은 메탄올·납·이산화황 등 포함 여부
- 검사신청서류는 신청서, 세관 수입신고서(사본), 수입제품 자료표, 원산지증명서, 기타 요청 서류임
- 검사비용은 CIF가격 화물가치의 0.1%(각 배치별 적용)이며, 각 배치별 200~50,000NTD

24) 관련 조항 : <https://www.nta.gov.tw/web/ContentA/ContentA.aspx?c0=191>

25) 관련 조항 : <http://www.rootlaw.com.tw/en/LawContent.aspx?LawID= A040070040003600-1040501>

사. 중약재(한약재)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輸入檢驗作業規定)
 - 근거법규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輸入檢驗作業規定)²⁶⁾
 - 행정원 산하 위생복지부내 중의약위원회(中醫藥委員會)가 검험업무 처리, FDA가 접수, 중약재 품목분류 · 검험기준 · 검험방법 등은 중의약위원회가 제정
 - 건조 홍대추 · 황기 · 당귀 · 감초 뿌리 등 지정 항목은 샘플링 검역을 실시하나, 기타 중약재(인삼<길림인삼 · 고려인/홍삼 · 동양인/홍삼 · 기타 인삼뿌리>, 서양삼, 황달, 호황달, 방풍, 진피, 황골피, 굴피)는 포장 · 외관 · 라벨링 등 내용의 서면 심사 실시
 - 모든 중약재는 수입검험을 거쳐 수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입 가능

〈대만 중약재 수입검역 항목 및 기준〉

종류	검험항목 및 기준									이산화황 (ppm)	수입 규정
	중금속(ppm)				아플라톡신 (ppb)		농약(ppm)				
	비소	납	카드뮴	수은	총량*	아플라 톡신 B ₁	BHC	DDT	PCNB		
홍대추·굵은대추	3.0	5.0	1.0	0.2	10	5.0	0.2	0.2	—	400	H02
두충	3.0	15.0	1.0	0.2	—	—	—	—	—	150	H01
복령·방형복령· 복령껍질	5.0	5.0	1.0	0.2	—	—	—	—	—	150	H01
복신	3.0	5.0	1.0	0.2	—	—	—	—	—	150	H01
천궁·궁궁	5.0	5.0	1.0	0.2	—	—	—	—	—	400	H01
백출	5.0	5.0	1.0	0.2	—	—	—	—	—	400	H01
백작약	5.0	5.0	0.3	0.2	—	—	—	—	—	400	H01
지황	5.0	5.0	1	0.2	—	—	—	—	—	150	H01
황귀·홍귀	3.0	5.0	0.3	0.2	10	5.0	0.9	1.0	1.0	150	H01
당귀·서귀각· 소귀미·박미각편	5.0	5.0	1.0	0.2	—	—	—	—	—	400	H01

26) 관련 조항 : <http://www.rootlaw.com.tw/LawArticle.aspx?LawID=A040100121007200-1040213>

종류	검사항목 및 기준									이산화황 (ppm)	수입 규정
	중금속(ppm)				아플라톡신 (ppb)		농약(ppm)				
	비소	납	카드뮴	수은	총량*	아플라 톡신 B1	BHC	DDT	PCNB		
감초	3.0	5.0	0.3	0.2	10	5.0	0.9	1.0	1.0	150	H02
계피·실론계피의 껍질·줄기	3.0	15.0	1.0	0.2	—	—	0.2	0.2	—	150	H02
계피·실론계피의 기타부분	3.0	5.0	1.0	0.2	—	—	—	—	—	150	H01
시호	5.0	5.0	1.0	0.2	—	—	—	—	—	150	H01
황금	5.0	5.0	1.0	0.2	—	—	—	—	—	150	H01
반하	5.0	5.0	1.0	0.2	—	—	—	—	—	150	H01
우슬(회우슬)	5.0	5.0	1.0	0.2	—	—	—	—	—	400	H01
천우슬·두우슬	3.0	10	—	0.2	—	—	—	—	—	150	H01
대황	5.0	5.0	1.0	0.2	—	—	—	—	—	150	H01
인삼 (길림인삼·고려인 /홍삼·동양인/ 홍삼·기타 인삼뿌리)	3.0	5.0	1.0	0.2	—	—	0.9	1.0	1.0	150	H01
서양삼		5.0	1.0	0.2	—	—	0.9	1.0	1.0	150	H02
황달	5.0	5.0	1.0	0.2	—	—	—	—	—	150	H01
호황달	3.0	5.0	1.0	0.2	—	—	—	—	—	150	H01
방풍	5.0	5.0	1.0	0.2	10	5.0	—	—	—	150	H01
진피	3.0	10.0	1.0	0.2	10	5.0	0.2	0.2	—	150	H02
황굴피·굴피	3.0	5.0	1.0	0.2	10	5.0	—	—	—	150	H02

* 아플라톡신 총량은 B₁·B₂·G₁·G₂의 총량

** — 표기는 해당항목 검사 면제를 의미

* 출처 : FDA

7. 최근 이슈

가. 신규 규정 제정

- 식품중오염물질및독소위생기준(食品中汚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 2018년 5월 8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제정은 식품 내 중금속함량 및 기타 독소 제한을 위해 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신규 규정 마련
 - 주요내용은 오염물질 및 독소의 범위는 식품을 제조·가공·배합·포장·운송·보관·판매하는 가운데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오염물로 제한, 농약·동물용 의약품·가공조제 시 잔류·원진·방사능오염물 등 제외
 - 미생물규정을 제외하고 일반식품위생위생기준 신규 제정, 기타 규정*은 식품용수 규정, 음료중카페인함량규정, 영아식품농약잔류기준으로 재정비
 - * 일반식품위생기준, 통조림식품류위생기준, 병과류위생기준, 영아식품류위생및 잔류농약안전허용량기준, 냉동식품류위생기준, 포장음용수위생기준, 음료류 위생기준 등 7개 규정 통합
 - 한편 이번 위생기준안과 현행 규정*내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명칭 역시 변경
 - * 달걀류위생기준, 수산동물류위생기준, 식용유지류위생기준, 식품중진균독소 제한기준, 해조류식품위생기준, 신선육류위생기준, 간장류MCPD위생기준, 식용 소금위생기준, 식용기능동물내장중금속제한기준, 식용버섯중금속제한기준, 야채 식물류중금속제한기준 등 12개 규정 폐지

〈대만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위생기준〉

종류	항목
중금속	- Total Arsenic 및 Inorganic Arsenic - Lead - Cadmium - Mercury 및 Methylmercury - Tin - Copper - Antimony
진균독소	- Aflatoxins total, B1+B2+G1+G2 - Aflatoxin M1 - flatoxin B1 - Ochratoxin A - Patulin

종류	항목
	- Citrinin - Fumonisin B1+B2 - Deoxynivalenol, DON - Zearalenone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	- 3-Monochloropropane-1,2-diol, 3-MCPD - Benzo(a)pyrene, BaP - Hydrocyanic acid - Gossypol - Glycoalkaloids, total : α-solanine, α-chaconine - Erucic acid - Paralytic shellfish poisons, PSP - Diarrhetic shellfish poisons, DSP - Amnesic shellfish poisons, ASP - Azaspiracid, AZP - Neurotoxic shellfish poisons, NSP, 短裸甲藻毒 (Brevetoxin, BTX) - Volatile basic nitrogen, VBN - Histamine

* 출처 : FDA

나. 기존 규정 개정

- 농산품 및 동물제품 농약잔류허용량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수정*
 - 대만은 타국가 보다 엄격히 농산품의 잔류농약 허용여부를 관리
 - 2018년에 이미 수차례 해당 규정을 개정*
 - * 1월 9일 팔·배추류·가지·오이·망고·알류 등 품목에서 피프로닐(fipronil) 잔류 금지 공고, 1월 16일 농약 29종 및 제한 품목 추가, 6.27일 엔도설판(Endosulfan) 및 피프로닐(Fipronil)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수정, 7월 디코폴(DICOFUL) 포함 11종 농약 사용금지 및 25%아세페이트 유제(乳劑) 등 6종 농약사용·범위 수정
 - 현재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대만 수출 시 해당규정이 큰 장애로 작용
 - 대만 수입 통관 검역 시 농약잔류허용량기준 초과 및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모두 반송·폐기 처리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식품첨가물사용범위·제한량·규격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식품첨가물 역시 엄격히 사용범위 및 제한량 기준을 마련해 실시 중으로 2018년 역시 여러 차례 해당 규정을 개정*함

- * 1월 황로바유(Ferrous sulfate dried) · 락툴로오스(Lactulose) · 구연산(citricacid)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규격 수정, 3월 아황산염 · 이산화유황 등 8종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규격 수정 예고, 11월 식품첨가물 11개(Sodium Lactate, Sodium Lactate Solution, Sodium Phosphate, Dibasic, Sodium Phosphate, Monobasic(Anhydrous), Sodium Alginate, Monosodium Fumarate, Cochineal Red A (New Coccin, Calcium Chloride, Anhydrous, Calcium Chloride Hexahydrate, Glycerin Fatty Acid Ester(Mono-and Diglycerides), Sodium Hydrosulfite) 사용 제한량 개정
- 현재 규정상 식품첨가물 791종에 대해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규정 마련 실시
- FDA에 따르면 대만은 국제규격의 변화추세에 맞춰 규정을 개정한다고 전함
- 특히 3월 개정안의 경우 이산화황 등 식품첨가물 8종을 절임채소 및 발효 채소 내 사용을 허용
- 이는 향후 한국산 절임식품(김치 젓갈 등) 對대만 수출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²⁷⁾

다. 일본 후쿠시마 식품 수입 금지 논란

○ 주민투표 실시

- 지난 11.24일 지방선거와 함께 10개의 대국민질문을 상정해 찬반투표 실시
- 이 결과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 안건은 찬성(779만장)이 반대(223만장)보다 다수였으며, 찬성 유효표(39.4%)가 전체투표인원의 25%을 초과해 수입금지 규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됨*
- * 주민투표법 규정상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거나 유효찬성표가 총투표인원의 1/4 이상이어야 함

○ 투표실시 배경

-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 부근 5개현(후쿠시마, 지바, 도치기, 도치, 이바라키) 내 생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실시해 옴
- 2011.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대만은 해당지역 식품의 수입을 금지
- 또한 2015.4월 ‘일본 특정지역 수입식품의 방사능검사증명서제출 및 수입검사 신청 규정’ 및 ‘일본 수입식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 수입검사 신청 규정’ 등을 제정해 규제 실시

27)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

- 한편 5개현을 제외한 기타 일본산 수입식품은 대만이 허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라벨링 상 일본 지역명(都・道・府・縣)을 상세히 표기토록 함
- 결과반응 및 전망
 -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누마타 미키오(沼田幹夫) 일본대만교류협회장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향후 대만인이 일본식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대만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는 반응
 - 이번 국민투표는 대만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결코 소비자의 의견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우리나라 식품의 대만 진출 시 건강한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라벨링 관련 상위기관은 위생복지부이며, 주무기관은 FDA
 - 시행기관은 각 직할시(直轄市)·현(縣)에서 시행
 - 수입식품은 통관 검역 시 시행하며 BSMI이 실시

나. 법률체계

- 기본법령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에 따라 시행
 - 라벨링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장 식품라벨링및광고관리(22~25조)에 명기
 - 시행규칙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실행세칙(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에 따름
- 식품 유형별로 관련 규정을 제정
 - 시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標示規範),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포장식품영양표기공인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식품알레르기원표시(品過敏原標示之建議標示事項) 등

2. 식품 라벨링 기준

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용어정의
 - 식품 : 사람에게 음식 및 씹는 용도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원료
 - 특수영양식품 : 영아 및 유아의 분유 및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서 허가한 특수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 식품첨가물 : 착색제, 조미료, 방부제, 표백제, 유화제, 향료, 품질개량용, 양조용, 식품제조용제, 영양강화제, 향산화, 기타 불가피한 목적에 의해 식품에 첨가·접촉하는 물질
 - 식품도구 : 식품·식품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용기·포장제품
 - 식품용기·포장 : 식품·식품첨가물이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물

- 식품용 세정제 : 소독 및 세정제품, 식품기구, 식품 용기·포장제품
- 식품업자 : 식품·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식품기구, 식품용기의 포장, 세척제 제조, 가공, 수입, 수출 혹은 판매업자를 의미
- 표기(라벨링)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식품기구, 식품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품명 및 설명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의 설명서
- 영양표기 : 식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 영양소
- 검사(검험) : 실사 및 검역
- 유전자 조작 : 유전자 공학·분자생물기술 사용한 것. 유전자 이식·이식 세포, 생물체의 유전자 재배합 현상. 전통적인 발육 방식 및 원생물체의 융합, 잡교, 체외수정, 체세포변이, 염색체 증가 기술 등은 미포함
-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 용기·포장식품은 고정 밀봉된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
 - 고정 밀봉 포장은 미개봉 포장식품으로, 이미 개봉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로 표기·관리
- 위반기준
 - 변질·부패 식품
 - 미숙성·인체 건강 위해 식품
 - 유독성·인체 건강 물질 발견 식품(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육류 등 포함)
 - 전염병 감염 생물·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잔류농약·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 방사선 오염 물질이나 방사선 오염 물질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 위조 식품
 - 유효기한이 지난 식품
 -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 미인증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

3.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구 분	필수 / 선택	샘플 사진
제품명	필수	
성분	필수	
식품용량 및 수량	필수	
제조일자	필수	
원산지	일부 유형 선택	
보존기한	필수	

나. 용어정의 및 표기방식

○ 제품명

- 식품 원료성분·원료품종·식용부위·생산지·속어 등을 이용해 명기
- 예를 들어 육포(牛肉乾)가 식품 원료(소고기)를 함유했을 경우 육포로 명명
- 일본 와규(和牛)라고 표기할 경우 혈통 및 사육 방식이 다른 국가 품종의 소와 달라 맛과 육질이 독특함을 나타냄. 수입업자는 품종·원산지 증명을 구비해 제공
- 식용 부위인 항정살(松阪豬)은 돼지고기 경부의 통칭으로 제품명에 사용 가능
- 대만 광둥(屏東)에서 생산하는 돼지족발인 완란돼지족발(萬巒豬腳)은 특수 가공법으로 제조해 ‘완란돼지족발(萬巒豬腳)’으로 명기가 가능
- 속어에 의해 품명이 명명되어 소비자가 이미 해당 식품에 원료가 함유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제 간 통용어가 중문으로 직역된 품명일 경우 제품명에 사용이 가능함. 초콜릿(巧克力), 핫도그(熱狗) 등 국제통용 명칭을 중문으로 직역해 명명
- 품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공급자가 제공한 영문 표기를 사용하며, 의료 효능이 있는 상품이나 공급자가 영문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

○ 성분 및 중량·용량·수량·내용량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중량·용량·수량을 명기
- 액체가 고형물과 함께 든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고형량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내용물의 중량만 표기해도 무방함
- 예를 들어 딸기잼의 경우 중량 200g·고형량 120g으로 표기

- 미터법*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 * 미터(m), 킬로그램(kg) 등을 기본으로 한 십진법의 국제적인 도량형단위계
- 내용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작성
- 표기 가능한 내용물의 명칭은 식용기능원료어휘정리일람(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 규칙을 참고해 작성
- 주성분과 부성분(副成分) 등 성분을 나눠 작성치 않으며 고함량 성분부터 차례대로 명기
- 식품첨가물명은 식품첨가물사용범위및제한규격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따라 사회에서 통용하는 명칭을 사용
- 원산지(국)
 - 수입제품원산지인정기준(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에 따라 제조·가공·배합 등 방식으로 완제품을 제조한 국가·지역을 작성
 - 2개 국가 이상의 제품을 혼합해 포장했을 경우 제품의 함량이 많은 국가명 순으로 명기
 - 수입산 원료이나 대만에서 재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는 대만으로 명시
 - 식품 제조사 주소에 원산지(국)를 명기했을 경우 원산지 표기 생략 가능
- 유효기간
 - 용기나 포장 상단에 인쇄
 - 작성방법은 년·월·일을 포함해 자유롭게 작성
 - 액체 상태의 유제품은 보존기간과 보존조건을 모두 표기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대만의 민국(民國)표기 표기와 양력(西元)을 구분해 표기
- 제조사명·주소·연락처 및 수입사 정보
 - 제조·가공·분류·위탁판매를 최종으로 담당한 기업을 의미하며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신고한 내용(제조업자·수입사 등) 및 서류를 바탕으로 명확히 명기
 - 수입식품의 경우 대만 내 수입 위탁기업의 정보를 명기해야 함.
 - 기입해야 하는 정보는 기업명·전화번호·주소
- 영양 라벨링
 - 식품의 영양표기는 반드시 포장 외부 눈에 잘 띄는 곳 명기
 - 반드시 중문(번체자)으로 표기해야 하며 예시와 배열순서도 동일해야 함.
 - 명기 항목은 '영양표기(營養標示)' 문구, 열량, 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탄수화물·당·나트륨·기타 영양소 함량, 업자가 표기하기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등을 포함

〈대만 영양라벨링 표기 예시〉

영 양 표 기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0g(또는ml)			매 1인분량 0g(또는ml)		
본 포장 0인분 포장			본 포장 0인분 포장		
	매분량	매 100g 당 (매 100ml 당)		매분량	일일섭취량 비율
열량	Kcal	Kcal	열량	Kcal	%
단백질	g	g	단백질	g	%
지방	g	g	지방	g	%
포화지방	g	g	포화지방	g	%
불포화지방	g	g	불포화지방	g	*
탄수화물	g	g	탄수화물	g	%
당	g	g	당	g	*
나트륨	mg	mg	나트륨	mg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 표면적 100평방미터 내의 포장식품에 한해 적용

* 영양표기단위

- 매 1인분 0g(또는 ml), 본 포장 0인분 포함
- 매 분량(매 100g 또는 매 100ml 당) : 열량 0 kcal (0kcal), 단백질 0g(0g), 지방 0g(0g), 포화지방 0g(0g), 불포화지방 0g(0g), 탄수화합물 0g(0g), 당 0g(0g), 나트륨 0ml(0ml), 권장영양소(0g, mg 또는 ug), 기타 영양소 함량(0g, mg 또는 ug)

* 수치 미확정

- 1일 권장량 기준 : 열량 2000Kcal, 단백질 60g, 지방 60g, 포화지방 18g, 탄수화물 300g, 나트륨 2000mg, 권장 영양소 기준치, 기타 영양소 1일 기준량

* 출처 : FDA

○ 벌크 형태의 신선 농산품의 표기

- 가공용 신선 농산품은 통관 시 화물검사 확인을 위해 사실과 부합한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 가능
- 마대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 생략 가능
- 한편 원문 표기항목은 품명, 업체명(제조자), 제조일자(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해 표기해야 함

○ 기타 벌크형태의 포장식품

- 대형 포장식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효일) 표기는 원문으로 표기 필요

- 가공용 신선 농산품은 사후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함
- 신선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랍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 수입 식품의 포장 상단에 원문 또는 중문으로 미표기
 - 유효기간 미표기 또는 허위 표기*
 -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미표기,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표기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 표기 기한이 사실과 상이
 - 모호한 글자 표기로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 수입업체명·주소·전화번호 등 미표기 혹은 관련 내용이 신고 사실과 다를 경우
 - 치료 효능 등 내용을 명기한 과대 허위 표기
 - 특정 식품에 ‘경고’문구 미표기
- 라벨링을 이용한 효능 광고
 -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기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됨. 특히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를 금지함
 - 사용 금지 식품 표기는 ‘식품표기·선전·광고용어의과장및오해소지판단기준(食品標示宣傳或廣告詞句涉及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之認定基準)’에 따름
 - 의학적 효능 포함*, 의학적 효능은 포함하지 않으나 과장 및 오해소지 존재**, 허위과장은 아니나 약효 언급 및 오해소지의 문구 등 사용을 금지 함
 - * 예방·개선·감량·진단·질병치료·특정 생리적 현상 등 선정성 표현(ex :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질병완화 관련 표현(간 해독, 지방간 완화, 혈당 조절 등), 질병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소화불량 해소, 인후염 개선, 신장 기능 개선 등), 출판물·서적 인용·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본초비요’ 기재해 동충하초·혈액염 방지 효능 기술)
 - **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세포 기능 강화 등), 한약재 효능은 언급치 않았으나 오장육부 등 신체기관에 대한 표현(눈 보호 등),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기슴 풍만 등), FDI규정번호만 언급하고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인지하지 않은 경우

*** 통용 문구(치아골격의 정상 발육·형성 보조, 소화개선 등), 일반영양소에 서술 가능한 생리기능 효용 문의 경우 반드시 해당 영양소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기(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줌 등)

○ 라벨링 규정 위반 시 처벌

- 기한 내 회수해 수정할 것을 통지하며 수정 한 사항이 관리기관에 합격하기 전까지 시판 금지
- 벌크 식품을 판매할 경우 ‘벌크식품표시관련규정(散裝食品標示相關規定)’에 따라 품명, 원산지, 소고기원료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원료여부 등 사항을 표기해야 판매 가능

○ 중문표기 부착면제

- 벌크 형태 수입(최소단위 포장 중량 3KG 이상)으로 수입 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또는 포장 변경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품 원료는 중문라벨 부착면제
- 분리포장·포장변경·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
- 부착면제 제품일 경우

* 중문 라벨링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공장 등기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具結書: 제출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상품의 원 포장 및 제조업체 원 포장 상 표기와 관련된 자료, 포장 변경·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부 포장 첨부

- 식당,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에서 사용할 벌크제품은 FDA 또는 BSMI에 서류* 구비 후 면제 신청

* 중문 라벨링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 제품 외포장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로 포장을 밀폐 처리한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수입업체가 부착면제품을 수입할 경우 FDA 또는 BSMI에 서류* 구비 후 면제 신청

* 중문 라벨링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상품의 외포장,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제조업체·내용물·유효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향후 검험·검역 시 근거로 삼음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유효기간은 2년으로(동의서 내 일자 기록) 향후 지속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

4. 품목별 라벨링 표기

가. 표시 예시

○ 과자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신** 떡볶이																								
성분	소맥분, 설탕, 옥수수물엿, 해바라기유, 떡볶이 소스, 향료, 미분, 팽창제, 포도당, 소금, 파슬리, 고추 추출물, 복분자 추출물, 앵두 추출물, 조미제																								
중량	103g																								
유효일자	포장 상 별도표기																								
제조업체	HAI***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 x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시	<table><tr><th colspan="2">영 양 표 시</th></tr><tr><td colspan="2">매 분량 103g</td></tr><tr><td colspan="2">본 포장 포함량 : 1분량</td></tr><tr><th colspan="2">매 분량 당</th></tr><tr><td>열량</td><td>534kcal</td></tr><tr><td>단백질</td><td>5.2g</td></tr><tr><td>지방</td><td>26.8g</td></tr><tr><td>포화지방</td><td>9.3g</td></tr><tr><td>트랜스 지방</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68g</td></tr><tr><td>당</td><td>28.8g</td></tr><tr><td>나트륨</td><td>420mg</td></tr></table>		영 양 표 시		매 분량 103g		본 포장 포함량 : 1분량		매 분량 당		열량	534kcal	단백질	5.2g	지방	26.8g	포화지방	9.3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68g	당	28.8g	나트륨
영 양 표 시																									
매 분량 103g																									
본 포장 포함량 : 1분량																									
매 분량 당																									
열량	534kcal																								
단백질	5.2g																								
지방	26.8g																								
포화지방	9.3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68g																								
당	28.8g																								
나트륨	420mg																								
보존기간	6개월																								

○ 소스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신*고추장																		
성분	소맥전부, 물엿, 정제수, 고춧가루, 소금, 주정, 양파추출물, 파추출물, 생강추출물, 마늘추출물, 효모, 중국																		
중량	500g																		
유효일자	포장상 표기(서기 년/월/일)																		
제조업체	SINGSONG FOOD CORP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 x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시	영 양 표 시 매 1인분 10g 본 포장 50인분 매 100g 당 함량 <table><tr><td>열량</td><td>225kal</td></tr><tr><td>단백질</td><td>0g</td></tr><tr><td>지방</td><td>0g</td></tr><tr><td>포화지방</td><td>0g</td></tr><tr><td>트랜스 지방</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45g</td></tr><tr><td>당</td><td>35g</td></tr><tr><td>나트륨</td><td>1980mg</td></tr></table>		열량	225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45g	당	35g	나트륨	1980mg	
	열량		225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45g																	
	당	35g																	
나트륨	1980mg																		
보존기간	18개월																		
보존방법	냉장 0~7도, 개봉 후 냉장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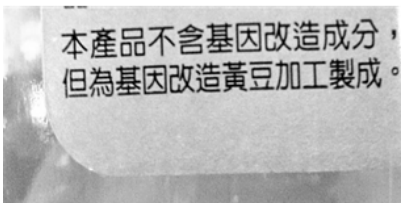
○ 물 · 음료류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초* 탄산수																									
성분	천연광천수, 천연탄산																									
중량	1500ml																									
보존기간	12개월																									
제조업체	ILHWA/ 주소 : xxx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 xxxx 홈페이지 : xxxx																									
원산지	한국																									
유효일자	포장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																									
영양표시	<table><tr><th colspan="2">영 양 표 시</th></tr><tr><td colspan="2">매1 분량 100ml</td></tr><tr><td colspan="2">본 포장 포함량 : 15분량</td></tr><tr><th colspan="2">매 분량 당</th></tr><tr><td>열량</td><td>0kal</td></tr><tr><td>단백질</td><td>0g</td></tr><tr><td>지방</td><td>0g</td></tr><tr><td>포화지방</td><td>0g</td></tr><tr><td>트랜스 지방</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0g</td></tr><tr><td>당</td><td>0g</td></tr><tr><td>나트륨</td><td>0mg</td></tr></table>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0ml		본 포장 포함량 : 15분량		매 분량 당		열량	0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0g	당	0g	나트륨	0mg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0ml																									
	본 포장 포함량 : 15분량																									
	매 분량 당																									
	열량	0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0g																									
당	0g																									
나트륨	0mg																									

○ 주류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참**	
종류	기타 증류주	
원산지	한국	
원료	정제수, 쌀, 보리	
알콜도수/중량	20.1도/ 360ml	
제조업체	HITE JINRO	
수입업체	*****有限公司 주소 : xxx 고객상담전화번호 : xxxx 홈페이지 : xxxx	
영양표기	주류 표기하지 않음	
제조일자	하단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	
유효일자	무제한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 유전자 변형식품(基因改造食品標示)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수타 건두부																							
성분	황두(유전자 변형 포함), 물, 두부응고제, 착색제(카라멜색소), 품질개량제(탄산나트륨 무수), 방부제(안식향산), 소포제, 착색제																							
중량	440g±10%																							
보존기한	180일(냉장요망)																							
유효기간	개봉부분에 표시																							
원산지	대만																							
주의사항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불포함하나, 유전자변형 대두로 가공 제조되었음																							
영양표시	<table><tr><th colspan="2">영 양 표 시</th></tr><tr><td colspan="2">매1 분량 100g 본 포장 포함량 : 1분량</td></tr><tr><th colspan="2">매 분량 매 100g</th></tr><tr><td>열량</td><td>0kal</td></tr><tr><td>단백질</td><td>0g</td></tr><tr><td>지방</td><td>0g</td></tr><tr><td>포화지방</td><td>0g</td></tr><tr><td>트랜스 지방</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0g</td></tr><tr><td>당</td><td>0g</td></tr><tr><td>나트륨</td><td>0mg</td></tr></table>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0g 본 포장 포함량 :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0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0g	당	0g	나트륨	0mg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0g 본 포장 포함량 :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0kal																							
단백질	0g																							
지방	0g																							
포화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탄수화물	0g																							
당	0g																							
나트륨	0mg																							

○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식품(食品標示過敏原)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푸딩																																		
알레르기원 정보	본 제품은 우유 및 계란을 포함한 제품임																																		
중량	180g																																		
성분	물, 자당, 유분, 코코넛오일, 옥수수전분, 캐러멜색소 등																																		
제조사	싼푸산업주식유한회사																																		
제조주소	대만 자이현																																		
소비자 서비스주소	타이난시 용강구																																		
영양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영 양 표 시</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3">매1 분량 180g 본 포장은 1분량</td></tr> <tr> <th colspan="3">매 분량 매 100g</th></tr> <tr> <td>열량</td><td>205kcal</td><td>114kcal</td></tr> <tr> <td>단백질</td><td>3.6g</td><td>2.0g</td></tr> <tr> <td>지방</td><td>5.5g</td><td>2.8g</td></tr> <tr> <td>포화지방</td><td>4.5g</td><td>2.8g</td></tr> <tr> <td>트랜스 지방</td><td>4.5g</td><td>2.5g</td></tr> <tr> <td>탄수화물</td><td>4.5g</td><td>0g</td></tr> <tr> <td>당</td><td>4.5g</td><td>20.3g</td></tr> <tr> <td>나트륨</td><td>81mg</td><td>45mg</td></tr> </tbody> </table>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80g 본 포장은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205kcal	114kcal	단백질	3.6g	2.0g	지방	5.5g	2.8g	포화지방	4.5g	2.8g	트랜스 지방	4.5g	2.5g	탄수화물	4.5g	0g	당	4.5g	20.3g	나트륨	81mg	45mg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80g 본 포장은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205kcal	114kcal																																	
단백질	3.6g	2.0g																																	
지방	5.5g	2.8g																																	
포화지방	4.5g	2.8g																																	
트랜스 지방	4.5g	2.5g																																	
탄수화물	4.5g	0g																																	
당	4.5g	20.3g																																	
나트륨	81mg	45mg																																	

○ 건강식품(健康食品)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사진																																				
품명	최고급장미사물(四物)음료																																					
성분	사물추출액(물, 당귀, 천궁, 숙지, 백약), 정백당, 홍대추 등																																					
내용량	60mm(1병)																																					
보존기한	2년																																					
유효기간	뚜껑 상단에 표기(서기 년/월/일)																																					
제조사	퀘이커식품주식유한회사																																					
제조공장	타오위앤시 따위엔구 호평시로 1-369																																					
소비자 상담실	0800-006600																																					
홈페이지	www.quaker.com.tw																																					
주의사항	건강효능의 관련성분 함량은 페룰산(Ferulic Acid)이 품질관리지표성분임. 60mm당 60.9~91.5mg																																					
건강식품 등록번호	위생서식자제000000호																																					
영양표시	<table><tr><th colspan="3">영 양 표 시</th></tr><tr><th colspan="3">매 분량 60mn 본 포장은 1분량</th></tr><tr><th></th><th>매 분량</th><th>매 100g</th></tr><tr><td>열량</td><td>25,2kcal</td><td>42kcal</td></tr><tr><td>단백질</td><td>0,3g</td><td>0,5g</td></tr><tr><td>지방</td><td>0g</td><td>0g</td></tr><tr><td>포화지방</td><td>0g</td><td>0g</td></tr><tr><td>트랜스 지방</td><td>0g</td><td>0g</td></tr><tr><td>탄수화물</td><td>6g</td><td>10g</td></tr><tr><td>당</td><td>6g</td><td>10g</td></tr><tr><td>나트륨</td><td>10mg</td><td>17mg</td></tr><tr><td></td><td>0,3mg</td><td>0,5mg</td></tr></table>		영 양 표 시			매 분량 60mn 본 포장은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25,2kcal	42kcal	단백질	0,3g	0,5g	지방	0g	0g	포화지방	0g	0g	트랜스 지방	0g	0g	탄수화물	6g	10g	당	6g	10g	나트륨	10mg	17mg		0,3mg	0,5mg
	영 양 표 시																																					
	매 분량 60mn 본 포장은 1분량																																					
		매 분량	매 100g																																			
	열량	25,2kcal	42kcal																																			
	단백질	0,3g	0,5g																																			
	지방	0g	0g																																			
	포화지방	0g	0g																																			
	트랜스 지방	0g	0g																																			
	탄수화물	6g	10g																																			
당	6g	10g																																				
나트륨	10mg	17mg																																				
	0,3mg	0,5mg																																				
건강식품 인증라벨	상품 정면에 표기 * 우측 라벨링사진 아래 그림 참고																																					
효능표기	국가 건강식품 인증 혈당 중 항산화기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줌 실험위로 실험한 결과 노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줌																																					

나. 특정식품 라벨링 규정

○ 유기농 농산품

-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표기된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및 통용부호는 보조용으로 표기
- 판매 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 규정은 품명(‘유기농’ 문자 표기), 원료 명칭(품명과 일치하면 생략 가능), 수입업자정보(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여 원산지(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기 면제), 검증기관 명칭, 유기농 표기 동의서 일련번호, 기타 공고한 사항
- 원료에 관한 표기규정은 두 종류 이상 혼합된 원료를 가공할 시 명칭·함량 표기, 10% 미만일 경우 생략가능. 물·소금 외 원료에는 ‘유기농’ 문자 또는 기타 수식 부호를 사용하며 유기농 원료 항목에도 추가표기 가능
- 원산지 표기는 수입화물원산지인정표준(進口貨品原產地認定標準)에 따라 원산국 표기, 표기글자의 길이·폭은 6mm 초과할 것, 포장용기의 정면·중간·하단 부분에 명확히 표기
- 벌크 형태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판매처에서 게시판 또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품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고 유기농표기 동의서 사본 전시(글자 길이 및 폭은 3cm 이상으로 표기)
- 품명·원료 표기 외 현지어 또는 외국어로 된 ‘유기농’ 문자 표기를 해서는 안 됨. 단 유기농 마크 사용제품은 해당하지 않음
- 수입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가공품 사용 마크는 중앙당당기관이 공고한 국가 및 국제인증조직의 유기농 마크나 검증기관의 마크에 한함

○ 건강식품

- 건강식품은 건강 무해성과 보건의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에 대한 표기·광고를 할 수 있음. 한편 질병 치료·교정 등 의료적 효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건강식품관리법 내 해당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기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 제조·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성분·규격·작용·효능·제조과정·검사규격·방법 등 자료, 라벨·샘플을 구비해 FDA에 수입허가인증·제조허가인증 발급 신청하며,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 가능

- 건강식품의 포장·용기 상 라벨링 항목은 품명, 내용물 명칭, 식품첨가물의 명칭, 유통기한, 보존기간, 국내 업체명칭·주소, 허가 비준된 효능,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 글자 표기 및 표준마크표기,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기타 필수 경고사항, 영양성분·함량, 기타 관련기관의 공고사항
- 건강식품의 표기·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료기능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를 고의적으로 거절할 경우 제조·가공·시판 등 잠정 중단시킴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 불가 판단 시 허가증은 자동 실효됨.
-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 식품 물수 및 폐기

○ 주류

- 주류 브랜드 및 명칭은 크게 표기하며, 기타 문자보다 더 커야 함
- 수입산 주류의 농도는 섭씨 20도에서 원 내용물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
- 100ml 음료 중 포함된 알코올 농도로 표기. %·%vol·% by volume로 표기하며, 오차허용범위는 ± 0.5 도 이하
- 용량 단위는 l, ml cl로 표기
- 증문 표기사항은 주류의 상품명, 종류, 성분, 농도, 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국)
- 유통기한은 년/월/일 표기하나, 3개월 이상일 경우 년/월로 표기, 유통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함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표기 예시 : 음주 후 운전 안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과다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해가된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 화재 발생 시 분리하여 놓으시오, 눈과 피부 호흡기관을 자극할 시 반드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반드시 마개를 덮으시오 등
- 동일 종류의 과일원료를 함유한 과일주는 적어도 85% 동일한 해에 원료를 채취·제조한 것이어야 함
- 주령은 주류상품이 병에 주입되기 전 용기에 저장되어 성숙된 시간을 뜻하며, 기타 주령의 주류로 제조된 경우 단기간의 주령을 표기

- 생산년도 표기 시 원산국 정부 혹은 공인상공회의소의 생산년도 증명서를 통관 전 제출하여야 함

○ 진균류 식품

- 사용범위는 진균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영지버섯, 운지버섯, 동충하초 등)
- 진균류를 포함한 식품의 외포장 상 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함. 비고란에 사용부위 및 배양방식을 표기
-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한 원료를 함유한 식품의 품명은 통용명칭 또는 군족명칭에 따름. 예를 들면 영지, 운지와 같음
- 진균류 균사체 사용 원료를 함유하거나 진균류 자실체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품명 및 기타 표기 또는 광고시 00 균사체로 표기. 글자의 크기는 일치해야 하며, 외포장 상 진균류 자실체의 그림이 표시되어서는 안 됨
- 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을 함유한 상품은 통용명칭 또는 군족명칭을 품명으로 표기하며, 외포장 상 ‘본 상품은 00균사체와 자실체의 혼합임’ 또는 동의어 명기. 글자의 길이와 폭은 5mm를 초과해야 함

○ 포장 비타민 무기질류 알약 및 캡슐형식품

- 영양 표시 사항은 매 1인 분량 ○ 알(개, 정), 본 포장 ○ 분. 매 분량(일일 섭취량 비율) : 비타민 ○ mg or ug(O%), 무기질 ○ mg or ug(O%), 선언의 영양소 함량 Og, mg or ug(O% or *), 기타 영양소 함량 Og, mg or ug(O% or *)

* 참고치 미제정

〈대만 포장비타민무기질류의 영양 표시 예시〉

영양 정보		
	매 1인 분량 본 포장	알 (개) 분
	매 분량	일일 섭취량 비율
비타민	mg or ug	%
무기질	mg or ug	%
선언의 영양소 함량	g, mg, ug	%
기타영양소함량	g, mg, ug	%

* 출처 : FDA

〈대만 포장비타민무기질류의 영양 표시 오차허용 범위〉

항 목		오차 허용 범위
비타민 A, 비타민 D		표기치의 80~180%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 불포함) 무기질(나트륨 불포함)		≥ 표기치의 80%
자의적 표기 가능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 표기치의 120%
	기타영양소	≥ 표기치의 80%

* 출처 : FDA

○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식품

- 2015년 7월 1일부터 ‘식품내 알레르기원 표기규정(食品過敏原標示規定)’ 실시
- 판매 중인 포장 용기·제품의 성분 가운데 식약서가 지정한 6가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성분(새우·게·망고·땅콩·우유·알류)을 포함할 경우, 용기·외포장 상 경고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 새우 및 관련제품 : 각종 새우류 및 새우류에서 추출한 키토산(chitosan), 글루코사민(glucosamine) 등 성분. 새우 전병, 새우 소스, 새우 완자 등
- 게 및 관련제품 : 각종 게류 및 게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성분, 게맛살, 게 완자 등 관련제품
- 망고 및 관련제품 : 건망고, 망고잼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젤리, 망고케이크 등
- 땅콩 및 관련제품 : 땅콩기름, 땅콩캔디, 땅콩분말, 땅콩잼, 땅콩소스, 땅콩전병 등
- 우유 및 관련제품 :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카세인·유청단백질(whey protein)·락토페린(lactoferrin) 등 성분 포함 제품, 치즈, 버터, 크림, 마가린, 분유, 요구르트, 요플레, 유산균음료, 우유과자, 우유캔디 등 제품. 한편, 락티톨(lactitol) 포함 제품은 제외
- 알류 및 관련제품 : 각종 알류(계란, 오리알, 거위알, 타조알 등) 및 알류에서 추출한 알부민(albumin) 성분, salted egg(잔계란), 피단(皮蛋), 계란말이, 계란과자, 계란 노른자 소스, 계란 샐러드, 계란 분말 등
- 경고 표기는 “이 상품은 OO을 포함(本產品含有○○)”, “이 상품은 OO을 포함하며, 알레르기 체질자의 식용에 부적합함(本產品含有○○, 不適合其過敏體質者食用)” 등 문구나 동일 의미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이밖에도 양유(羊奶), 어류, 두족류(頭足類), 권패류, 건과류, 글루텐 포함 곡류, 콩, 키위 및 관련제품, 아황산염·이산화유황의 잔류량 10mg/kg 이상 식품 등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했을 경우 “이 제품의 생산제조시설·생산라인에서 OO을 처리함(本產品生產製程廠房, 其設備或生產管線有處理○○)” 등 문구 표기

○ 과채음료

- 시판 중인 포장음료 가운데 과채즙을 첨가한 음료의 첨가량을 정확히 표기
- 2013년 10월 2일 시판 과채즙포장음료표기규정(宣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飲料標示規定) 제정·발표했으며, 최근 개정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과채음료의 정의는 상품 외관 포장 상 ‘과채(果汁)’라는 명칭(품명 포함)이나 과채류 도안을 표기한 사람이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
- 과채즙 함량 10% 이상 첨가 음료는 상품 외관 정면에 명확한 원액 함량을 표기
- 2종 이상 혼합 과채즙 음료는 품명이 사용한 과채즙명이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름
 - * 품명(브랜드명)에 과채명 전체를 기입하고 명칭은 함량이 높은 순서로 표기
 - * 품명에 과채명칭 전체를 미기입할 경우, 품명·외포장 정면에 ‘종합과채즙’, ‘혼합과채즙’ 문구 표기
- 과채즙 함량 10% 미만 음료는 내용물 명칭 외에도 과채즙 등 동일의미의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 상품 외관 정면에 ‘원액 함량 10% 미만’ 또는 동일의미의 문구 표기. 한편, 실제 원액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 과채즙 미첨가 음료는 1. 상품 외관 정면에 ‘과채즙 미함유’나 동일 의미의 문구 표기, 2. ‘과채’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품은 품명 상 ‘맛’, ‘향’ 또는 동일 의미의 문구 표기
- 외포장 정면에 원액 함유율을 표기해야 하며, ‘종합과채즙음료’, ‘혼합과채즙음료’, ‘과채즙 총 함량 10% 미만’, ‘과채즙 미함유’ 또는 동일 의미 글자인 경우 그 글자체 및 색깔은 포장 바탕색과 확연히 달라야 하며 글자크기는 규정을 따름

〈대만 과채음료의 부피에 따른 원액함유율 표기 문구의 글자 크기〉

상품 부피(ml)	글자 크기(cm)
150 이하	각 0.3 이상
151~300 이하	각 0.5 이상
301~600 이하	각 0.8 이상
601 이상	각 1.2 이상

* 출처 : FDA

○ 식품기구·용기·포장의 내열온도

- 반복사용 가능한 식품용기나 일회용 식품용기 등에 적정 온도 표기 의무화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26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제호하는 식품용기·포장에 식품기구·용기·포장표시관련규정(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標示相關規定) 실시
- 규정에 따라 식품 접촉면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반드시 재질·내열온도·중복사용가능여부 등 정보를 라벨링해야 함
- 특히 식품용기는 내열온도표시부합성검측방법(耐熱溫度標示符合性試驗方法) 규정에 따라 라벨링 상 ‘PET재질의 용기이므로 85도 이하에서 사용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대만정부는 플라스틱 식품용기 사용을 점차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 및 관련 정보의 대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
- 식품용기 제조기업 또는 대만 관련 수출입기업은 식품약품관리서의 플라스틱 식품용기홍보홈페이지 참고²⁸⁾
- 위반 시 전량 회수 및 최고 300만 NTD의 벌금형 조치
- 對대만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 주의 요망

○ 유전자변형식품

- 2014년 12월 22일 유전자변형식품원료함유 포장식품의 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변형식품원료함유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유전자변형식품원료 함유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등 각 전문 4조, 4조, 5조 제정·발표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는 허용 가능 유전자변형식품원료이며, GMO함유 식품은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등 문구를 표기해야 함
- GMO원료를 직접 사용한 포장식품은 최종 단계에서 이미 유전자 복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단백질 복제의 경우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 00사용’,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하여 제조, 단 유전자변형성분 불포함’, ‘본 상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 포함, 단 유전자변형성분 불포함’,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미포함 하나, 유전자변형00을 가공해 제조’, ‘본 상품은 유전자변형성분을 미포함 하나,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00 포함’ 등 문구 삽입

28) <http://plasticspackage.pidc.org.tw> 참조

- 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의 수확·저장·기타 요소로 인해 비교의적으로 소량 유전자 변형식품원료 첨가 시, 첨가 함량이 원료의 0.03% 이하의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원료로 간주
- 비GMO원료 함유 포장식품이 국제적으로 이미 복제 통용, 유전자변형 사용식품 원료로 변형되었을 경우 ‘비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이 아님’ 등 표기 사용 불가. 한편, 비교의적 투입량을 ‘국가00기준에 부합’으로 표기하거나, 실제 비교의적 투입량을 표기
- 품명, 원료명칭 원칙, 기타용기 및 외포장상 표기 위치, 글씨체의 길이와 넓이는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00사용’ 등 문구표기 시 기타 문자와 구별돼야 하며, 길이와 폭은 2mm 이하여서는 안 됨. 한편, ‘비유전자변형’, ‘비유전자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음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표기 준수사항(食品添加物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역시 상기규정의 내용과 동일
- 유전자변형식품원료를 함유한 벌크식품의 표기 준수사항(散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에 따라 표기방식은 진열 판매되는 장소에서 마크 또는 표지판 등의 형식으로 입식, 현추식, 부착 또는 기타 명확한 방식에 의해 라벨링
- 마크(라벨) 표기 시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포함’, ‘유전자변형00사용’ 등의 표기 시 글자의 크기는 2mm 초과해 표기
- 기타 표기방식의 경우 글자의 크기는 2cm 초과해 표기
- ‘비유전자변형’, ‘비유전자변형함유’의 글자의 크기는 상기 규정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조항 상기 규정과 동일함

○ 초콜릿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1항 10목 및 제25조 제2항 규정 2016년 6월 24일 제정·발표, 2017년부터 시행
- 초콜릿은 코코아제품을 원료로 하며 설탕, 유제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제조한 고체형태의(소 불포함) 다크초콜릿, 밀크초콜릿 및 화이트 초콜릿을 지칭
- 품명이 다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를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고고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35%, 코코아버터는 적어도 18%, 무지코코아 고형물은 적어도 14%여야 함
- 품명이 화이트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원료로 하며, 코코아 버터 함량이 적어도 20%, 우유고형물이 적어도 14%여야 함

- 품명이 밀크초콜릿인 경우, 코코아버터 및 우유분말을 혼합한 코코아 분말, 코코아 페이스트를 원료로 하며, 총 코코아고형물의 함량은 적어도 25%, 우유 고형물은 적어도 12%여야 함
 - 초콜릿을 품명으로 하는 경우 원료 및 함량은 식물성오일을 코코아버터의 대체로 첨가한 경우 그 첨가량은 제품 총중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라벨에 ‘대체 코코아버터’ 표기
 - 표기 방식은 포장 초콜릿의 R UDDN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가 0.2cm를 초과해야 함
 -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판매업자는 벌크초콜릿 판매 시 판매 장소에 규정 표시 사항을 준수해 카드 표기(라벨)·표지판·입간판·걸이식·기타 방식 등 표기를 통해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표기(라벨) 글자 크기의 길이 및 넓이는 0.2를 초과해야 하며, 기타 표기 형식의 경우 2cm 이하여서는 안 됨
- 버터 · 유지방 · 마가린 · 유지스프레드

품명	정의
버터	유제품 유도체의 유지제품에 한함 살균, 혼합, 정제과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의 버터를 이룸. 유지방 함량 80% 이상의 제품
유지방	유제품 중 지방을 물리적 방식으로 분리, 탈지유 형태의 지방으로 제작한 유화 제품 냉동온도 이상에서 액체상태 유지, 유지방 함량 80% 이상의 제품으로 품명은 ‘식용크림’, ‘생버터’, ‘생크림’으로 표기
마가린 · 유지스프레드	식용 유지를 적당히 첨가한 물 및 식품첨가물을 유화, 급랭, 반죽 등의 처리를 거쳤거나 급냉, 반죽 등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제조한 가소성을 갖춘 또는 유동상태의 제품(식물성 버터를 치칭하는 단어로 외포장에 표기해서는 안 됨) * 마가린 : 유지함량이 80% 이상의 경우 * 유지 스프레드 : 유지함량이 1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 포함 포장식품의 용기 및 포장식품 원산지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1항 7호에 따라 2013년 10월 2일부터 소고기 및 소 식용부위를 포함한 원료의 용기 및 포장 식품은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부위 원료 대한 원산지(국) 또는 대표성 있는 문자를 중문으로 표기
 - 소고기 및 소의 식용부위는 우유 및 소기름을 포함하지 않음
 - 식품의 소고기와 소의 식용부위 원료는 그 도살한 원산지(국)를 의미

5. 최근 이슈

가. 소비자가 제품정보 명확히 제공받도록 라벨링 규정 강화

- 포장용 식용식초 표시규정(包裝食用醋標示規定)
 - 2017년 6월 3일 공고 후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 포장 판매용 식용 식초 제품에 식초 원료 제작방식에 따라 식용식초·조리식초·합성식초 등으로 세분화하여 라벨링
 - 조리식초는 양조식초를 원료로 합성물질이나 기타 산미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 상 ‘조리(調理)’ 문구 명기
 - 합성식초는 식품첨가물(아세트산·빙초산)이나 조미액(당류·산미제·조미제·식용소금 등)을 양조간장에 혼합해 만든 것으로, 포장 상 ‘합성(合成)’문구 명기
- 포장용 간장제조과정 표시규정(包裝醬油製程標示之規定)
 - 2018년 3월 8일 공고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 예정
 - 지난 2016.7월 간장 가공방식에 따라 분리·표기를 규정했으며, 이번에는 간장의 농도 및 성분함량을 추가함.
 - 규정에 따라 향후 간장은 제조과정에 따라 ‘속성(速成)’, ‘산분해(水解)’, ‘혼합(水解)’이라는 문구를 명기해야 함.
 - 양조(釀造)간장은 천연누룩곰팡이를 이용, 질소함량이 100ml당 0.8g 이상이어야 하며 레불린산(levulinic acid) 함량이 0.1% 미만인 제품
 - 산분해간장은 염산·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넣어 발효 과정을 생략한 제품
 - 속성간장은 산분해간장 제조과정에서 발효·숙성을 거쳐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

〈대만 포장용식용식초(좌)·간장제조과정(우) 표시 예시〉



* 출처 : FDA

- 식품원료 올리브과실추출 사용 제한및기준(食品原料『油橄欖果實渣萃取物(含羥基酪醇)』之使用限制及其標示)
 - 2018년 9월 25일 공고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 예정

- 올리브 과일 추출 잔여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하이드록시티로솔(hydroxytyrosol)함량을 15%에서 20% · 일일권장섭취량 20mg 이하로 사용제한 규정, 관련 사항을 포장 상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올리브 과실을 압착해 얻은 올리브 오일은 이전에 추출 후 남은 잔여물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최근 압착 후 남은 올리브 추출 잔여물에서 항산화물질인 하이드록시티로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보건의료식품으로 재가공해 사용하기도 함
- FDA는 이전에 대만에 사용이 개방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입 신청한 업체 있어 관련 규정 마련했다고 밝힘

나. 기존규정 강화 추세

○ 건강식품표시규정(健康食品標示規定)

- 2017년 12월 30일 공고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건강식품의 용기 · 포장 상 내용물 이름, 순중량, 용량, 수량, 식품첨가제명, 경고문구(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可能造成健康傷害)) 등 기재사항 기준 추가
- 현재 건강식품(健康食品)은 정부의 품질인증을 통과해야만 명칭사용이 가능
- 건강식품은 제품의 용기 · 포장 상 중문으로 소비자가 인식 가능토록 명확히 제품정보*를 라벨링해야 함

* 품명, 내용물명, 중량, 용량, 수량, 식품첨가물명칭, 유효기간, 보존방법, 보존 조건, 제조사정보, 승인기능, 허가증번호, 건강식품(健康食品)라벨, 섭취량, 복용시 주의문구, 영양성분, 기타 지정사항

○ 식품알레르기표기규정초안(食品過敏原標示規定草案)

- 2018년 5월 22일 공고
- 2017년 12월 11일 기 발표한 초안 내 6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추가해 총 11개 항목(갑각류, 땅고, 땅콩, 우유, 계란, 견과류, 참깨, 글루텐곡물, 대두, 어류, 이산화황잔류제품)을 규정
- 이는 대만 국민 대상 알레르기 임상실험 자료를 참고해 식품 알레르기원 표기를 강화하기 위함
- 알레르기원 포함식품의 경우 ‘본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내용물)를 포함’ 또는 ‘본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내용물)을 포함해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나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표기

-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포장식품표기 준수사항(包裝食品含基因改造食品原料標示應遵行事項)
 - 2018년 6월 14일 공고했으며 상품제조일 기준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유전자변형 식품원료는 대만정부가 허가한 경우만 비유전자변형(NON GMO) 문구를 표기토록 제한
 - 대만정부가 허용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목화, 카놀라, 비트 뿌리 등 5종
 - 이는 소비자의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혼돈·오해 방지 목적
 - 한편 포장식품 외 식품첨가물, 비포장식품·요식업직송식품 역시 동일 내용으로 개정
 -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첨가 제품의 對대만 수출 시 사전 숙지가 필요함

1. 시장특성

가. 웹사이트

-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 : www.dgbas.gov.tw
- 대만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 www.ndc.gov.tw
- 대만 내정부 통계처(內政部統計處) : www.moi.gov.tw/stat/index.aspx
- 한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ecos.bok.or.kr
- 대만 행정원(行政院) 농업위원회(農業委員會) : www.coa.gov.tw
- 대만 재정부(財政部) 관무서(關務署) : web.customs.gov.tw/default.aspx

나. 참고서적

- 대만 2018년 식품산업연감(食品產業年鑑), ITIS

2. 통관제도

가. 웹사이트

- 대만 재정부 관무서 세관신고시스템(關港貨單一窗口, CPT) : portal.sw.nat.gov.tw
- 대만 경제부(經濟部)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 : www.trade.gov.tw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漁業署) : www.fa.gov.tw
- 관세 및 수입규정 : <https://www.trade.gov.tw/Pages/List.aspx?nodeID=236>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검역제도

가. 웹사이트

-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 www.fda.gov.tw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 : www.baphiq.gov.tw
- 경제 표준검험국(標準檢驗局) : www.bsmi.gov.tw
- 위생복지부 중의약사(中醫藥司) : dep.mohw.gov.tw/DOCMAP/mp-108.html

- 식품 농약잔류허용량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 야채과일식물류중금속제한기준(蔬果植物類重金屬限量標準)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93>
- 수입식물및식품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
<https://law.coa.gov.tw/glrsnewsout/LawContent.aspx?id=GL000134>
- 동물용의약품잔류기준(動物用藥殘留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VeterinaryDrugList.aspx?nodeID=519#>
- 일반식품위생기준(一般食品衛生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93>
- 영아식품류미생물위생기준(嬰兒食品類微生物衛生標準) :
<https://www.mohw.gov.tw/cp-16-41650-1.html>
- 식품첨가물사용범위및제한규격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01>
- 유제품위생기준(乳品類衛生標準) :
<http://www.rootlaw.com.tw/LawContent.aspx?LawID=A040170050002600-0970716>
- 음료류미생물위생기준(飲料類微生物衛生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04>
- 포장음용수미생물위생기준(包裝飲用水及盛裝飲用水微生物衛生標準)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O0040019>
- 주류위생기준(酒類衛生標準) :
<https://www.nta.gov.tw/web/ContentA/ContentA.aspx?c0=191>
- 수입주류검험관리방법(進口酒類查驗管理辦法) :
<http://www.rootlaw.com.tw/en/LawContent.aspx?LawID=A040070040003600-1040501>
- 식품중오염물질및독소위생기준(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4021>
- 식품첨가물사용범위·제한량·규격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

4. 라벨링 제도

가. 웹사이트

-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17>
- 수입화물원산지인정표준(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G0350047>
- 식품내알레르기원표기규정(食品過敏原標示規定) :
<https://www.mohw.gov.tw/cp-16-38823-1.html>
- 과채즙포장음료표기규정(宣稱含果蔬汁之市售包裝飲料標示規定) :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302>
- 식품기구 · 용기 · 포장표시관련규정(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標示相關規定)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07&chk=0b5952aa-fa70-47e5-a527-a9cf4214a2fa>
- 플라스틱식품용기홍보 : <http://plasticspackage.pidc.org.tw>
- 건강식품표시규정(健康食品標示規定) :
<https://www.mohw.gov.tw/cp-3569-39040-1.html>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일본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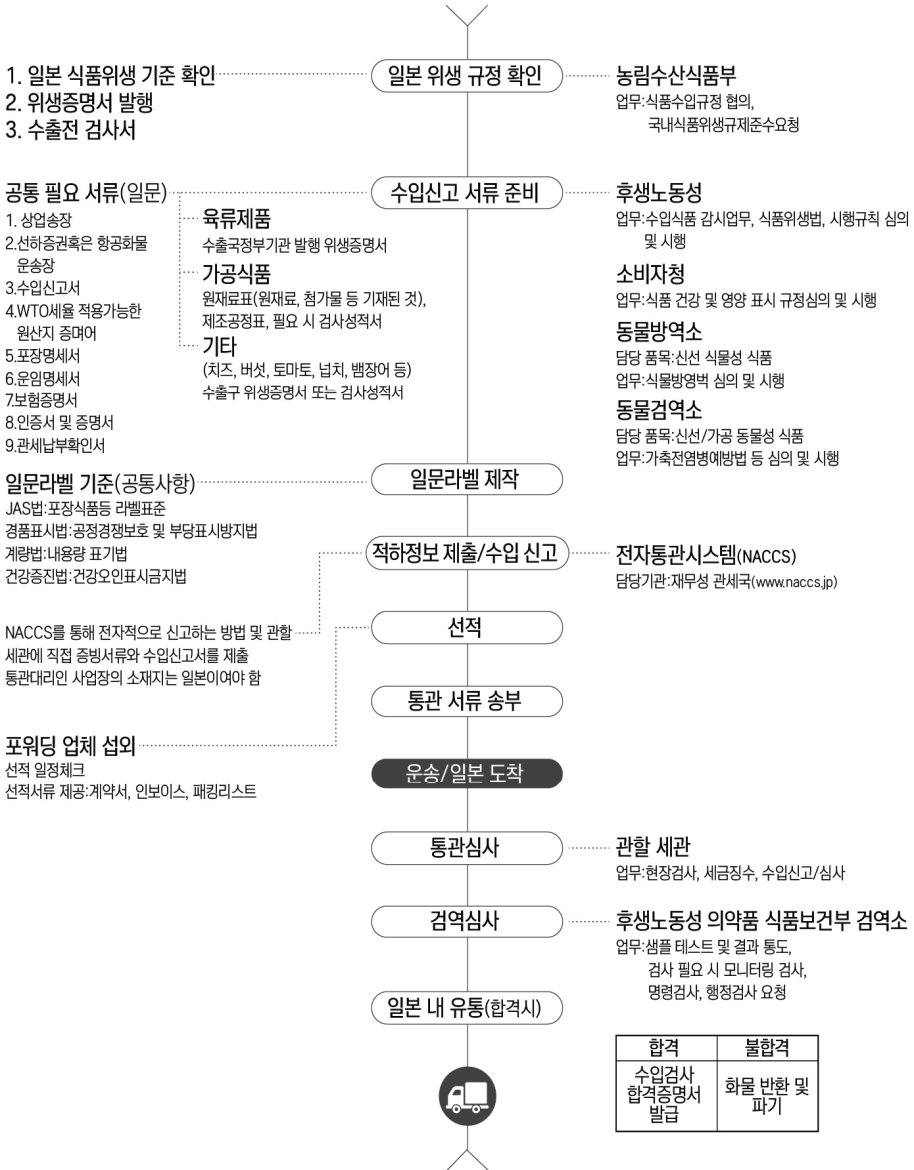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주요 현안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31
	제2장 통관제도	232
	1. 통관제도 일반	232
	2. 수입통관 절차	232
	3. 세관 수입통관 간소화 관련 제도	237
	4. 관세제도	238
	제3장 검역제도	239
	1. 검역제도 일반	239
	2. 동물검역	240
	3. 식물검역	242
	4. 식품검역	244
	5.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248
	제4장 라벨링 제도	257
	1.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257
	2. 공통 품질 표시기준	257
	3. 유기JAS제도	258
	4. 알레르기 표시	260
	5.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261
	6.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262
	7. 식품첨가물 표시	264
	8. 보건기능식품 표시	265
	제5장 주요 현안	272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 2 장 통관제도

1. 통관제도 일반

- 통관이란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세관에 화물의 품명, 종류,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와 같은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함
- 통관절차는 관세법, NACCS법(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통관업법(통관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
- 수출입 신고는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 자(개인 혹은 기업 및 단체)가 직접 또는 통업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세관에 수출입 신고 시, 통관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관세사만이 할 수 있음

2. 수입통관 절차

-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일본에 인수(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그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에 그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한 필요한 심사, 검사를 거쳐 관세, 내국 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함

■ 수입통관 절차 ■



* 출처 : 한국 관세청(www.customs.go.kr), 일본 관세청(www.customs.go.jp)

【수출절차별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사전보고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24시간 전에 일본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NACCS)에 화물적재 정보를 보고해야 함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NACCS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관할 세관에 직접 증빙서류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통관대리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관 대리인은 반드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본이어야 함
타 법령 검토	일본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내용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음
심사 및 검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 여부가 달라지며, 검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 혹은 화주가 전액부담
관세 납부	별도로 정해진 납세기한은 없으며 서류의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가능
화물 반출	제출 서류의 하자가 없고 관세 및 세금의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 세관은 수입허가증을 발행

* 출처 : 한국 관세청(www.customs.go.kr), 일본 관세청(www.customs.go.jp)

가. 사전보고 및 적하정보 제출

-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 (근거리의 경우 출항 전)까지 ‘일본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통해 보고 해야 함(KTNET, KINET을 통해 경유하여 접속가능)
- 화물적재 정보는 필수 보고 내용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나. 수입신고

-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는 도착통지가 내려진 경우, 수입자 혹은 화주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수입신고는 통관 대리업자를 통해 신고 가능
- 수입신고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입증서류¹⁾를 첨부하여 검역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NACCS를 통해 전자 제출. 전자로 제출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에 사전등록 필요

1)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매입서(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보험료명세서(Insurance Certificates), 운임 명세서(Freight Accounts),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특혜원산지 증명서(해당할 경우), 감면세 명세서(해당할 경우) 등

- 최초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검역소는 통상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품의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제조자, 제조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요구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
- 따라서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 및 해당 검역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류를 준비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음

Ⅰ 식품 등 수입신고서 Ⅰ

신고접수번호	※1										성명(1) 주소 (전화번호)		(印)			
신고 종류	(2) 사전·계획수입															
수입코드	(3)															
생산국·코드	(5)									수입식품위생관리자등록번호	(4)					
제조사명, 주소·코드	(6)															
제조장소명, 주소·코드	(7)															
수출자명, 주소·코드	(8)															
포장자명, 주소·코드	(9)															
적재항·코드	(10)									적재년월일	(11)	년	월	일		
하역항·코드	(12)									도착년월일	(13)	년	월	일		
보관창고· 코드	(14)									반입년월일	(15)	년	월	일		
										신고년월일	(18)	년	월	일		
화물 기호 및 번호	(16)									사고 유무 (있는 경우 그 개요)	(19) 무·유					
선박/항공기의 명칭 및 편명	(17)									제출자·코드	(20)					

1	화물별	(21)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장난감	계속	(22) Y·N	위생증명서번호	(32)									
품목 코드	(23)				화물이 가공식품일 경우 원재료·코드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일 경우 그 재질·코드	(33)									
품명	(24)					화물이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해당 첨가물의 품명·코드 화물이 첨가물제제의 경우 그 성분·코드 (양쪽 다 착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34) ※2								
적재수량	(25)						※2								
적재중량	(26)	kg													
용도 코드	(27)														
포장종류 코드	(28)														
등록번호 1	(29)														
등록번호 2	(30)														
등록번호 3	(31)														
화물이 가공품 일 경우 제조 및 가공방법 코드	(35)														
비 고						신고필 인									

〈주의〉

※ 1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 2란은 화물이 식품일 경우 첨가물의 품명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하고, 화물이 첨가물제제의 경우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음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합니다.

※ 수입자의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Ⅰ 식품 등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Ⅰ

대상 식품 등	첨부서류
가축 등(소, 말, 돼지, 면양, 산양, 수소)의 고기과 장기 및 이것을 원료로 한 식육제품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콜레라 오염지역에서의 생선어패류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북어	수출국 공적기관의 위생증명서
대형 낙화생	수출국 정부/공적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가공식품 중 처음으로 수입되는 것	검역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 성적서 성분표, 제조공정표, 상품설명서*
동일식품 등의 계속 수입	1년 이내에 실시한 지정검사기관의 자율검사 성적서 또는 행정검사 합격 시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시안화합물 함유 잡두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 색소	제품 검사 시험성적서
표시가 필요한 식품, 첨가물	표시설명서 또는 표시의 내용
곡물류, 향신료 등 아플라톡신 검사	모든 곡물류 및 향신료, 향신료가 일정량 이상 포함된 가공 식품의 경우 수입 시 아플라톡신 검사가 필요함

다. 타 법령 검토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 외에 다른 법령²⁾에 의해서 허가 및 승인 필요할 경우,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이 허가 및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함

라. 심사 및 검사

- 수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검역소는 앞에서 설명한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주로 아래 항목별로 위생 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시험성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도가공 기준 적합 여부
 - 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적절 여부
 - 유독(유해) 물질 포함 여부
 -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시험성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역소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컨테이너 규모의 대량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소량의 샘플 수출을 통해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본선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안전함
- 수입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화물이 도착한 시점에 검역관이 검토 후 수입자에게 지시하게 되며, 화물 도착 전 7일전부터 해당 검역소에 사전수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한국 내 지정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동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시간절약과 경비를 절감하는 유효한 방법임
-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현장 물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마. 관세납부와 수입허가

- 납세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기한이 없으며, 관할 세관에서 서류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바로 납부서 교부가 가능함.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세 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없음

2)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1_jr.htm)

- 관세나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은 즉시 수입을 허가하게 되며, 수입자 또는 화주에게 수입허가증을 발행함

3. 세관 수입통관 간소화 관련 제도

가. 특례 수입신고제도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정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해 먼저 화물 수령신고를 하고 그 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나. 예비심사제

- 수입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예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세관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화물이 보세 지역에 반입된 후 본 신고(수입신고)의 의사 표시를 하면 즉시 허용
- 신선 식료품과 적시 납품방식(just-in-time)으로 납기가 까다로운 상품, 특정 계절이나 이벤트(크리스마스 등)를 위한 상품 등 수입화물의 인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많이 쓰임

다. 화물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

- 수입 시 예비 신고가 있었던 화물 중 국내 인수를 서두르는 화물의 경우 세관 서류 심사 결과 ‘검사 불필요’라고 표시된 화물은 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수입신고를 실시하면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즉시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

라.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

(NACCS :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 일본 대부분의 통관업자는 NACCS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PDF 등의 전자매체로 제출 가능

마. 우수공인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제조업체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NACCS이용,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
-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 부여

-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AEO 대상으로 화물도착 전 신고, 납세 신고 전 화물인수 및 사후납세, 보세지역 반입전 수출신고, 신고에 의한 보세 장치장 설치, 법규준수도에 의한 심사 및 검사비용 경감 혜택 부여³⁾

Ⅱ AEO 혜택 Ⅱ

제도	대상 사업자	제도 개요
특수수입 신고제도	일본 수입자	화물의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 가능 납세신고 전에 화물의 거래 가능
특수수출 신고제도	일본 수입자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특정보세 승인제도	창고업자	보세 장치장의 신규 설치, 허가수수료 면제 등
인정통관 사업자제도	통관업자	대리로 실시하는 수출입 통관에 있어 통관 수속 간소화
특정보세 운송제도	운송자 등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 화물 운송 가능
인정제조사 제도	제조사	보세 지역 밖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가능

* 한국-일본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⁴⁾ 체결

4. 관세제도

- 일본의 관세제도⁵⁾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일반특혜세율, LDC특혜세율 등으로 분류
 - 기본세율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 잠정세율 : 기본세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관세 잠정조치법에 의해 운영
 - 일반특혜세율 : 일본이 인정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게, 일본이 인정한 후발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관세 적용
 - 특별특혜세율(LDC⁶⁾특혜세율) : 일본이 인정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행세율(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중 더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 HS코드에 따른 일본 관세율표⁷⁾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3) 관세청 AEO 제도 소개자료 참조

4)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약정

5) 일본 관세관련 법률 원문조회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jp)

* URL : <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

6) LDC : 개발도상국(Less Developed Country) 또는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의미

7) 일본 관세를 조회 :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jp) 輸入統計品目表 (実行関税率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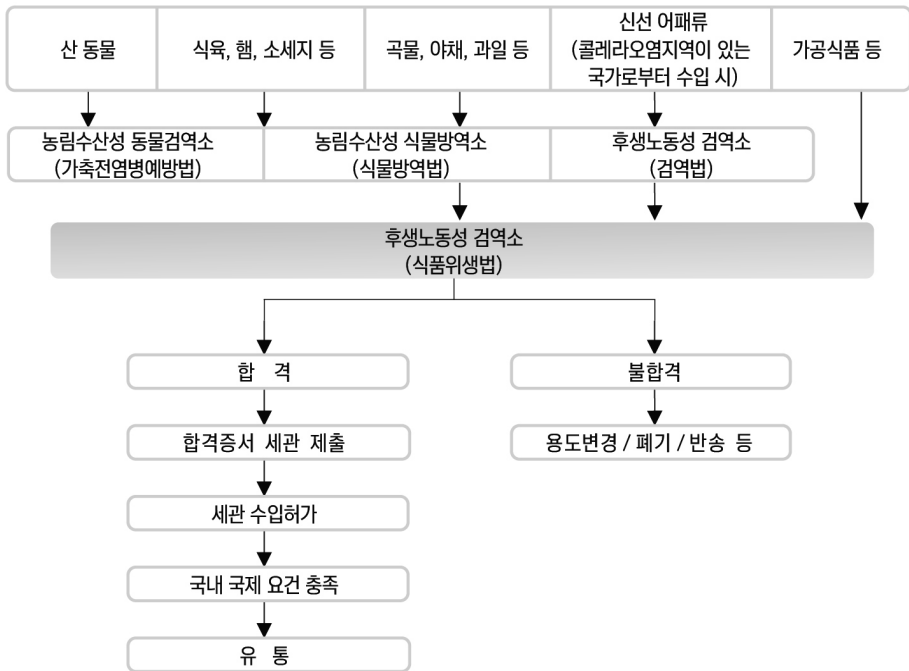
* URL :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제 3 장 | 검역제도

1. 검역제도 일반

- 사람 및 가축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수입물품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엄격한 규제가 시행됨
- 동물은 가축전염예방법, 광견병 및 수산자원보호법,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아야 함
- 동·식물 중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식물 검역을 받은 후 다시 식품 위생법에 의한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동·식물 또는 식품은 최초 수입 시 매우 엄중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소요 기간을 충분히 잡아야 하고,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당국에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Ⅰ 동·식물, 식품 등 검역절차 개요도 Ⅰ



2. 동물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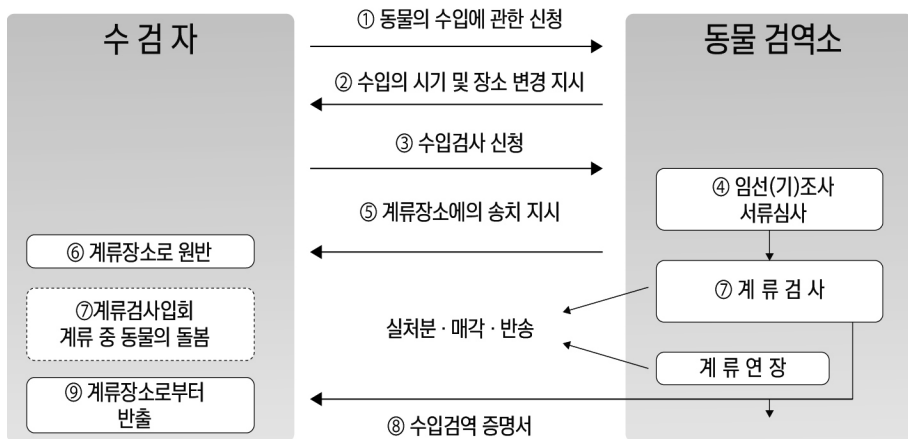
-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伝染病予防法)」에서는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하여 수입물품 중 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지정검역물)을 지정
-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 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Ⅰ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정검역물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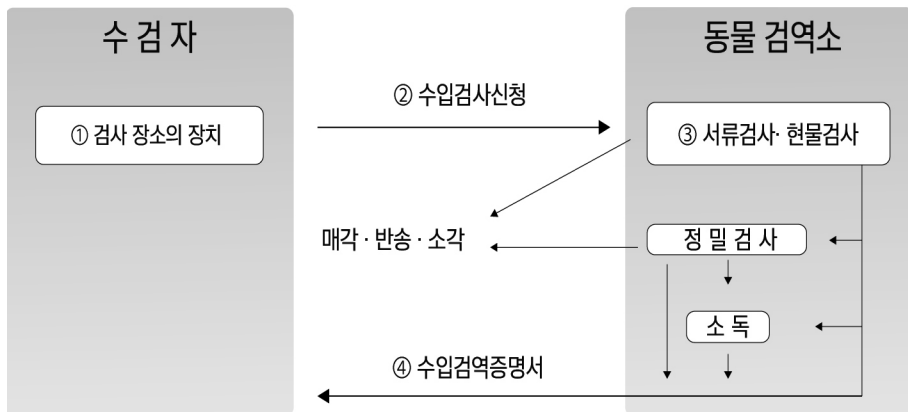
-
1. 다음의 동물 및 그 사체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偶蹄類) 동물 및 말
 - 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타 오리류
 - 개, 토끼, 꿀벌
 2. 알(닭, 메추라기, 꿩, 타조, 색시닭, 칠면조, 오리류의 것)
 3. 위 1. 동물의 뼈, 고기, 지방, 혈액, 피부, 머리, 날개, 발, 발굽, 힘줄 및 장기
 4. 위 1. 동물의 우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분뇨
 5. 위 1. 동물의 뺨가루, 고기가루, 혈분, 피부가루, 날개가루, 발굽가루 및 내장가루
 6. 위 3.을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7. 수입 허용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용 짚 또는 건초
 8.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등으로 농림수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물품
-
- 지정 검역물의 경우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형태, 양의 다소, 용도(기증품, 자가 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함
 -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지정
 -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소, 돼지 등의 우제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공장에 한해 대일 수출이 가능
 - 검역절차
 - 동물검역 신청 시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첨부하여 동물검역소에 제출
 - 동·식물의 검역은 이중 검역제가 원칙으로 출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도착국에서 검역을 받아야함. 따라서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 증명서를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
 - 동물검역소 검사 결과에 따라 교부받은 수입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 또는 허가를 받았다는 확인 후 통관 가능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동물검역 합격여부를 용기, 포장에 날인된 ‘검역필’ 도장을 보고 확인

- 동물, 육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검역물이 아니라도 감시 대상 전염병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및 동물검역소에 확인 필요

Ⅰ 동물 검역 절차 Ⅰ



Ⅱ 축산물 검역 절차 Ⅱ



3.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植物防疫法)」은 병충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금지 품목, 검사대상 품목, 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수입 금지 식물류〉

- 만에 하나 침입했을 때, 농산물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수입 시에는 정확한 검사가 어려운 병충해가 발생한 국가 및 지역에서 그 병해충이 부착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단, 다음의 품목은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 흙, 흙이 붙어 있는 식품, 식물을 해칠 검역병해충, 벚지과 겹겨가 붙어있는 벼(한반도 및 대만 제외)
 - ◆ 금지품이라도 시험·연구·전시용의 경우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받고 수입가능

〈식물방역 검사대상 식물류〉

- 야채, 과일, 곡류, 콩류, 건조목초, 절화, 관상용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식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의 일부(드라이플라워 등), 목재(製木 제외), 향신료, 한방약원료, 목제포장재 등은 검사 후 수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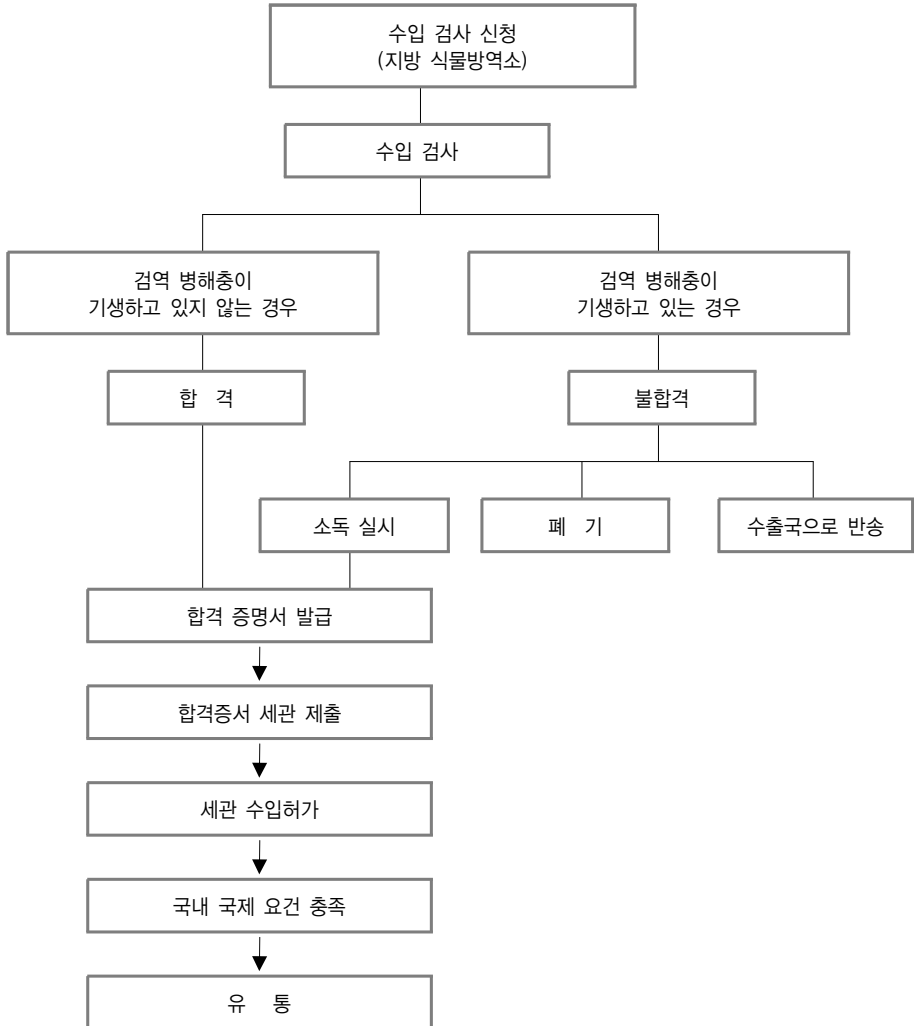
〈식물방역 검사제외 식물류〉

- 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 대상이 되나, 식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병해충의 부착 또는 생존의 우려가 없는 것은 검사제외 대상임. 가구와 같이 제품화된 것, 차와 같이 고도로 가공된 것, 병해충에 의한 오염 우려가 없도록 병 또는 캔 등에 밀봉된 향신료, 식품 등은 식물방역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목재, 방부 목재, 목공품, 대나무가공품 및 가구 집기,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면, 제차, 건조 죽순, 살구, 무화과, 건조 과실류 * 단, 냉동 꽃감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이 필요함

-
- 검사대상 물품은 일반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중량, 용도(기념품, 자가소비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검역대상임
 - 중요사항 : 2018년 10월 1일자로 식물검역증 첨부가 의무화되어 EMS뿐 아니라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식물검역 절차
 - 검사대상 식물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방역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식물 수입허가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통관
 - 세관은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식물검역 합격여부는 용기, 포장에 날인된 ‘식물검사합격증인’ 도장 등을 보고 확인

- 식물은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기도 하고,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검사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재배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식물 등」, 동 별표2 「수입금지 지역, 식물 및 검역 유해동식물」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및 식물방역소에 확인

Ⅰ 식물 검역 절차 Ⅰ



4. 식품검역

가. 식품위생법 개요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제1조)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위생적인 식품,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i) 제조·사용 기준 ii) 성분 규격 iii)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iv)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등은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제6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 수입자에게는 매 수입 시마다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제27조), 필요한 경우 검역소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판매 허용(제25조 내지 제26조)

나. 식품검역 대상물품

- 수입식품 신고 대상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이며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나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음(이상 법 제4조) 단, 10kg 이상의 화물일 경우 개인적인 사용 용도로 미인정
- 이 외에 영유아용 장난감이 그 대상이 되므로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은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가능(법 제62조)

1) 식품

-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 동물성·식물성 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기호식품, 건강식품, 알콜음료(주류) 등도 포함
- 다만 원염·코프라(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 원료 유지, 조당(정제하지 않은 설탕), 조류 알코올(증류주의 원료), 당밀, 채종, 맥아, 호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규제

2)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가공이나 보존을 위하여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

- 식품첨가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솔빈산, 안식향산, 타르색소 등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 목록(1996년, 후생성 고시 제120호)에 등재된 천연첨가물(치자황색소, 감탄닌 등의 천연첨가물), 그 자체로도 음식이며 일반적인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딸기 주스, 녹차 등의 첨가물)이 포함

3) 식품기구

- 식품기구란 식기, 요리기구,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집,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 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함
-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용/가공용 기계나 기구 등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물건과 ② 조리에 사용하는 식칼, 도마, 식품 저장용 냉장고, 냉동고, 식품 운반 기구, 젓가락, 접시를 비롯한 식기 등 식품 채집 및 제조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의미
-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팽이, 어망 등의 기계, 기구 등은 미포함

4) 식품포장용품

- 식품포장용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써 판매할 때 사용하는 병, 캔, 합성수지제 등의 포장용기도 포함

다. 식품검역 절차

- 수입신고 시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거쳐 적합여부 판정
- 적합판정을 한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는 방법,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을 판정 받는 방법, 폐기처분하는 방법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시키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라. 일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⁸⁾

- 일본후생성은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⁹⁾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

8)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일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용방법,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안내자료 참조

9)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서 공적검사기관 확인 가능(<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 가능
- 한국 내 사전검사를 통해 통관거부사례 발생 감소,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1) 사전확인 신청절차

- 수출식품 제조자 ‘사전확인 신청서’¹⁰⁾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를 통해 후생노동성에 제출

■ 첨부서류 목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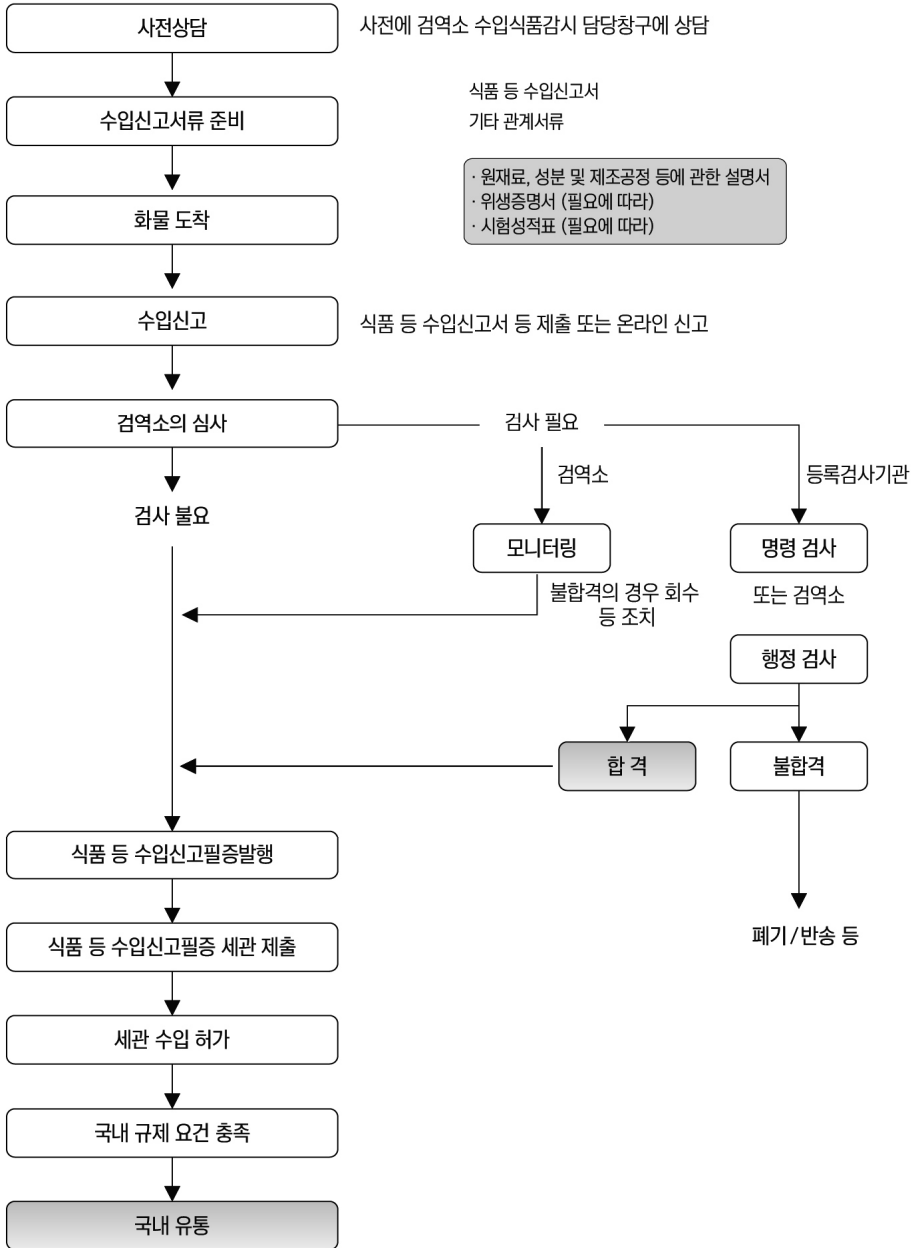
-
- (식 품) 사용원재료, 성분조성 관련서류, 제조 또는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첨가물, 제조방법,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발행 분석 증명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 (첨가물) 물질명,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첨가물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분석증명서,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 (기구, 용기, 포장) 재질 등에 관한 서류, 용도, 해당 물품 그림, 원재료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분석증명서, 해당 제품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조사기관 분석증명서
-

2) 수입절차 등

- 제조자가 등록된 식품 등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① 식품 등의 용기포장에 등록 번호 기재, ② 제조자가 작성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화물에 첨부, ③ 기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해당식품 등의 등록번호임을 증명
- 등록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고, 후생노동성은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종료 후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속히 신고서의 복사본을 수입자에게 반환
- 후생노동성은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입절차를 중지하고 수입 화물을 보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절차를 중지한 경우 후생노동성은 그 이유 및 개선 요청 등에 대해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연락
-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사 실시

10) 사전확인서 기입사항 : 식품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국가명, 식품 등의 종류 및 명칭

■ 식품 수입 검역 절차 ■



5. 품목별 검역 유의사항

가. 과자(비스킷, 쿠키)

1) 검역 일반사항

- 관세분류번호(HS코드)
 - 기본 : 곡물, 곡물가루, 전분 또는 우유 조제품 및 베이커리제품(HS1905)
 - 관세율 : 6~34%(원재료 및 성분에 따라 세율 다양)¹¹⁾
-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청 접수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청서’와 필요서류(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 심사 결과 규격기준 또는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건은 검사를 실시
- 심사 및 검사를 통해 해당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경우 세관으로 수입신고 때 통관서류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받은 ‘식품 등 수입신청 완료증’을 제출하고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2) 본선 수입 전 소량 샘플통관

- 컨테이너 물량의 대량 물량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이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량 샘플통관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소량이더라도 반드시 정식통관을 해야 하며, 일본 검역소로부터 검사가 필요한 항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본정부가 인정한 국내 인증검사기관 또는 일본 내 등록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 발급받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며, 이후 1년 이내 동일 품목에 한해서는 최초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로 갈음하여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허용됨

3) 관련규제

가) 잔류농약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¹²⁾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¹³⁾

11)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www.customs.go.jp/tariff/2014_4/data/j_19.htm)

12)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 목록

13)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사이트 : <http://db.ffcr.or.jp/front/>

나) 식품첨가물

- 일본에서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다)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라)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동 법에 의해 과도한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 등을 금지
- 또한 동 법에 의거하여 「비스킷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비스킷 업에 있어 경품류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의 업계 자체기준이 있음
- 더불어 당 규약에 ‘비스킷’이란 밀가루, 당류, 식용유지 혹은 식염을 원료로써 필요에 의해 전분, 유제품, 계란제품, 팽창제, 식품첨가물 등의 원재료를 배합하고 또는 첨가한 것들을 혼합기, 성형기 또는 비스킷오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함. 또한 당 규정에 ‘쿠키’로 표시할 수 있는 비스킷은 손으로 만든 듯한 외형으로 당분, 지방분의 합계가 중량백분비로 40% 이상의 것으로 기호에 따라 계란, 유제품, 건과류, 건조과일, 꿀 등으로 제품의 특징을 살려 풍미를 좋게 만든 것을 말함

나. 삼계탕

1) 검역 일반사항

- 관세분류번호(HS코드)
 - 닭고기조제식품(HS1602-32-290)
- 관세율 : 6%

2) 관련규제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닭고기는 동 법에 의거하여 ‘지정검역물’이나, 삼계탕의 경우 통조림과 동등 이상의 멸균처리를 할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함. 수입 시에는 지정기일까지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가축물)’에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법 제40조)하고 검사 합격 시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법 제44조, 제45조)

- 가금육에 대해서는 조류독감 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삼계탕의 경우 조류독감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심 온도 120℃에서 4분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멸균 처리된 제품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함
- 한-일간에는 가열처리 가금육 수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협약조건에 의해 사전에 일본정부가 승인·지정된 공장에서 가열처리된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 등의 가공제품의 수출이 가능함

나) 식품위생법

-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고 접수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를 제출
- 심사결과 규격기준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실시되며, 심사 및 검사가 동 법상 문제가 없다면 세관으로의 수입신고 시에 통관 서류와 함께 검역소로부터 발행되는 ‘식품 등 수입신고 완료증’을 제출하고, 부적격이라 판단된 경우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는 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식육제품은 동 법에 의거한 성분, 제조, 보존에 대해서 규격기준이 있음
-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유무 등을 주의할 것.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잔류농약기준(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으며,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 금지

다)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식육제품에는 개별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라)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동법에 의거한 업계 자주표시규약으로써 전국 식육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햄, 소시지류 공정취득협의회에 의한 「햄, 소시지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다. 소스류

1) 검역 일반사항

가)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간장(HS2103.10.000)
- 토마토케첩(HS2103.20.010) / 관세율 7.2%
- 기타 토마토소스(HS2103.20.090) / 관세율 17%
- 머스터드 분말 및 걸쭉하게 제조한 머스터드(HS2103.30) / 관세율 9%
- 드레싱(HS2103.90.120) / 관세율 10.5%
- 우스터소스(HS2103.90.130) / 관세율 7.2%

※ 성분 및 원재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본 관세청 확인 필요

2) 관련규제

가) 관세정률법 / 관세감정조치법

- 관세 할당은 농림수산성이 매년 수입 할당 수량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 높은 관세(이차 세율)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임. 소스의 조성에 따라, 토마토 케첩, 토마토 및 토마토 페이스트(HS2002.90)는 EPA(경제연계협정) 관련 관세 할당 범위가 있는 등 분류가 복잡한 품목이 있음

나) EPA

- 일본과 한국의 EPA는 협상중단 중이며, EPA에 기반한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관세할당제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EPA에 근거한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또는 「개별관세할당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

다) 식품위생법

- 규제내용으로써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에 유의해야 하며, 식품 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 (잔류농약 등의 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포지티브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의 잔류기준은 0.01ppm 이하

라)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는 사용에 규제가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음

- 산화방지제(BHA, BHT, TBHQ 외), 보존료(안식향산, 솔빈산 외) 착색료(Allura Red AC, Azorubin, Quinoline Yellow WS 외) 등의 식품첨가제가 사용되는 수입제품이 있으나 이것들은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인정이 되나 사용대상 품목과 제한량 위반 시 수입 불가능

마)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바)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경품 포함 판매 혹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위험이 있는 과대, 허위표시 등을 금지
- 소스류에 관해서는 업체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음
 - 전국 토마토 가공품업 공정취급협의회(경품, 표시)
 - 간장업 중앙공정취급협의회(경품, 표시)
 - 일본 소스업 공정취급협의회(경품)
 - 전국 드레싱류 공정취급협의회(표시)

사)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병, 페트병, 제지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틸캔, 알루미늄캔 등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재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라. 음료

1) 검역 일반사항

가)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미네랄워터(HS2201-10-000) / 관세율 : 3%
-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물(HS2202-90) / 관세율 : 9.6%~13.4%
- 알코올분 0.5% 이상의 주스(제22류)과실 또는 야채주스(HS2009)

2) 관련규제

가) 식품위생법

- 수입 시에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규정(포지티브리스트제도). 단,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없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 이하임

- 특히 생과일주스의 농약잔류 기준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에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를 주의해야 함. 일본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식품첨가물과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로 보존료, 착색료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유의
- 청량음료수에 대한 성분규격 및 제조규격이 별도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격에 맞추어 제조되어야 함
 - 성분규격을 보면 혼탁, 침전물에 대한 규격이 있으며, 비소, 납, 카드뮴은 불검출이어야 하며, 주석은 150.0ppm 이내여야 함.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함
- 나) 식품표시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음료와 같은 경우 과실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당근주스 또는 당근 믹스주스료 각각 개별 품질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음. 상기 4품목과 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에는 임의 JAS규격이 있음
 - ‘혈압 유지’ 등 생리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보건용도에 적합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따른 ‘특정보건용식품’의 인가절차가 필요함
- 다) 부당경품류 또는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과도한 경품 부속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표시 등 금지
 - 동 법에 의거한 업계규약으로 과실음료 공정취급 협의회에 의한 과실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 라)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병, 페트병, 제지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틸캔, 알루미늄캔 등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재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음.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마) 관세정율법 / 관세잠정조치법(관세할당)
 - 토마토 주스 중에 함유물 건조중량이 7% 이상의 것은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와 동일하게 HS2002.90으로 분류되어 관세할당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농림수산성은 매년 수입할당량(기본 세율)을 정하여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 물량을 할당하고 이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2차 세율)를 적용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

- 관세할당에 의한 1차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할당 신청 절차가 필요

마. 돈육 가공품

1) 검역일반사항

가) 관세분류번호(HS코드) 및 관세율

- 돼지고기(성상 등에 따라 다름)(HS0203, HS0206, HS0210)
- 소시지 등 조제품(HS16 류)

2) 관련규제

가) 차액 관세제도

- 돼지고기 수입 시 보통 육류제품으로 규제 이외에 차액 관세제도가 있음. 수입품의 가격이 낮을 때는 기준 수입가격보다 낮은 부분을 관세로 징수하여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가격이 높을 때에는 종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임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 될 수 있는 것

- 축산물 통조림 및 축산물 병조림
- 베이컨류
- 햄류
- 프레스 햄 혼합 프레스 햄
- 소시지 혼합소시지
- 냉장 햄버거 스테이크(햄버거 패티)
- 냉장 미트볼, 레토르트 파우치식품, 냉장만두
- 조리 냉동식품 등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 소, 돼지, 양 등의 우체류의 고기는 동 법의 ‘지정 검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동물검역소로 상담하고, 수입의 가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시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동물 검역소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
 - 수입검사신청서(축산물)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 동물 검역의 결과 합격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법 제44조, 제45조). 또한 악성 가축 전염병(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동 시행규칙 제43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유래제품에 대해서도 동일
- 현재 한국은 구제역 발생국으로 인해 돈육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한 상태이나, 소시지 등 열처리 가공품의 경우 한일 위생협약에 의해 일본정부로부터 사전 공장승인을 받은 처리장에서 제조된 것은 수출이 가능함

다) 식품위생법

- 식품의 수입에 있어 동 법의 규제를 받으며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불가함
- [참고]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 식품 일반의 규격 기준 이외에 육류 제품은 성분 규격(아질산 뿌리 : 0.070g, 1kg 이하 등) 및 제조, 저장 기준의 규정이 있으며, 동 규격기준에는 잔류농약(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농약의 허용치는 0.01ppm 이하) 식품첨가물 등의 함유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잔류농약 등의 규제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의해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 첨가제 및 동물용의약품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음
 - 과거 위반사례에는 중국산 돼지고기와 해당 육류 가공품으로부터 크렌브테놀(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었으며 수출신고를 비롯한 전품(제26조 3항) 검사 명령이 내려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색제 등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된 적이 있음
 - 판매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식품 등 수입신고서
 -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보존방법 등을 표시한 자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검사기관 분석결과서 등)
 - 심사단계에서 규격기준이 안전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검사가 실시되며 심사, 검사에 의한 동 법상의 문제가 없으면 신고완료증이 돌아오므로 세관으로 수입신청 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부적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자는 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라) 건강증진법

- 용기포장에 들어있는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법에 준하는 표시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명칭,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보존방법, 취급방법, 유전자조작 여부, 특정원재료 사용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표시,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국가) 표시 등
- 신선품은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가공품은 「가공식품품질 표시기준」 냉동품은 「야채냉동식품 품질표시기준」 등 관련 있는 품질표시 기준의 확인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웹사이트 ‘품질표시기준 일람’을 참조

마) 농림물자의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JAS법)

- ‘소시지 등의 조제품에서 돼지고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JAS 규격(선택)이 있음
- 생산 정보 공표 돼지고기의 JAS 규격 숙성 햄류 숙성 소시지류, 숙성 베이컨류의 특정 JAS규격(모두 선택)도 있음
- ‘유기’, ‘오가닉’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 JAS 기준에 따라 등록 인증 기관의 검사 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바) 부당 경쟁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경쟁규약

- 과도한 경품 부속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표시 등 금지
- 동 법에 근거하는 업계 표시 약관으로 전국 육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햄·소시지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햄·소시지류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있음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 일본 내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에 대한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 등 세가지 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서로 목적이 상이하고 제도가 복잡
-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식품표시 규정을 소비자청에서 1 개의 일괄기준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통합운영
- 표시 의무화가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과 JAS법 기준의 통합에 있어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 등을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후생노동성 소관), JAS법(농림수산성 소관)
- 식품의 분류는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로 구분
- 임의로 되어있던 영양표시에 대해서도 2020.4.1.부터 표시가 의무화 되며, 현재는 기재 장려기간이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 표시를 요구하고 있음

2. 공통 품질 표시기준

가. 명칭

- 품명, 종류별, 명칭 등을 기재
 - [예] 품명 : 쿠키, 종류별 : 과자, 명칭 : 구운 과자 등

나. 원재료명

- 사용한 원재료를 ① 또는 ②로 구분하여 이하 규정에 따라 기재
 - ①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 단 2종류 이상의 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순으로 괄호 안에 배합률이 높은 순으로 기재. 복합원재료의 배합비율이 주원재료에 5% 미만인 경우 표기 생략가능
 - ② 식품첨가물은 중량 배합이 많은 순으로 기재

다. 내용량(또는 고형량, 내용총량)

- 「특정상품 판매제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중량은 그램(킬로그램), 부피는 리터(밀리리터), 수량은 개수 단위로 기재. 고형물에 충전액을 더한 통조림과 병조림의 경우 내용량 대신 고형량과 내용총량을 병기

라. 유통기한(상미기한)

- 수입자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① 제조로부터 유통기한까지 3개월 이내의 것은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31일
- 26.5.31
- 2014.05.31
- 14.5.31

② 제조로부터 상미기간까지 3개월을 넘는 경우, 다음 예 중에 하나를 기재

- 평성 26년 5월
- 26.5
- 2014.05
- 14.5

[주의] ②의 규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①규정을 따라도 됨

마. 보존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존’, ‘10℃ 이하에서 보존할 것’(‘개봉 후는 냉장’ 등의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기재 필요) 상온 보존하는 것 이외에 유의할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바. 제조업자 등의 이름(또는 명칭) 및 주소

사. 원산국명(수입품의 경우)

3. 유기JAS제도

가. 유기농산물

-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하지 않은 것
 - 퇴비 등을 거름으로 사용하고 파종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금지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
 - 농약, 화학 비료 등의 사용 자제

나. 유기축산물

- 농업의 자연환경 기능유지 증진을 위해 이하의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물
 - 환경의 부하가 적은 사료를 공급
 -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
 - 동물의 생리학적, 행동학적 측면에서 배려된 환경에서 사육된 가축, 가금류

다. 유기가공식품

- 원재료의 유기적 특성을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
 -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방법으로 생산
 -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또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물과 식염을 뺀 95% 이상의 원재료가 유기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라. 명칭의 표시 및 규제

- JAS법에 따라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 되었는지를 등록 인증기관이 검사하고 그 결과 공인된 사업자만 ‘유기 JAS 마크’ 사용가능
- 사용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기○○’, ‘오가닉△△’라고 표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만 엔 이상의 벌금부과
- JAS마크 등록인증기관 리스트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



登録認定機関名

JAS마크 등록인증기관명

마. 유기JAS제도에 의한 유기 수입식품

- 일본의 유기JAS제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인증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유기 JAS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유기JAS마크를 획득했으나 2013년 4월 1일부터 해당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유기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해외사업자에게 유기 JAS 마크 부착을 위탁

4. 알레르기 표시

가. 알레르기 표시 개요

- 특정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과거 건강 유해 등의 정도 빈도를 고려해 가공식품의 용기 포장에 특정원재료의 사용 사실 표기를 의무화
- 특정 가공식품(식품에서 특정원재료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표기) 및 확대표시 제도는 폐지

나. 알레르기 표시 기준

1) 특정원재료 표기

가) 특정원재료 종류

구분	특정원재료 명칭	이유
표시의무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새우, 메밀, 게	발병 증상수 혹은 증상을 감안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
표시장려 (임의표시)	연어알, 키위, 호두, 대두, 바나나, 마, 캐슈넛, 복숭아, 깨, 고등어, 연어, 오징어, 닭고기, 사과, 송이버섯, 전복, 오렌지, 소고기, 젤라틴, 돼지고기	발병수와 증상이 심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정원재료에 비해 적거나 특정원재료로 지정 유무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조사가 필요

※ 특정원재료의 명칭은 2011~2012년 전국 실태조사 발병수 순위로 기재

나) 표시방법

☐ 개별표시 예시(원칙)

원재료명	준초콜릿(팜유(대두포함),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소고기포함), 설탕, 계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캐러멜시럽, 식염
첨가물	소르비톨, 주청, 유화제, 팽창제, 향료

☐ 일괄표시 예시(예외적 허용)

원재료명	준초콜릿(팜유, 설탕,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유당, 카카오마스, 식염), 밀가루, 쇼트닝, 설탕, 계란, 콘시럽,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포도당, 맥아당, 가공유지, 캐러멜시럽, 식염(일부 소맥, 계란, 유성분, 소고기, 대두를 포함)
첨가물	소르비톨, 주청, 유화제, 팽창제, 향료(일부 대두, 유성분을 포함)

2) 교차 오염

- 특정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다른 제품의 특정 원재료 사용 등으로 인해 교차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 주의 환기를 위한 표기 권장
- 표시 예) 본 제품 제조공장에서(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 하고 있음

5.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가. 영양성분 표시 개요

- 식품에 표기하는 영양성분표시는 당초 임의표시사항이었으나 2015.4.1.일부터 시행된 일본 소비자청의 ‘신식품표시제도’에 따라 별도 면제되는 식품 이외는 영양성분표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 한국에서는 이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계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
-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은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5가지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나트륨량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염상당량’으로 바꾸어 표시
- 의무표기 :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
※ 식염상당량(g) = 식염량 × 2.54/1,000
- 임의(권장) :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 임의(기타) :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마네랄류,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나. 영양성분 표시기준

- 영양성분 함유량 표시
- 1단위(100g, 100ml, 1식분, 1포장 등)로 표시
- 열량(Kca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또는 당질, 식이섬유) 나트륨의 순으로 표시(필수 5항목), 그 밖의 영양성분(칼슘, 비타민C 등)은 나트륨 다음으로 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량을 강조하기 위해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등에 대해 ‘고(高)’, ‘저(低)’, ‘무(無)’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함유량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준치는 소비자청 웹사이트를 참조

○ 영양성분표기 면제대상 품목

-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 표시가능면적이 30cm² 이하인 것
 - 주류 등 영양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작은 것
 - 아주 짧은 단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
 - 소비세법 제9조에 의한 소규모사업자(과세 대상 매출액 1천만 엔 이하)

○ 주의사항

- 영양성분표시는 실제 성분치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 원재료에 대한 규격서 등 서류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치나 계산근거 자료 등 정보체계 관리에 주의할 것

■ 영양성분 표시 예 ■

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의무표시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으로 환산한 것)
권장표시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임의표시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당질, 당류(단당류 등은 이당류로, 글리시톨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니아신, 판토텐산, 바이오틴,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엽산, 아연, 칼륨, 칼슘, 크롬, 셀렌, 철, 구리, 나트륨,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아이오딘, 인

6.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가. GMO 개요

- 식품위생법상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은 금지되며 수입대상 농산물과 가공 식품의 유전자변형 성분이 일본에서 인가된 것에 한하여 식품 표시가 가능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생법(2001년 4월 규격기준개정)에 의해 의무화되어 식품 안전기본법(2003년 7월 실행)에 의한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유전자변형 식품 등 전문조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짐
- 안전성 심사절차를 거친 유전자 조작식품 또는 첨가물(후생노동성의 웹사이트 「안전성 심사의 수속을 끝낸 부분의 공표가 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첨가물 일람」에서 확인)
- 현재 1-1에 기재된 감자와 대두 등 8종류(254품종)의 식품과, α-아밀라제, 키모신, 프루라나제, 리파제, 리보플라빈, 글루코아밀라제, α-글루코시루트란 스페라제의 7종(16품목)의 첨가물 인가
-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시장에 출하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폐기, 회수명령(수입자의 경우에는 환송 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나. GMO 표시기준

- 식품을 수입판매할 경우는, 원칙으로 소비자청의 식품표시제도에 의거하여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에 관한 품질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변형된 DNA 농산물 사용이 원재료의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대상 품목〉

- 일본에서 이미 식품 안전성 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 작물이 존재하며, 이하 8종류의 농산물이 그에 해당됨
 - 대두(꽃콩 또는 대두의 콩나물 포함)
 - 옥수수
 - 감자
 - 유채
 - 목화
 - 알팔파(허브의 일종)
 - 사탕무
 - 파파야
- 단, 아래 해당하는 식품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의 유무표시 의무 예외
 - 대두(꽃콩, 포함)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중 어떤 것도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나 변형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만드는 단백질이 제품 중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예 : 기름 또는 간장)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7. 식품첨가물 표시

가. 식품첨가물 개요

- 식품첨가물 종류
 - 지정첨가물(안전성을 평가한 위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것 436품목)
 - 기존첨가물(일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된 것, 예외적으로 지정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치자색소, 감 탄닌 등 365품목)
 - 천연향료(동식물유래의 물질이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 바닐라향료, 게 향료등 약 600품목)
 - 일반적인 음식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딸기 주스, 한천 등 약 100품목)
- 특히 지정첨가물과 기존첨가물은 포지티브리스트 식품첨가물로써, 이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나.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 원재료 표시란에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해야하며, 식품 첨가물이 많은 순으로 표시
 -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슬래시, 줄 바꿈, 줄표, 원재료명 아래 표기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원료와 식품첨가물의 분류를 명확화 해야 함
- 물질명 표시
 -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물질명 표시하되 첨가물의 화학명은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알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첨가물의 품명(간략명, 종류명)을 정하고 이를 표기
 - (예) 화학물질명 L-아스콜빈산(간략명; 아스콜빈산, V.C)
- 용도명을 병기
 - 보존료와 감미료 등 다음 8종류의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로써, 물질명과 더불어 그 용도명을 함께 표시
 - 용도명을 병기할 첨가물 :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증점제, 안정제, 젤화제 또는 점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곰팡이방지제 또는 방부제
 - (예)감미료(키시리톨), 착색료(치자색소)

○ 일괄명으로 표시

- 미량의 물질을 조합 하여 만드는 식품용 향료는 배합한 물질 모두를 표시하는 것 보다 일괄로 「향료」라고 표시하는 편이 더 알기 쉽기 때문에 다음 용도에 사용될 경우에는 물질명 대신 사용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일괄명으로 표시할 것이 인정
 - 이스트푸드, 껌 베이스, 알카리 염수용체, 효소, 광택제, 향료, 산미료, 연화제, 조미료, 두부용 응고제, 고미료, 유화제, pH조정제, 팽창제
 - (예) 구연산 → 산미료, 레시친 → 유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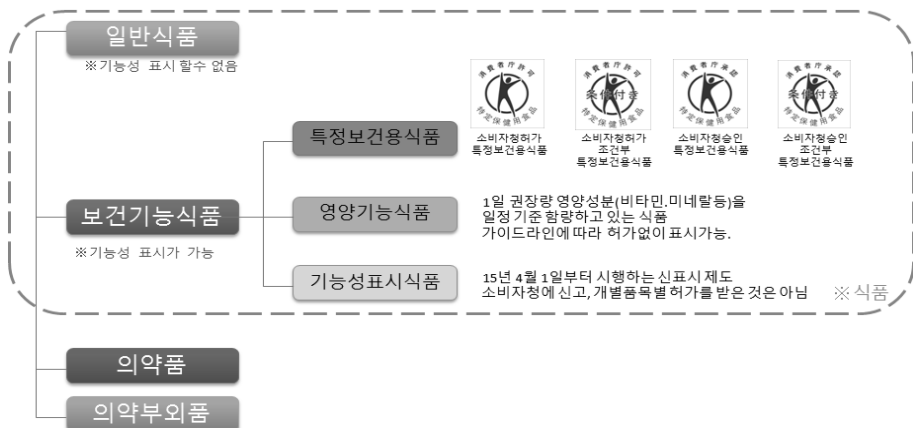
○ 표시 생략

-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또는 가공조제, 캐리오버¹⁴⁾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음

8. 보건기능식품 표시

가. 보건기능식품 개요

- 일정 조건에 달하는 건강식품은 보건기능식품이라고 표시(건강증진법)
- 단, 식품 위생법과 JAS법에 정해진 품질표시기준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유전자 변형 원재료 등의 판매표시 의무와는 다름
- 보건기능식품 표시제도는 임의표시로 수입자가 국내 판매 시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함



14) 캐리오버(carry-over)란 식품의 원료단계에서 사용된 첨가물이 최종식품에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함

- 식품은 크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식품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보건기능식품으로 구분하며, 일반 시중에서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정식품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식품에 해당
- 일반보건용식품 및 영양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기능을 표시할 수가 없음
- 의약품 승인을 받지 않고, 그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표시는 ‘약사법’에 의해 공정한 경쟁 또는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해 금지

1) 특정 보건용 식품

가) 특정 보건용 식품 개요

- 특정 보건용 식품(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을 포함)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특별용도식품의 하나로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하는 특정 보건기능이 있는 성분을 섭취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보건용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 ① 특정 보건용 식품, ②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 보건용 식품, ③ 규격기준형 특정 보건용 식품, ④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 총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①~③은 동일한 허가 마크를 사용하고 ④만 ‘조건부’라는 표기가 추가된 허가 마크 사용

① 특정 보건용 식품

-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식생활에서 특정한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가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

② 질병 위험 저감 표시 특정 보건용 식품

-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저감효과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질병 위험 저감 표시를 인정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③ 규격기준형 특정 보건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서 허가실적이 충분한 경우 등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관여성분에 대해서 규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위원회의 개별심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④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

-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심사에서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인 과학적 근거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 표시 예 : ○○를 포함하고 있어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 제품별로 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표시를 위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 해당 마크를 부착
- 해외 공적기관에 의해 건강효과 표시가 인정된 식품이라도 일본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정 보건용 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음

【특정 보건용 식품 허가마크】

	
소비자청 허가/특정 보건용 식품	소비자청 허가/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

나) 신청절차

□ 보건소 표시허가신청

- 「표시허가 신청서」를 영업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보건소에서 각 행정구역을 거쳐 소비자청에 전달)
- 표시허가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명칭,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이름, 설립일자)
 -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제조소)
 - 상품명
 - 유통기한 또는 상미기한
 - 내용량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 및 해당식품이 국민식생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섭취가 국민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이유
- 허가를 받고자 하는 표시의 내용
- 원재료의 배합
- 제조방법
- 영양성분량, 열량
- 1일 섭취기준량
- 섭취 상의 주의사항
- 주의사항(섭취, 조리, 보존방법에 관해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 기타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제조소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표시방법, 신청구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심사신청

- 보건소로 신청 후 ‘심사신청서’에 I. 의 ‘표시허가신청서’의 복사본과 함께 이하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청 식품표시과로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설립)
 - 표시견본
 - 식품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섭취를 통해 국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모하는 이유, 1일 섭취기준량 또는 섭취상의 주의사항
 -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에 사용하는 문헌 등의 요약
 - 보건의 용도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하는 문헌 등의 일람
 - 영양 성분량 또는 열량의 시험검사 성적서
 - 식품중의 특정 보건목적이 되는 영양성분의 정량시험의 시험검사의 성적서, 시험검사의 방법을 기재한 자료
 -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 보충용도, 안전성 등 각 항목별 사용한 문헌 등(유효성, 1일당 섭취기준량, 안정성, 관여성분의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 성상 등을 명확하게 한 자료)

□ 국립건강영양연구소(또는 등록시험기관) 분석의뢰

- 허가시험은 국립건강 영양연구소 또는 나라의 등록을 받은 시험기관이 실시. 상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식품의 분석용 샘플에 ‘표시허가신청서’와 「심사신청서」의 복사본을 구비하여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시험성적서)’를 소비자청에 제출

-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후생노동성에 자문 또는 의견 조회를 하여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허가서가 각 도도부현으로부터 보건소를 통해 교부
- 표시할 때에는 허가 내용과 같이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

2) 영양기능식품

가) 영양기능식품 개요

-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을 위한 식품으로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한 식품으로서 1일당 섭취 기준량을 포함한 비타민류 12종, 미네랄류 5종이 국가에서 정한 상·하한치의 범위 이내의 식품을 의미하며, 건강증진법 제31조의 의하여 정해진 표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면 허가신청과 신고 등 불필요
 - 해당 영양성분 :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나리아신, 판토텐산, 피오틴,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엽산

나) 대상품목

- 시행 당시 드링크와 어린이용 과자가 대상이었으나, 이후 스테플, 유제품, 디저트, 스낵, 농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통조림, 조미식품, 조미료, 분유 등 대상 품목이 확대

다) 영양기능식품 표시

- 법령으로 정해진 표시 의무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을 특히 주의
 -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영양성분 이외의 성분의 기능을 표시 하거나 특정 보건 용도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됨
 - ※ 금지 예 : 다이어트 가능, 눈이 피로한 분에게
 - ‘영양기능식품(비타민C)’과 같이 영양기능표시를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을 ‘영양 기능식품’의 표시에 이어서 표시할 것
 - 마치 소비자청 장관이 개별적으로 심사 등을 한 것처럼 표시 금지
 - ※ 금지 예 : 소비자청 장관 인정 규격기준 적합
- 과대표시 및 오인 될 만한 표시의 금지
 - 광고에서 사실과 상이한 표시 또는 오인될 만한 표시 금지(제 32조 2항)
 -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만한 과대 허위표시 금지(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효능, 효과를 과대광고 하거나 의약품과 오인이 될 만한 표시금지(약사법)

4) 기능성표시식품

가)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 2015년 4월 식품업계의 새로운 제도로써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
 - 그동안 일본의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 식품(토쿠호)와 국가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으로 한정
 - 이에 기능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상품의 선택지를 늘려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
- 기능성표시식품의 분류 및 대상품목
 - 서플리먼트, 일반가공식품, 신선식품으로 분류됨
 -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되지만,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제외
- 기능성표시식품의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포함), 수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 기능성 관여 성분이 명확하고, 식사섭취기준이 정해진 영양소가 아닐 것
 - 특별용도식품(특정보건용식품 포함),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함유 음료, 지방질 및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로 이어지는 식품이 아닐 것
 - * 막걸리, 맥주 등 알코올 제품과 김치, 젓갈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절임류 제품은 대상 제품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단, Non-알코올인 경우 맥주일지라도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기능성표시식품이 될 수 있음

나)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 신제도에 의해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식품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신고와 용기포장 표시 필요
- 해당식품에 관한 표시내용, 식품관련 사업자명 및 연락처 등의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소비자청 웹사이트에 공개)에 관한 정보,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개시일 60일 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함
- 표시사항
 -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기능성 관여 성분 및 해당성분 또는 해당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 1일당 섭취기준량

- 1일당 섭취기준량 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
- 1일당 섭취기준량 당 기능성관여 성분 함유량
- 소비자청 신고 번호
- 식품관련 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에 의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문구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균형 있는 식생활 보급 계몽을 도모하는 문구
- 조리 또는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사항
- 질병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
- 질병에 걸린 사람, 미성년,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수유자에 대한 기능성 소구가 아니라는 점(단, 신선식품은 제외)
- 질환환자는 의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및 약제사에 상담한 후에 섭취하여야 한다는 문구
- 컨디션에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토록 하는 문구

Ⅰ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사례 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번호 △△ ●●●(상품명) 〈신고표시〉 본제품은 ◇◇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이 있습니다. 본제품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특정보건의 목적이 기대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비자청장관에게 신고된 것임. 단,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장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

1. 잔류농약위반 한국산 껌잎 검사강화 해제 조치

- 일본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한국산 껌잎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30% 빈도로 강화조치를 취해 온바 있으나 과거 1년간 특별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실적을 감안하여 2017.3.14자로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 조치로 완화함
- 한국산 껌잎은 잔류농약인 지니코나졸 농약 성분이 위반되어 그동안 수입 시 검역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건수의 30% 수준으로 검사 강화를 해온바 있으나, 향후 검역소는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수입자에게는 특별히 검사부과 등의 조치는 없음

2.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가. 2018년 수입식품의 감시 지도 방침

- 감시지도계획은 일본정부 회계연도상 4월~익년 3월말까지 적용됨
 -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수출국 단계에서의 자주적인 안전관리 등을 지도할 예정으로, 수출국 대책으로 수출국정부에 대해 생산, 제조, 가공 등의 각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정부관계자, 생산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본국내 HACCP 도입 의무화 법률제정으로 향후 일정범위의 수입산 식품에도 HACCP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임
 - 해외에서 발생한 병원미생물 검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세균 등 규격검사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잔류농약 등 기준)에 대응한 검사를 실시함
 - 전년도에 발생한 위반사례를 감안하여 계속해서 농산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냉동수산물가공식품 등의 성분규격위반 사례를 감안 금년에도 계속해서 가공식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모니터링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김치를 포함한 절임야채류의 장관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나. 감시 지도 계획 주요 내용

○ 수입식품 감시지도 실시 기본사항

- 후생노동성(이하 본성)은 특정국가, 지역 또는 특정인이 생산한 수입식품 등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
- 본성은 계속해서 법률 위반을 범하는 수입자에 대해서 개선지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수입자에 대한 영업금지 또는 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본성은 법률위반 사례가 판명되었을 경우 법제63조에 의거 위반사례를 공표함
- 검역소는 수입신고서등에 의해 식품의 규격 또는 기준에 대한 적합상황에 대해 확인하며,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폭넓은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 검역소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명령한다.
- 검역소는 수입자가 자주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강연회 개최 및 수입전 지도 등을 실시한다.
- 검역소는 법률위반이 판명되었을 경우 폐기조치 등의 지시와 함께 수입자에 대한 지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수입 후 국내유통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감시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위반이 발견되었을 때는 검역소와 연계하여 수입자에 의한 회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3. 냉동식품류의 대일 수출 시 주의사항

- 2017년도의 한국산 대일 수출품 위반사례 수산물 세균류 위반 사안의 경우 12건으로 냉동식품의 수출시 성분규격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과거에 수입한 품목에서 위반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나 수입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재차 수입 시에 일본 검역소에서는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한국 내 일본 후생성 인증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음으로써 검역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가. 냉동식품의 성분규격

- 일본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며, 동 분류는 냉동식품의 표시사항(동결직전 가열유무 및 가열조리의 필요성)에 밀접하게 관계됨으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과일, 케익 등

②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 섭취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③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중 상기 ②이외의 것을 말함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E.coli(대장균)	식품예시
	3,000,000/g 이하	음성 ※	새우튀김, 고로케 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li음성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④ 생식용 냉동선어류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100,000/g 이하	음성	100 이하/MPN

나. 냉동식품의 가공기준

- 생식용 냉동선어류(생선폌막 또는 조갯살류)에 한함

- 냉동식품 중 생식용 냉동선어류에 대한 가공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어 선도가 좋은 원재료 확보, 안전한 용수(살균해수 및 음료용으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사용 (충분한 세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 위생적인 원재료 해동, 첨가물(차아산염소나트륨을 제외)의 사용금지, 가공 후 신속한 동결처리 등의 가공공정이 필요함

다. 냉동식품의 보존기준

- 식품위생법에서는 냉동식품의 보존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음
 - ① 냉동식품은 -1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 ② 냉동식품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합성수지, 알루미늄박 또는 내수성이 있는 가공지로 포장하여야 함

4. 참고자료

가. 일본 대장균·세균 수 기준치

-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 제조 및 가공식품을 동결시킨 냉동제품 중 섭취 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케이크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제품
 - 가열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 중 무가열 섭취냉동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동결시키기 직전 공정에서 가열처리된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햄버그, 면류, 소스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직전에 가열한 이외의 제품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상기 ②이외의 것을 말함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식품예시
	300,000/g 이하 음성	음성	새우튀김, 고로케 등

※ 밀가루를 주원료로 섭취 전 가열공정이 필요한 냉동빵 생지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전에 충분한 가열, 소성할 경우에 한해 E,coil음성의 성분 규격을 적용하지 않음

○ 생식용 냉동선어개류

-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

성분규격	세균수(일반생균수)	대장균군	장염비브리오
	100,000/g 이하 음성	음성	100 이하/MPN

※ 냉동식품 중 생선피레,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

나. 일본 주요 농약기준치

농약	기준치(ppm)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0,01
클로르피리포스	0,01
이미다클로프리드	0,01
클로르페나피르	0,01
지페노코나졸	1(고춧가루)

* 출처 :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 이 외에 일본 내 잔류농약 사용기준은 재단법인 일본화학연구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¹⁵⁾
- 농약 이외에 일본에서 식품 중 불검출 되어야 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음

식품중 불검출 되어야 하는 물질	
1. 2,4,5-T(살충/제초제)	9. Diethylstilbestrol(동물용의약품)
2. Azocyclotin* and Cyhexatin*(살충제)	10. Dimetridazole(동물용의약품)
3. Amitrol(살충/제초제)	11. Daminozide*(살충/생장조절제)
4. Captafol(살충/살균제)	12. Nitrofurans(동물용의약품)
5. Carbadox(동물용의약품)	13. Propham(제초제)
6. Coumaphos(동물용의약품)	14. Metronidazole(동물용의약품)
7. Chloramphenicol(동물용의약품)	15. Ronidazole(동물용의약품)

* 출처 : 농업과학기술원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과 대응방안'

15) URL :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다. 일본 가공식품 첨가물 기준치¹⁶⁾

첨가물	기준치
폴리솔베이트 80	0.02g
시아노화합물	0.01 mg/liter
솔빈산	각 식품별 기준치 이내 사용 준수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라. 일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 규격

검사항목			기준치
일반규격	용출시험	중금속	1μg/m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μg/mL 이하
	재질시험	납	100μg/g 이하
		카드뮴	100μg/g 이하
개별규격	용출시험	저마늄	0.1μg/mL 이하
		물 4% 초산 20% 에탄올 헵탄	30μg/mL 이하
			30μg/mL 이하
			30μg/mL 이하
			30μg/mL 이하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16) 이 외에 일본 식품첨가물 기준치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